

정책연구

2025-13

#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Prospects and Policy Directions for Care in the Cultural Sector

정보람·이상열





#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Prospects and Policy Directions for Care in the Cultural Sector

정보람·이상열





## 연구 책임

---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 연구

---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 연구 개요



# 1. 서론

##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정책에서 돌봄은 의료, 가사, 일상생활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돌봄인 대리육아, 교육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정서적 돌봄, 사회적 교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변화
- 문화서비스를 통한 돌봄은 양육지원(예술교육), 건강증진(예술치유), 관계지원(교류, 고립해소) 측면에서 기능하고 있으나 문화분야에서 돌봄에 대한 정책적 체계화는 미흡한 실정, 문화분야 돌봄정책을 개념화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

### 2) 연구목적

#### ①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개념화 및 관계정립

- 돌봄의 사회화(또는 사회적 돌봄) 개념과 정책 현황, 문화분야에서의 돌봄 기능 영역과 기존 돌봄정책 서비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문화분야 돌봄에 있어서 정책적 개념을 정립함

#### ②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분석 및 전망과 과제 도출

- 문화서비스 이용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수준, 문화여가 활동 수준, 자기돌봄 수준, 문화분야에서 돌봄관련 정책요구 등을 분석하고, 타인 돌봄 부담에 따른 문화격차와 돌봄 패러다임이 자기돌봄을 요구에 따른 문화·돌봄 통합모델 수요 확대 전망 및 정책과제 도출함

## 나. 연구범위 및 방법

- 문헌연구,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인터뷰, 사례 조사(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돌봄패러다임 변화 및 문화소비와의 관계 파악, 문화분야 돌봄 정책 수요 및 전망, 정책과제를 제안함

## 2. 문화분야 돌봄정책 영역

### 가. 문화소비의 특징과 돌봄효과

- 양육, 간병, 가사 등 돌봄부담이 클수록 여가시간은 감소하여 문화소비를 통한 삶의 만족과 휴식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고, 반대로 문화소비를 늘리면 돌봄공백이 생기거나 돌봄노동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기회비용 관계임
-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증가하면서 자기돌봄(Self-Care)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소비는 여가 및 건강생활, 심리치유, 교류증진 등 자기돌봄에 효과적임
  - 문화예술 접촉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불안, 우울증 증상 등 영역에서 치유 및 치료 효과가 있고, 문화활동이 서로 교류하는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고립해소 효과 측면에서도 자기돌봄 역할을 하고 있음

### 나. 돌봄에 대한 정책범위 및 대상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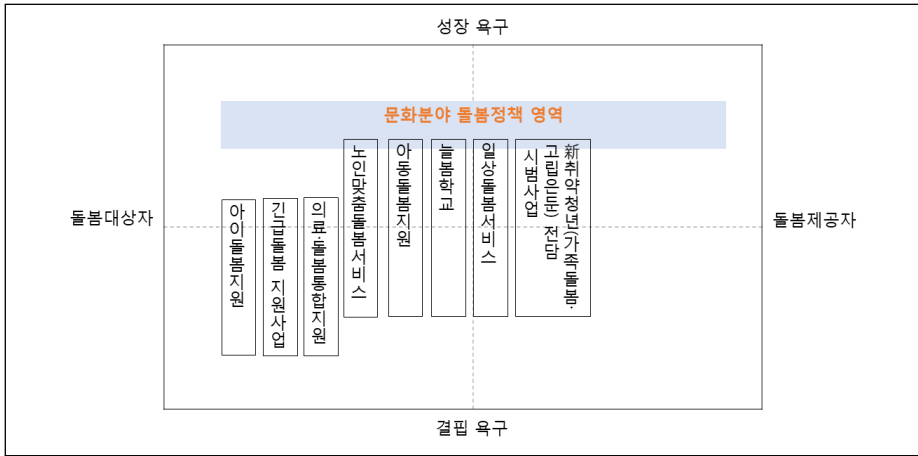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 출생률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돌봄 수요는 다원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정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돌봄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돌봄이라고 여겨졌던 복지, 보건, 의료 등은 물론이고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망라하며 국민 삶의 유지와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다. 문화분야 돌봄정책 영역 : 성장욕구(삶의 질·자기효능) 충족과 자기돌봄

- 문화분야가 가진 사회적 기능(여가 및 건강생활, 심리치유, 교류증진 등)은 성장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돌봄제공자에 대한 자기돌봄에 타 분야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욕구와 돌봄 관계의 지형에서 위치할 수 있음
  - 결핍욕구 :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영역으로 신체적 문제에 대한 의료, 가사, 일상생활 지원이나 아동에 대한 대리육아나 교육이 해당

- 성장육구 :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영역으로 육아, 간호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사회적 교류 등이 해당

[그림 1] 문화분야 돌봄정책 영역



<표 1> 돌봄서비스 정책현황

돌봄대상	관련 정책서비스	소관부처	법적근거
아동	- 놀음학교(방과후 프로그램) : 초등대상 정규수업 외 학교에서 종합 교육 운영	교육부	-
	- 아동돌봄지원 :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운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 육아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 돌봄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나눔기회 제공, 참여자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자녀 성장발달을 돕는 놀이, 문화 체험 활동 등 그룹돌봄 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취약노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 의료·돌봄통합지원 : 노인이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청·중장년	- 일상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 :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 가족 자기돌봄 코디네이터 배치, 자조모임, 간병 및 돌봄 교육, 자기돌봄을 위한 지원 등	보건복지부	
	- 긴급돌봄 서비스 : 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 시적(30일, 70시간 내외)으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	보건복지부	-

### 3. 돌봄정책 사례 분석 시사점

#### 가. 대상별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관심

- 기존 돌봄 사업들은 생애주기별·대상별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족돌봄 기능의 약화 등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음
- 기존에 돌봄 서비스는 주로 돌봄 대상자(cared)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돌봄자(carer)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쉼과 재충전, 활력있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정책적인 관심 증가

#### 나. 돌봄 정책 및 사업의 문화서비스 결합 양상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

- 돌봄사업에서 아동에게 문화·예술 체험이나 또래관계 형성 관련한 문화프로그램, 청년·중장년에게는 여가나 교류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노인에게는 사회참여나 교류증진을 위한 문화 활동이나 예술치유 등 문화서비스를 결합하는 경향을 보임
- 돌봄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문화서비스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부가적·단기적·일회적 협력에 그치다보니, 서비스 제공 인력의 품질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역 간 서비스 편차 발생 등의 해소 필요

〈표 2〉 돌봄 정책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돌봄 정책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중점</li> <li>•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지원 등장</li> <li>• 민관 협력 및 지역 네트워크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정책 전반의 통합성·보편성 강화에 대응, 문화서비스를 통한 돌봄 중점 대상과 영역 설정 필요</li> </ul>
문화서비스 결합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문화예술 체험, 놀이·창의활동</li> <li>• 청년·중장년: 여가·교류 중심 문화활동</li> <li>• 노인: 치유·예술·사회참여형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분야가 부가적·단기적·일회적으로 활용, 서비스 품질 및 지역 편차 문제 등의 해소 필요</li> </ul>
추진체계·인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특화인력의 문화서비스 전문성 부족</li> <li>• 문화서비스 인력의 돌봄적 관점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자원 자격관리(재교육) 등 문화 분야와 돌봄 결합을 위한 기반 마련, 전문화된 인력 확보 필요</li> </ul>

## 4.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분석 결과

### 가. (돌봄 부담) 돌봄 제공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

-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일 평균 4.2시간, 휴일 평균 6.3시간으로 평일대비 휴일에 돌봄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음
- 가족 돌봄으로 인한 현재 일상 유지 및 미래 계획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는 ‘어렵다(매우 어렵다+어렵다)’는 의견이 64.8%로, ‘어렵지 않다(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35.3%) 대비 높게 분석되었음

### 나. (돌봄 제공자) 낮은 여가활동 참여·만족, 여가시간 부족, 낮은 자기돌봄 수준

- 조사에서 제시한 여가활동의 유형(문화예술관람, 영화관람, 독서, TV시청, 모바일 콘텐츠 및 OTT 시청, 게임, 휴식, 기타) 모두에서 가족돌봄자가 비돌봄자 대비 여가활동별 참여도·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모두 낮게 나타났음
- 지난 1년 동안 여가에 소요한 하루 평균 시간은 가족돌봄이 있는 경우(평균 평일 3.2시간, 주말 4.4시간)가 가족돌봄이 없는 경우(평균 평일 3.4시간, 주말 6.6시간) 보다 여가시간이 적었음
-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맺기의 충분도, 현재 삶 만족도 모두 가족돌봄자가 비돌봄자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 삶에 불만족한 주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 문화여가 서비스 정책지원 요구, 문화정책과 복지·의료적 돌봄 결합 요구

- ‘문화여가 서비스(본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은 가족돌봄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전체 74.6%, 가족돌봄자 77.5%, 비돌봄자 72.7%)
- 문화정책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책서비스로는 돌봄서비스(노인돌봄, 가사돌봄, 육아돌봄, 긴급돌봄과 같이 복지와 의료 측면)에 대한 의견 다수, 이외에 가족참여형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 지원, 돌봄맞춤형 문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정신·심리돌봄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개진

## 5. 문화분야 돌봄정책 전망과 과제

### 가. 문화분야 돌봄정책 전망

-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돌봄부담과 건강 취약(거동불편, 질병, 고립, 부상, 정신질환) 문제, 아동·청년·중장년·노인 등 돌봄 대상별 복지 갈등, 정신건강 포함 다양한 돌봄위기가 관찰됨
- 한편 양육, 간병, 가사 등 돌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증가시켜 여가시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여가활동 참여의 동기 감소와 활동 제약, 경제적 부담 등이 발생되어 결국 문화격차의 주요 원인이 됨

〈표 3〉 문화분야 돌봄정책 전망 종합

구분	삶의 특징	돌봄 공백문제	정책변화와 전망	문화결합 수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발달 단계별 신체·정서·사회적 변화 큰 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 저학년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심각</li> <li>• 맞벌이 가정 절반 돌봄 사각지대 경험, 대체 돌봄비용 부담</li> <li>• 부모 여가시간 부족으로 돌봄 질 저하, 부모 우울·스트레스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대응 위해 무상보육, 유아 의무교육, 통합 아동복지 정책 확대</li> <li>• 양육자 돌봄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면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하는 '아동 중심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예술활동, 정서·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li> <li>• 돌봄공백 보완 및 부모와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 필요</li> <li>• 수도권 편중 해소, 지역사회 문화시설 연계 필요</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취업, 독립, 사회적 역할 준비 단계</li> <li>• 정신건강 문제(우울 8.8%, 번아웃 32.2%)·고립 비율 5.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돌봄 청년 15~63만명, 주당 21.6시간 돌봄, 우울군 61.5% (일반청년 8.5% 대비 매우 높음)</li> <li>• 학업·진로 부정적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기본법」 이후 청년 삶 전반 지원으로 정책 확대</li> <li>• 문화·여가·심리 지원 수요 매우 높음 (69.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여가 활동 통한 심리 회복, 사회적 고립 해소 필요</li> <li>• 자조모임, 멘토링, 네트워크 연계 과제 부상</li> </ul>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부양·미독립 자녀 책임 → '샌드위치 세대'</li> <li>• 건강 악화·정체성 혼란·고독사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대 남성</li> <li>• 사회관계 단절, 우울·자살생각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재가돌봄+심리 지원 통합)</li> <li>• 소득·나이·조건 무관 이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돌봄 욕구 높은 계층, 건강관리·사회교류·심리지원 필요</li> <li>• 문화·여가로 삶의 만족도 회복·우울 예방 중요</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역할 상실, 빈곤·고립 → 우울증 11.3%</li> <li>• 독거노인 32.8%, 건강·정서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률 11.4% → 돌봄 충분치 않음</li> <li>• 비공식 부양망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케어 중심 통합돌봄 강화</li> <li>• 2026년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활동이 고독감·우울 완화, 세대 간 이해 증진</li> <li>• 액티브 시니어·창의적 노화 프로그램</li> </ul>

## 나. 문화분야 돌봄정책 과제

- ① 인프라 개선 : 돌봄 친화적 문화공간
  -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에서부터 문화시설 인프라와 프로그램 전반에 개인에 대한 관심과 돌봄 측면에서 세심한 사업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문화시설 운영 평가 적용, 인증 및 인센티브)
- ② 정책서비스 개발 : 돌봄 제공자를 위한 문화여가적 돌봄(Respite)
  - 돌봄제공자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겪으며 특히 가족돌봄자가 있는 경우 가족 전체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돌봄 제공자를 위한 문화여가적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구축
- ③ 인력양성·배치 : 문화서비스 연결인력 개발, 복지·의료 영역 배치
  - 문화분야 돌봄정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제약하에서 문화에 접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연결 인력 개발 및 현장 배치

〈표 4〉 문화분야 돌봄정책 과제 요약

구분	필요성	정책과제(안)	관련 사례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아동동반 문화활동 증가, 50~60대 문화소비층 부상</li> <li>• 문화 콘텐츠(전시, 공연 등) 공급 중심에서 이용자 편의 중심, 포용적 설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문화시설에 ‘돌봄친화 설계·운영 기준’ 마련, 평가 및 인증제, 인센티브 제도 도입</li> <li>• 유모차·고령자·장애인 배려 동선, 어린이 휴게공간 확충, 케어링 및 가족동반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도서관·극장에 아동 돌봄·놀이공간 설치, 부모 프로그램 병행 운영</li> <li>• 문화시설이 ‘지역 돌봄 거점’으로 기능</li> </ul>
정책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돌봄자의 경제·정서적 부담 심화, 문화·예술 참여 및 여행이 돌봄 제공자 번아웃·우울 완화에 효과</li> <li>• 돌봄대상·제공자가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로 가족관계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문화 결합 프로그램, ‘Respite Care’(돌봄제공자 휴식권) 개발</li> <li>• 예술치유 및 가족동반 캠프, 돌봄제공자 휴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품질관리·성과평가 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가족돌봄자 국가전략’(2023-2027)에 의거, 창의적인 휴식 아틀리에, 프랑스 돌봄제공자와 돌봄이 필요한 이를 위한 바캉스 등 추진</li> </ul>
인력 양성·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개인 욕구 맞춤형 서비스 설계 필요</li> <li>• 돌봄+문화 융합 전문 인력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서비스 연결인력(문화돌봄 코디네이터) 양성·배치</li> <li>• 지역사회 네트워크·민간기관 협력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지역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 운영</li> <li>•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부족,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 받지 못하는 한계</li> </ul>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b>제2장 돌봄과 문화의 속성</b> .....	<b>9</b>
제1절 돌봄의 개념 및 정책현황	11
1. 돌봄의 사회화와 사회적 돌봄	11
2. 돌봄정책 발전과정과 동향	16
3. 돌봄정책 구조 및 현황	19
제2절 문화누림과 돌봄의 관계	30
1. 문화소비와 여가시간	30
2. 자기돌봄(Self-Care) 효과	31
3. 문화분야 돌봄 관련 현상의 개념 분석	35
제3절 문화분야 돌봄정책 영역	41
<b>제3장 돌봄정책 사례 분석</b> .....	<b>45</b>
제1절 분석 개요	47
1. 사례선정 기준	47
2. 사례분석 관점 및 내용	48
제2절 돌봄정책 분석	51
1. 아동 돌봄	51

2. 청년 및 중장년 돌봄	69
3. 노인 돌봄	7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3
<b>제4장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분석</b> .....	<b>87</b>
제1절 분석개요	89
1. 조사설계	89
2. 응답자 특성	91
제2절 조사결과	93
1. 돌봄부담	93
2. 문화·여가생활	96
3. 자기돌봄 수준	107
4.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	112
제3절 조사결과 시사점	119
<b>제5장 문화분야 돌봄정책 전망과 과제</b> .....	<b>123</b>
제1절 문화서비스 욕구와 돌봄 전망	125
1. 문화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	125
2. 생애주기별 문화서비스 돌봄 필요성과 전망	134
제2절 문화분야 돌봄정책 과제	147
1. 인프라 개선	147
2. 정책서비스 개발	150
3. 인력양성·배치	157
<b>참고문헌 / 163</b>	
<b>ABSTRACT / 169</b>	
<b>부록 설문지 / 171</b>	

---

# 표 목차

〈표 1-1〉 조사설계	7
〈표 2-1〉 좋은 돌봄(Decent Care Work)원칙	15
〈표 2-2〉 돌봄정책 법적근거	20
〈표 2-3〉 돌봄서비스 정책현황	23
〈표 2-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내용	28
〈표 2-5〉 타인돌봄과 자기돌봄 비교	32
〈표 2-6〉 정책연구에서 문화돌봄 관련 내용	35
〈표 2-7〉 정책계획에서 문화돌봄 관련 과제 내용	36
〈표 2-8〉 지역사회에서 문화돌봄 사업 사례	40
〈표 3-1〉 각 부처의 아동 돌봄 주요 정책사업 개요	51
〈표 3-2〉 서울시 특화 저출생 대응 5개년 종합계획의 변천 (2022~2026)	54
〈표 3-3〉 ‘다함께돌봄사업’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용 지침	56
〈표 3-4〉 고산늘봄학교의 운영 프로그램(2023년 기준)	59
〈표 3-5〉 ‘아이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66
〈표 3-6〉 부처별 늘봄학교 관련 서비스 운영 내용	67
〈표 3-7〉 ‘Wee프로젝트’ 추진체계	68
〈표 3-8〉 ‘Wee 센터’ 및 ‘Wee 스쿨’ 개설 현황	68
〈표 3-9〉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중 특화서비스 내용	71
〈표 3-10〉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중 중장년 대상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내용	72
〈표 3-1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현황(2025)	73
〈표 3-12〉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74
〈표 3-13〉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 체계	74
〈표 3-14〉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추진 체계	76
〈표 3-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78
〈표 3-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사업	79
〈표 3-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주체별 주요 기능	80
〈표 3-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 돌봄 관련 사업 내용	82

〈표 3-19〉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예술누림(운영시설형)’ 추진 개요	85
〈표 3-20〉 돌봄 정책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86
〈표 4-1〉 조사설계	89
〈표 4-2〉 조사내용(설문지 구성)	90
〈표 4-3〉 응답자 특성	91
〈표 4-4〉 가족돌봄 해당여부	93
〈표 4-5〉 주돌봄자 여부	94
〈표 4-6〉 돌봄 대상 가족구성원	94
〈표 4-7〉 가족돌봄 소요 평균 시간	95
〈표 4-8〉 가족 돌봄으로 인한 현재 일상 유지 및 미래 계획의 어려움 정도	96
〈표 4-9〉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97
〈표 4-10〉 문화여가활동 참여 종류	98
〈표 4-11〉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문화예술관람	99
〈표 4-12〉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영화관람	99
〈표 4-13〉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독서	100
〈표 4-14〉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TV시청	100
〈표 4-15〉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	100
〈표 4-16〉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게임	101
〈표 4-17〉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휴식	101
〈표 4-18〉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기타	101
〈표 4-19〉 지난 1년 동안 가장 희망했던 여가활동	102
〈표 4-20〉 하루평균 여가시간	103
〈표 4-21〉 여가시간 충분 정도	104
〈표 4-22〉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105
〈표 4-23〉 여가생활 불만족 사유와 가족돌봄 연관도	106
〈표 4-24〉 인간관계 전반적 만족도	107
〈표 4-25〉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_가족 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108
〈표 4-26〉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_나에게 위로를 주는 활동이나 사람들을 찾는다	109
〈표 4-27〉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_좋아하는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다	109
〈표 4-28〉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_삶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109
〈표 4-29〉 현재 삶 만족도	110
〈표 4-30〉 현재 삶의 불만족 사유와 자기돌봄 연관도	111

〈표 4-31〉 알고 있는 정책지원의 종류	112
〈표 4-32〉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대리돌봄/재가돌봄 서비스	113
〈표 4-33〉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가사지원 서비스	114
〈표 4-34〉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의료지원 서비스(본인) : 약물 치료	114
〈표 4-35〉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심리상담 서비스(본인) : 언어적 소통	114
〈표 4-36〉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예술치유 서비스(본인) : 미술, 음악, 춤·무용 등으로 소통	115
〈표 4-37〉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문화여가 서비스(본인) :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창작 참여 등	115
〈표 4-38〉 예술치유 서비스를 원할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개방형 응답)	115
〈표 4-39〉 문화여가 서비스를 원할히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개방형 응답)	116
〈표 4-40〉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의료지원 서비스(본인) : 약물 치료	117
〈표 4-41〉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심리상담 서비스(본인) : 언어적 소통	117
〈표 4-42〉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예술치유 서비스(본인) : 미술, 음악, 춤·무용 등으로 소통	117
〈표 4-43〉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문화여가 서비스(본인) :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창작 참여 등	118
〈표 4-44〉 문화정책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책서비스 (개방형 응답)	118
〈표 5-1〉 문화여가 지출액과 지출률	126
〈표 5-2〉 가계소비지출 중 오락문화지출 추이	127
〈표 5-3〉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사회조사) 추이	128
〈표 5-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추이	128
〈표 5-5〉 도시-농촌-도농복합형별 지역문화지수 순위(상위 10개)	133
〈표 5-6〉 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33
〈표 5-7〉 문화예술행사 관람 욕구-실행 불충족 수준	134
〈표 5-8〉 전국민과 자녀돌봄 가구 여가시간(2024년 기준)	136
〈표 5-9〉 가족돌봄청년의 복지 욕구	141
〈표 5-10〉 문화예술행사 선택 기준	146
〈표 5-11〉 프랑스 2023-2027 가족 돌봄 제공자 지원 및 동원 전략 구성	154
〈표 5-12〉 프랑스 ‘창의적인 휴식 아틀리에(Les ateliers de répit créatif)’ 주요내용	155
〈표 5-13〉 프랑스 돌봄제공자와 돌봄이 필요한 이를 위한 바캉스 프로그램 사례	156
〈표 5-14〉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PLW) 핵심요소와 기술 교육 구성	159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8
[그림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26
[그림 2-2]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28
[그림 2-3] 생활시간 유형 구분	31
[그림 2-4] WHO 자기돌봄 프레임워크의 요소	32
[그림 2-5] 문화분야 돌봄정책 영역	44
[그림 3-1] 늘봄학교의 늘봄과정 및 운영인력	58
[그림 3-2]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 비전체계도	62
[그림 3-3] 엄마아빠가 행복한 문화 프로젝트 예	62
[그림 3-4]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체계	65
[그림 3-5]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체계	66
[그림 3-6] 늘봄학교 운영체계	67
[그림 3-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81
[그림 4-1] 가족돌봄 및 주돌봄자 해당여부	93
[그림 4-2] 돌봄 대상 가족구성원	94
[그림 4-3] 돌봄 소요 평균 시간	95
[그림 4-4] 가족돌봄으로 인한 현재 일상 유지 및 미래 계획의 어려움 정도	96
[그림 4-5]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97
[그림 4-6] 문화여가활동 참여 종류	98
[그림 4-7]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가족돌봄 해당여부별	99
[그림 4-8] 지난 1년 동안 가장 희망했던 여가활동	102
[그림 4-9] 평균 여가시간 : 평일	103
[그림 4-10] 여가시간 충분 정도	104
[그림 4-11]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105
[그림 4-12] 여가생활 불만족과 가족돌봄 연관도	106
[그림 4-13] 인간관계 전반적 만족도_가족돌봄 해당여부 및 돌봄 대상별	107
[그림 4-14]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	108

[그림 4-15] 현재 삶 만족도	110
[그림 4-16] 현재 삶의 불만족 사유와 자기돌봄 연관도	111
[그림 4-17] 알고 있는 정책지원의 종류	112
[그림 4-18]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	113
[그림 4-19]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가족돌봄 해당여부별	116
[그림 5-1] 가계소비지출 중 오락문화지출 추이	126
[그림 5-2]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추이	128
[그림 5-3] 여가시간 변화	130
[그림 5-4] 문화예술행사 관람 욕구-실행 불충족 수준	134
[그림 5-5]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1970~2024)	137
[그림 5-6] 가족돌봄청년의 우울	139
[그림 5-7]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 경험	140
[그림 5-8]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144
[그림 5-9] 프랑스 도서관 및 극장 아이돌봄 사례	150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1. 연구배경

### 가. 문화정책에서 ‘돌봄’ 등장

문화정책과 돌봄이 결합된 정책모델은 독립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아니나, 90년대 복지국가 담론과 함께 전통적 복지서비스의 폭이 넓어지면서 발현된 문화복지 정책에서, 2000년대 후반 들어 보편적 문화적 권리보장 측면의 문화서비스 관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확장과 맞닿아 있다. 문화정책은 문민정부의 선진문화 복지국가, 참여정부의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정책(바우처, 예술교육), 박근혜 정부의 문화권(Cultural right) 법제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윤석열 정부의 보편적 문화복지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문화적 취향과 기호를 형성시키는데 방점이 있었다면 현대로 올수록 문화적 욕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보다 필요계층에 초점을 둔 돌봄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이 문제되자 사회 전반에서 돌봄 체계에 중대한 도전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문화분야에서도 정책현장을 중심으로 ‘문화돌봄’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부터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복지시설에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나 대상별(아동, 노인, 청년 등) 문화서비스를 문화돌봄 용어로 사업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2020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3년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 지역사회 내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인력인 ‘문화돌봄사’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나.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넘어 다양한 돌봄서비스 요구

한국사회는 IMF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복지국가 담론과 함께 복지정책이 잔여적

선별복지에서 국민 기본권리 보장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은 가족 중심의 사적영역에서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돌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는 2012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하위개념으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폭넓은 분야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인 돌봄영역인 신체적 문제에 대한 돌봄인 의료, 가사, 일상생활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돌봄인 대리육아, 교육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정서적 돌봄, 사회적 교류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돌봄대상도 신체 및 정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정신영양아 아동부터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까지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돌봄대상자에 대한 타인돌봄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삶 전체를 전방위적으로 조망하는 자기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다. 문화분야 돌봄정책 전망과 과제 제시 필요

돌봄위기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강조되었으나 단순히 최근의 현상이 아닌 오랜 사회경제적 변화와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이다.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로(저출생고령화, 1인가구 증가) 사회적 돌봄 대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기존의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질적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총부양비는 100명 당 42.5명으로 추산되며 2050년에는 92.7명,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세 번째(홍콩 > 푸에르토리코 > 한국)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24).

문화예술을 통한 돌봄은 양육지원(예술교육), 건강증진(예술치유), 관계지원(교류, 고립해소) 측면에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러한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은 부처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분야에서 돌봄에 대한 정책적 체계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분야 돌봄정책을 개념화하고 전망을 살펴보며 문화정책에서 사회적 돌봄 기능과 역할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 가.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개념화 및 관계정립

본 연구는 문화분야 돌봄정책이 개념화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므로, 문화분야 돌봄정책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돌봄의 사회화(또는 사회적 돌봄) 개념과 정책 현황, 문화분야에서의 돌봄 기능 영역과 기존 돌봄정책 서비스 간의 관계분석을 통 문화분야 돌봄에 있어서 정책적 개념을 정립한다.

### 나.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 분석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와 돌봄결합 수요 및 인식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국민이 필요로하는 정책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문화서비스 이용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수준, 문화여가 활동 수준, 자기돌봄 수준, 문화분야에서 돌봄관련 정책요구 등을 분석한다.

### 다. 문화분야 돌봄정책 전망과 정책과제 도출

고령화와 사회적고립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압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돌봄경제 시장이 급부상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타인돌봄 부담에 따른 문화격차의 확대와 점차 돌봄 패러다임이 자기돌봄을 요구하면서 문화·돌봄 통합모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돌봄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인프라, 서비스(프로그램), 인력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담론이 등장한 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지역) 단위의 정책시스템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 나.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회적 돌봄의 이론적 개념과 돌봄정책 발전과정과 동향 및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소비의 속성이 돌봄에 어떠한 상호영향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현재 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 문화분야 돌봄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정부계획이나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는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영역(정책대상, 정책내용 및 목적)을 구체화하고, 해당 영역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과 선호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증가에 따른 돌봄경제 시장의 급부상과 타인돌봄 부담에 따른 문화격차 확대, 자기돌봄을 위한 문화와 돌봄 통합모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인프라, 서비스(프로그램), 인력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2. 연구 방법

### 가. 문헌분석

돌봄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문화소비와 관계 관련 문헌연구, 문화예술의 돌봄 기능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 나. 전문가 심층인터뷰

문화분야 돌봄 접근방법과 정책현황, 돌봄정책에서 문화서비스 이용과 문화정책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황 및 수요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 그룹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다. 이용자 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분야 돌봄정책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돌봄 부담 수준 및 생애주기별 분석 가능하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이 때 생애주기별 분석 가능하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표 1-1〉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최근 5년 이내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자 조사
조사 인원 (표본 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연령, 지역 및 육아, 간병, 가사 등 타인 돌봄부담자 표본할당 고려)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라인, 모바일, 이메일을 통한 조사
조사 내용	- 돌봄부담 수준 - 문화여가 생활 현황 - 자기돌봄 수준 -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수요
조사 기간	7월 15일 ~ 7월 30일

## 라. 사례분석

문화서비스가 돌봄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돌봄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를 생애주기 특성에 맞춰 살펴보고 문화서비스를 통한 돌봄해소(타인돌봄, 자기돌봄)의 맥락 및 결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제2장

## 돌봄과 문화의 속성



# 제1절 돌봄의 개념 및 정책현황

---

## 1. 돌봄의 사회화와 사회적 돌봄

### 가. 돌봄의 정의

보살핌, 보육, 양육, 보양, 간병, 신체수발, 가사 등과 관련되는 돌봄은 인간 삶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돌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어왔는데, 돌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광의적 정의로,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이 돌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피셔와 트론토(Fisher and Tronto)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돌봄을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돌봄이 가능한 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種)의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ronto, 2014). 이렇게 볼 때 돌봄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활동들은 물론이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는 많은 노동들도 돌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 양육, 간병, 간호 등은 물론이고 소방, 치안, 국방 등의 활동들도 돌봄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다른 형태의 돌봄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돌봄의 의미에 대해 현장의 설명을 요청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탐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Tronto, 2014). 이러한 접근은 유아동, 장애인, 환자, 노인 등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인까지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또한 사물, 집단, 동물, 식물 또는 환경 등도 이러한 돌봄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는 협의의 정의로, 인간 활동 중 극히 일부를 돌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앙스터(Daniel Engster)의 정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돌봄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존, 발달, 기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물학적으로 긴요한 필요를 충족하고 기초 역량을 발달 유지하며,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충을 피하거나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모든 것(Engster, 2017)”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생물학적 필요를 위한 “최소역량의 확충”으로 돌봄을 이해하는 것이다(서원주, 2023). 이렇게 볼 때 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지위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노동이나 활동”으로 요양 간병 등의 활동(이숙진, 2024)으로 한정되곤 한다. 이러한 협소한 이해는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의존적 인간으로 낙인찍거나 기존의 권력관계에 의거하는 관습적 정의라는 점에서 비판받아왔으나, 돌봄을 구체화함으로써 경험적 분석과 논의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정의는 돌봄을 국가정책으로 간주하는 관점과 연구들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처럼 어떠한 것을 돌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그 특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에게 돌봄은 필수적이며, 수급자와 공급자 간에 일어나는 관계적인 행위이다. 협소한 정의에서 돌봄의 수혜자는 영유아, 환자, 노인 등의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의존적 타자로 한정되곤 하지만, 광의의 정의에서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로 이해된다. 비록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돌봄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돌봄은 개인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둘 이상의 행위자에 의해 성립하는 상호행위(우예노 지즈코, 2024)”이다. 이처럼 “돌봄을 주고 받는 관계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삶의 부분이자 조건”인 것이다(김희강·박선경, 2021).

둘째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돌봄의 가치나 윤리가 배제된 사회구조로 인해 다면적이고 체계화된 불평등을 겪으며, 이는 ‘돌봄부정의’로 여겨진다(김희강, 박선경, 2021). 돌봄제공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게 해줌에도, 오랫동안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논외의 대상이 되어왔다(폴브레, 2007). 또한 돌봄 제공자는 인간 존재의 필수인 돌봄을 제공하지만 돌봄수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제약들로 인해 생계부양자의 의존자로 취급받는 어려움을 겪는다(Fraser, 2016). 돌봄제공의 의무나 책임은 젠더, 인종,

계급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있어, 여성, 이민자, 하위계층 등이 이를 담당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돌봄의 수혜측면에서도 나타나서 사회적 약자나 정치적 힘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돌봄에서 불이익을 받곤 한다(Tronto, 1993). 더불어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온전한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의존적 존재로 낙인찍히거나 때로는 혐오나 부담의 대상이 된다. 이는 동등한 시민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Tronto, 2014).

셋째 돌봄은 사적인 것과 관련됨과 동시에 공적인 가치를 지닌다. 돌봄은 친밀한 관계 속 면대면의 상황에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돌봄은 인간사회의 존속에 있어 필수적임으로 공동체의 지속과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돌봄의 공공성을 수면 위로 드러내 준 여러 계기중 하나는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며 나타난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이라 할 수 있다. 신사회 위험이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남성생계부양 가족임금체계의 붕괴, 가족 내 돌봄 자였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인데 이것은 가족 내 돌봄위기로 이어졌다(김운영 외, 2019). 즉 맞벌이 등으로 인해 돌봄을 전담하던 여성들이 가족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현저히 줄게 되고, 핵가족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진행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돌봄이 약화 혹은 단절되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공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돌봄위기는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간 감춰져 있던 돌봄문제가 사회구조와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통해 사회문제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여러 학자들은 돌봄을 사회적이며 보편적 영역으로 확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Williams, 1989; Tronto, 1993; Fraser, 1994; 길리진, 1997; Sevenhuijsen, 2003; 트론토, 2014; Held, 2017; Kittay, 2016).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연합(UN)은 2023년 7월 총회에서 매년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지정하여, 돌봄노동이 사회유지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가 돌봄과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나. 돌봄의 공적 전환

전통적으로 돌봄 부담은 가족에서 해결해왔으나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부담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돌봄부담의 주체가 사회와 국가로 이동되었고 돌봄은 사회정책의 한 영역이 되었다. 이처럼 사적인 혹은 비공식 영역에서 담당하던 돌봄기능과 부담이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으로 전이, 확장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돌봄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aring)’ 및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들 수 있다. 돌봄의 사회화는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여성에게 일임되어 있던 돌봄노동을 가시화하고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장지연, 2011)”을 의미한다. 사회적 돌봄은 “타인에게 의존적인 아동, 노인 등의 육체적,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자 관계이며, 돌봄이 수행되는 규범적, 경제적, 사회적 틀(Daly and Lewis, 2000; 윤정향·마경희, 2021)”로 정의될 수 있다. 이 두 개념 모두 공통적으로 돌봄을 가족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러 사회적 참여자들이 함께 다루어야 할 것으로 바라보기에, 종종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 혹은 이해되곤 한다.

돌봄의 사회화 및 사회적 돌봄 논의에 있어 주요 관심은 국가이다. 사회적 돌봄 논의에서는 돌봄이 수행되는 조건과 규범, 재정적이고 감정적 비용의 분담, 조직화 등의 문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Daly and Lewis, 2000; 윤정향·마경희, 2021). 돌봄은 친족관계, 시장 등을 통해서도 지원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담의 전가나 회피, 서비스 질과 접근성의 차이, 불평등의 고착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개선 혹은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돌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사회권으로서의 돌봄권’, ‘돌봄에 있어 시장의 부작용’, ‘사회투자프레임’ 등의 논리가 동원된다. 먼저, 돌봄은 사회권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사회권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동체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부와 배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성환, 2021)”이기에 국가의 역할이 요청된다. 사회권으로서의 돌봄권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다(장수정, 2020; 백경훈, 2022; 최영, 202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타인의 보살핌이 없다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으로 자리하게 된다.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헌신, 사랑 등 인간성의 실현도 포함하는 한편(길리건, 1997; 키테이, 2016) 돌봄노동자의 경제적 독립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장지연, 2011) ‘돌봄을 제공할 권리’ 역시 사회권에 포함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돌봄제공자 권리에 대해 돌봄노동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좋은 돌봄(Decent Care Work)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인정, 부담 경감, 책임의 재분배, 정당한 보상, 대표성 보장"이 돌봄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의 권리와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사회정의,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표 2-1〉 좋은 돌봄(Decent Care Work)원칙

원칙	설명
권리 기반 접근	국제노동기준과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한 인권 중심의 돌봄정책 설계
공공성 강화	돌봄을 공공재로 인식,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
성평등 실현	여성, 이주노동자, 취약계층의 차별 해소와 동등한 기회 보장
사회보호 및 노동권 보장	모든 돌봄노동자(공식·비공식, 이주노동자 포함)에 대한 사회보장, 노동권, 안전보장, 폭력·괴롭힘 방지
적정임금과 근로조건	최저임금, 적정 근로시간, 건강·안전, 휴가 등 노동기준 준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와 경력개발 지원
공정한 채용과 승진	차별 없는 채용, 공정한 평가와 승진 기회 보장
노동조합 및 사회적 대화	돌봄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사회적 대화 참여 보장

민간영역에서 돌봄이 수행될 때에도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 돌봄의 사회화와 급격한 수용증가에 따라 돌봄은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돌봄은 가족 내의 의미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갖기에 이를 시장에만 맡기게 되면 사회적 수준에서 충분한 양이 소비되지 않거나 개인의 불평등한 자원에 따라 돌봄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장지연, 2011). 구체적으로, 민간영역에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구매비용 지원이나 서비스 품질관리와 같은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다(장민선, 2017).

사회투자프레임에서 돌봄지원은 개인과 국가의 생산성, 경제적 이익,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투자자로 여겨진다(Williams, 2012). 이 프레임에 따라 아동은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그리고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면서 주요 정책의 수혜자가 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반빈곤 정책, 교육정책 등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들은 돌봄 요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취업증진과 아동빈곤 예방 정책의 확대에 기여했다(Williams, 2012; 윤정향·마경희, 2021).

## 2. 돌봄정책 발전과정과 동향

### 가. 공적 돌봄서비스 등장과 정책화

산업화 이후의 많은 국가들은 가족과 여성을 통한 사적 돌봄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1960년대 이후부터 일상적 돌봄서비스 지원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사회적 돌봄 필요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김은정, 2011).

이러한 돌봄정책은 국내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이 돌봄서비스 분야이며 현재 거의 동일한 용어로 통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철·이재훈, 2015)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제도는 1970년대 생활시설서비스 중심, 1990년대 이용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중심, 2007년 이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양난주, 2011; 김영중, 2012; 김훈·이재훈, 2015).

1970년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정부가 역할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때에는 무의탁 취약계층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수행 민간기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활시설서비스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졌다. 이어 198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 시설 자격이 비영리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에는 시설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방정보의 국가보조금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지원되었다.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사회서비스가 증점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이용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대상으로 위탁계약방식의 서비스가 공급되었으며 주로 재가 이용서비스 형태의 생활지원, 상담, 교육, 자활, 케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즈음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은 약화되었고 민간이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강훈·이재훈, 2015). 이 시기는 돌봄서비스의 욕구가 있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정부에 기반한 서비스제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돌봄지원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강혜규 외, 2012).

이후 2007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기제 아래, 사회서비스 체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공급자에게 지원을 했던 반면, 이후에는 민간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구매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의 전환인 바우처 제도가 실시된 것이다(강훈·이재훈, 2015). 이는 2011년에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근거한 바우처에 따라 그전까지 비영리조직이 주로 담당하던 사회서비스 제공이, 영리적 목적을 지닌 조직까지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되며 시장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바우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일자리창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간접지원, 기관 간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겨지면서 돌봄에 대한 대표적 사회적 서비스제도로 자리잡았다(강혜규 외, 2012). 이를 계기로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보편형 아동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인아동재활, 언어발달치료 등 다양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돌봄은 국내 정책용어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2007년에 시작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들 수 있다. 당시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09). 이와 함께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구체적 제도화 모습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김철·이재훈, 20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시기 전에는 돌봄을 명시적으로 정책명칭에 활용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기에 이 서비스는 돌봄정책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돌봄이라는 말은 영어권에서 1980년대중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연구서가 등장했는데, 당시의 돌봄은 육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나 고령자 돌봄을 포함하는 용어로는 조심스럽게 사용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고령자 돌봄분야에서 돌봄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했고 이후 영어권의 영향으로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돌봄이 사용되었다(우에노 지즈코, 2024). 용어의 사용양상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일차적으로는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공백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돌봄이 아동뿐만

아니라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로 확대되는 출발점이자 돌봄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경유하며 한국의 돌봄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층위에서 진화했다.

## 나. 정책의 배경과 주요 발전 과정

한국에서 돌봄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배경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한 고용·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대 중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돌봄이 정책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5년에 최초로 50%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55.6%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가족 내 아동, 노인, 성인,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돌봄을 전담하던 여성이 더 이상 이러한 역할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과 사망의 저하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영된 고령화지수 역시 1990년 20.0명에서 2025년에는 199.9명에 달하며 급속히 상승해 왔다. 이러한 고령화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인구의 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가능 인구는 한국의 총부양비를 증가시켜왔으며 2050년에는 세계 8번째로 그리고 2072년에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노년부양비 역시 2025년에는 홍콩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24). 이러한 부양비 증가는 부담의 증가나 공백 등 돌봄관련 여러 문제들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졌다.

아울러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 역시 돌봄의 정책적 개입을 촉진했다. 한국의 주된 가구 유형은 2005년까지 4인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 2015년부터는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고, 4인가구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23년 13.3%로 감소한 반면 1인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9.0%에서 35.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교류의 결핍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취약 인구의 증가를 가져옴과 동시에 질병과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연관되는 다양한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돌봄정책은 비단 복지서비스 차원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과 함께 서구 복지국가와 대비되는 복지국가 유형으로 간주된다(Holliday, 2000; Aspalter, 2006, Choi, 2012; 김윤영 외, 2019). 이에 따르면 한국은 (반)권위주의적 체제와 성장우선주의가 핵심을 이루며, 생산주의 혹은 개발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복지발전이 이루어진다(김윤영 외, 2019).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용불안이 심화되었으며,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돌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배경이 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맥락에 따라 돌봄정책은 이전까지 무상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유형의 확장을 촉진하면서 고용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 3. 돌봄정책 구조 및 현황

#### 가. 돌봄정책 법적 근거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돌봄에 대한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차선자, 2025), 「아이돌봄 지원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명에 돌봄을 명시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돌봄정책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2012년 2월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성격 및 지원의 원칙, 아이돌봄사의 직무, 책무, 자격, 교육 등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 등을 정하고 있다.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 시행에 맞춰 시군구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전담조직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통합판정조사 도입 등 기반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3월 제정

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정의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담지원(사례관리, 상담 등),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 전문기관 인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2-2〉 돌봄정책 법적근거

법률명	제정일	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	2012.2.1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 3. 26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5.3. 25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돌봄 사회서비스 관련된 일반 법제로 간주된다(장민선, 2017). 2012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의 하위개념으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폭넓은 분야에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돌봄이 명시되어있는데, 돌봄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의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7년 도입된 바우처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여기

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계획, 비용부담,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면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의 경우 법률 내용에서 돌봄관련 지원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돌봄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양육을 위해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원에게 휴직을 명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양육, 육아 등을 보장 혹은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22조의2부터 4까지는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 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의 경우 직접적인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고용 환경의 개선과 평등한 대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등은 법령에서 돌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거주시설과 돌봄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돌봄을 위한 휴식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아동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설치, 운영, 제공 서비스, 그리고 협동돌봄센터<sup>1)</sup>의 성격을 규정한다. 「노인복지법」

에서는 고령친화도시의 조성, 노인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 돌봄을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의 법령들과 함께 주요 돌봄대상인 노인, 청소년, 정신질환자 등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들을 다루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정하고 있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각 시도 및 교육청 등에서의 위프로젝트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센터, 시설, 기관 등을 정하고 있다.

## 나. 돌봄정책 현황

돌봄정책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의 일상적 욕구(신체활동, 정서지원 등)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에 분산되어 대상별 복지서비스에서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약자돌봄 및 자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처소관 교육 및 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 시스템 내 돌봄(늘봄학교),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대상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이나 노인대상 집과 지역사회 내 시설, 여성가족부는 아이와 청소년 대

---

1)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상 돌봄시설(육아나눔터)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괄목할만한 변화로는 돌봄대상자가 확대되고 돌봄서비스는 다원화되는 현상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주요 돌봄대상이던 아동, 노인 외에 돌봄 사각지대 계층(청년, 중장년층, 가족돌봄자 등)의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의료, 가사 뿐만아니라 일상생활 및 여가까지 확대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3〉 돌봄서비스 정책현황

돌봄대상	관련 정책서비스	소관부처	법적근거
아동	- 늘봄학교(방과후 프로그램) : 초등대상 정규수업 외 학교에서 종합 교육 운영	교육부	-
	- 아동돌봄지원 :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운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공동육아나눔터 : 육아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 돌봄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나눔기회 제공, 참여자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자녀 성장발달을 돕는 놀이, 문화 체험 활동 등 그룹돌봄 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취약노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 의료·돌봄통합지원 : 노인이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청·중장년	- 일상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신규약청년 전담 시범사업 :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 가족·자기돌봄 코디네이터 배치, 자조모임, 간병 및 돌봄 교육, 자기돌봄을 위한 지원 등	보건복지부	
	- 긴급돌봄 서비스 : 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 시적(30일, 70시간 내외)으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	보건복지부	-

## 1)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 ① 늘봄학교(교육부)

교육부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인 늘봄학교를 시행 중이다. 2024년 시범 도입을 거쳐 2025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부모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핵심 돌봄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이 분리 운영되어 돌봄 공백, 사교육비 부담, 학부모의 양육 경력단절 문제가 지속되자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이 안전하게 머물며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체육, 문화예술, 인문사회, 창의과학, 기후환경, 학교적응 및 정서, 교과교육 등이 있다. 2024년에는 초1을 우선대상으로 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2학년까지 그리고 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② 아동돌봄지원(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아동돌봄지원 정책을 통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가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8항에 근거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일상 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급식 및 간식제공, 상담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학교돌봄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23).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구 등이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된다.

### ③ 아이돌봄지원(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에 근거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되며,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하원 동행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의거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고자 위함이다.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나눔기회 제공, 참여자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자녀 성장발달 활동을 돕는 놀이, 문화·체험 활동 등 그룹 돌봄 활동을 지원한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는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및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이상 가정, 맞벌이가정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 2) 노인 대상 돌봄

###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통합·개편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약화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5), 2025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② 의료·돌봄통합지원(보건복지부)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돌봄, 복지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 지원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의거하여 노인이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47개 시군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2025년부터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에 대해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

### 3) 청·중장년 및 돌봄 사각지대 대상

#### ① 일상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중 일상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시범 도입<sup>2)</sup>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기존 돌봄 사각지대였던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이 특징점이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 또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 재가 돌봄,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에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청년층까지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돌봄(신체청결, 몸단장지원, 신체수발지원, 건강지원), 가사지원(청소, 세탁, 식사준비), 일상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동행,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의 기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특화서비스로 식사, 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건강생활, 신체건강, 간병교육, 독립생활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서비스 비용은 유형별, 소득별로 상이하다.

2) 202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분리하여 신규 추진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024년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17개 시도 185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 병행되고 있다.

[그림 2-2]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주: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이 외에도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24.3.) 202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표 2-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내용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쓰레기 배출,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 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 서비스 [표준모델]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한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재구성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900>

## ②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가족을 돌보는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미래 준비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 자기돌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지역에는 가족·자기돌봄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간병 및 돌봄 교육을 제공하며, 자기돌봄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 더불어 사례관리, 온라인 돌봄교육, 멘토링 제공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 중증질환, 정신질환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만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이다. 2024년 전국 4개 광역 단위에 전담 기관인(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③ 긴급돌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중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비정형적, 긴급 수요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30일, 70시간 내외)으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재가돌봄(신체청결, 몸단장, 신체수발, 건강지원), 가사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을 포함하는 기본돌봄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은 소득별, 지역별로 상이하다.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다.

## 제2절 문화누림과 돌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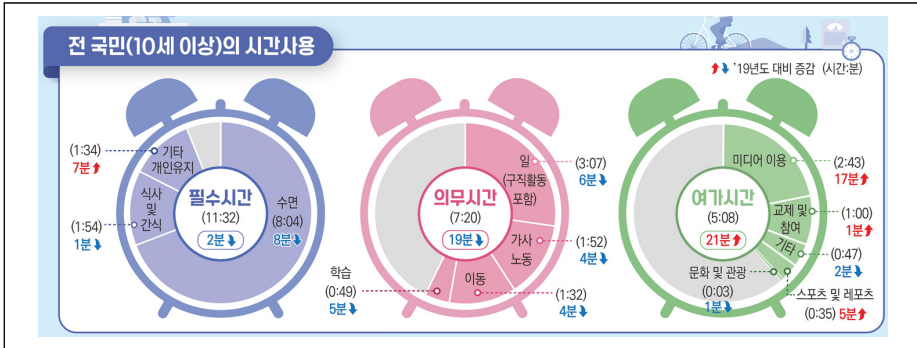
---

### 1. 문화소비와 여가시간

문화소비는 이용자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소비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소비과정에 참여되어야 하므로 거래과정에서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기호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전시, 공연과 같은 문화 소비는 경험하기 전까지 그 가치나 만족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상징물을 소유할 때 보다 경험하는 과정에서의 효용이 더 큰 경험재(experience goods)로 분류된다. 경험적 소비는 물질 소비보다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하며(Rosenzweig & Gilovich, 2012) 행복과 연관되고(Gilovich, Kumar, Jampol, 2014), 사람들의 사회적 연결을 촉진한다(Kumar, Mann, Gilovich, 2024). 이러한 경험적 소비에서의 지배적 효용은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즐거움과 미적경험 등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이다(Hirschman & Holbrook. 1982).

경험적 소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비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소비를 위한 금전적 부분 뿐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Hirschman & Holbrook. 1982). 또한 소비를 위한 이동이나 참여 등의 물리적 노력, 소비자가 몰입하고 해석해야하는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정윤희, 20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즉 문화소비에 중요한 조건은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리적(거리)·신체적 제약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되고, 이 때 양육, 간병, 가사 등 돌봄부담이 클수록 문화서비스에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시간은 크게 필수시간(잠, 식사 등), 의무시간(일, 학습, 가사노동 등), 여가시간(자원봉사, 교제, 문화활동 등)으로 구분되는데, 돌봄부담이 클수록 여가시간이 부족하여 문화소비의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림 2-3] 생활시간 유형 구분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경제학적으로는 여가와 노동(의무시간)이 서로의 기회비용이 된다. 여가를 늘리면 노동을 줄여 임금소득이 감소하고, 반대로 노동을 선택하면 여가의 만족과 휴식 기회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Kool & Botvinick, 2012). 가사노동, 아이돌보기, 신체수발 등 돌봄은 생활시간조사 중 의무시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하루 24시간 중 과도하게 할애되면 여가시간은 축소되고 정신적 피로도는 가중되어 문화소비는 후순위가 되고 결국 삶의 질 저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가시간의 기회비용은 단순히 여가시간 대신 무엇을 포기했는가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일상, 만족감, 성장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2. 자기돌봄(Self-Care) 효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가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증가하면서 자기돌봄(Self-Care)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WHO, 2021). 자기돌봄은 자신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잔존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활용하여 자기돌봄이 가능한 자립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Orem & Taylor, 1986).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질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모든 행동과 과정으로, 지속가능한 돌봄과 공공보건 관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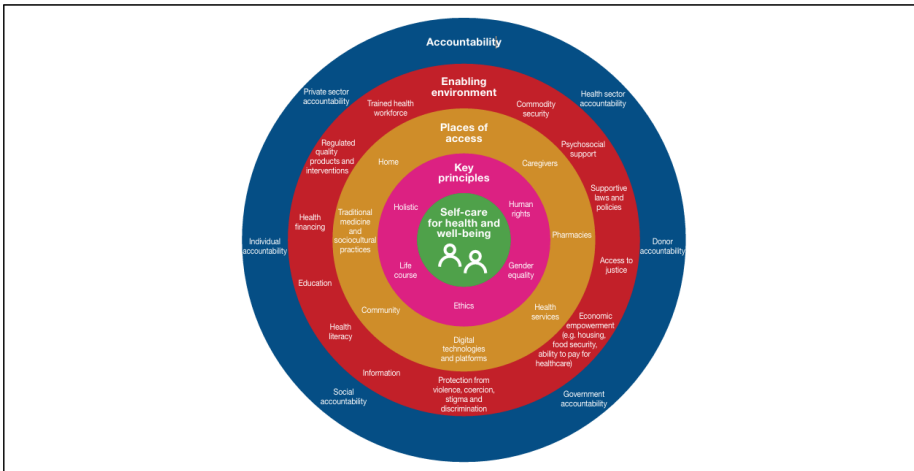
돌봄의 역할이 단순히 결핍을 채워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기돌봄은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 웰빙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WHO, 2024).

〈표 2-5〉 타인돌봄과 자기돌봄 비교

구분	타인돌봄 중심	자기돌봄 중심
초점	가족, 환자, 사회적 약자 돌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주요주체	의료진, 가족, 사회복지사	개인 스스로
방식	희생, 헌신, 의무적 돌봄	자기관리, 웰빙, 자율적 돌봄
대표적 활동	가족 간병, 재가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문화여가 및 취미생활, 심리 상담, 운동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2024년 발표한 자기돌봄 지침은 국가와 보건 시스템이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자가 관리 개입을 장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기돌봄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모든 개인의 권리와 환경, 생애주기별 필요 및 욕구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스트레스 관리, 번아웃 예방, 전반적인 웰빙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여가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그림 2-4〕 WHO 자기돌봄 프레임워크의 요소



자료: WHO guideline on self-care interventions for health and well-being, 2022 revis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https://iris.who.int/handle/10665/357828>).

문화소비는 생애주기별 삶 전체를 전방위적으로 조망하는 자기돌봄(여가 및 건강생활, 심리치유, 교류증진 등)에 효과적이다. 여가활동을 채우는 문화소비는 자기돌봄에 상당한 역할과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문화정책에서는 문화의 사회적 효과, 웰빙효과 등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감수성 향상뿐만 아니라 인지발달과 태도발달, 인성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참여자의 심리적·정서적 건강과 자기돌봄 능력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술적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 자기이해, 감정표현, 스트레스 해소 등 자기돌봄의 핵심 요소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예술 교육이 예술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 배우고,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경험을 심화시키고, 존중에 기반한 가치를 증진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강조하고 있다(UNESCO, 2021; Kerby et al, 2021). 호주의 전국예술교육협회(The National Advocates for Art Education, NAAE)는 춤, 드라마, 음악, 미디어 아트, 시각 예술에서 학습과 소통을 통해 개발되는 인지 능력과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기술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예술은 독서, 언어 및 수학 발달, 고차원적 사고 기술 및 역량 향상, 학습 의욕 증가, 사회적 행동 개선 등 자기돌봄의 효과가 있다(ADU, 2023).

그리고 문화예술 접촉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불안, 우울증 증상 등 영역에서 치유 및 치료 효과가 있고, 문화활동이 서로 교류하는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고립해소 효과 측면에서도 자기돌봄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편적 의료보장(UHC),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산모의 건강, 실명 예방, 의료의 질 향상 등 구체적인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술이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예술과 건강을 접목한 혁신은 지역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웰빙을 위한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으며, 치료, 재활 및 예방 노력을 보완하고 지원하며,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자기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은 질병 예방 및 건강한 행동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Fancourt, D. & S. Finn, 2019).

예컨대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 미술 활동 등은 뇌 활동을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하여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일본의 한 연구는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동년배보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이는 문화 활동이 신체적 노화의 진행을 늦추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시사한다(이양희, 2020).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은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Moloney, 2006). 음악 감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함께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은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행복감과 유대감을 높인다. 미술 활동 역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시각화하여 정서적 치유와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자기돌봄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 반응, 우울 점수를 유의하게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임석 외, 2021). 특히, 수동적인 관객이나 청중을 넘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작품을 발표하는 ‘생산자’로서의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강화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오해경, 2006; 우국화, 2014; 한다정·김소윤, 2025). 더불어 예술 참여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되고, 소속감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자기돌봄의 기반인 고립해소와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3)의 연구에 따르면 예술활동에 참여한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미국인들보다 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EA, 2024). EU 및 여러 국가에서는 ‘문화와 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예술 처방(cultural prescription) 등 새로운 건강증진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CAE, 2024).

자기돌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소비는 자기돌봄에 상당한 역할과 효과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 3. 문화분야 돌봄 관련 현상의 개념 분석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이 문제시되자 문화정책 전략에서도 돌봄이 정책연구와 정책계획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문화분야에서 돌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진 않으나, 현장에서 문화돌봄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가. 정책연구에서 문화돌봄 관련 내용

정보람·윤소영·노영순(2022)의 사회문제와 문화예술정책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전환 및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로 사회문제 완화가 기대되는 영역 7개 중 하나로 “돌봄부담 및 가족갈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돌봄은 여성의 육아부담과 경력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주로 의미하며, 돌봄에 있어서 가족 간 갈등심화를 핵심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고, 문화예술분야가 관계회복에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돌봄 그 자체의 행위보다 돌봄이나 돌봄부담으로 인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정리한 것이다.

윤지연·윤소영·조성은(2024)의 인구위기 대응 생애주기 문화정책 방안 연구에서는 인구위기 대응의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추진 과제, 기존 추진사업의 개선 및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저출생·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의 4대 영역 중 하나로 “문화를 통한 돌봄” 설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문화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전제 하에 전 생애에 걸쳐 돌봄과 양육부담에 제약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영역 정책 과제들을 살펴보면 전 생애에 걸쳐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소외계층이나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복지시스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돌봄 제공자나 보호자까지 포함한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표 2-6〉 정책연구에서 문화돌봄 관련 내용

연구자	주요 내용
정보람·윤소영·노영순 (2022)	- 문화예술분야로 사회문제 완화가 기대되는 영역 7개 중 하나로 “돌봄부담 및 가족갈등”을 제시
윤지연·윤소영·조성은 (2024)	- 저출생·고령화 시대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의 4대 영역 중 하나로 “문화를 통한 돌봄” 설정

## 나. 정책계획에서 문화돌봄 관련 과제

정책계획에서는 외로움과 고립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인력을 ‘문화돌봄사’로 개념화하여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을 발표하였다. ‘문화로 연결되는 따뜻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며 3대전략과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계획에는, 6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돌봄과 치유의 문화안전망 마련”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과제는 외로움 극복을 위한 문화돌봄 체계 구축, 문화·예술·관광·치유 활동으로 사회적 심리방역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돌봄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문화돌봄사’ 도입 계획이다. 영국에서 고립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회적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인력을 참고하여 계획한 것이다. 실제 문화돌봄사가 도입된 것은 아니고 이후 2023년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 ‘문화돌봄사(문화예술인·심리상담사 등)’ 운영 계획이 포함되었다.

정부 계획에서 문화돌봄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존의 지역사회 내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문화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매칭)해주는 인력에 집중하고 있다. 문화적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욕구에 맞춰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문화돌봄사의 참고가 된 영국의 Community connector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그룹, 기관, 주민을 연결하고 지역 내 복지·건강·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7〉 정책계획에서 문화돌봄 관련 과제 내용

문화로 연결되는 따뜻한 사회(2020)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로움 극복을 위한 문화돌봄 체계 도입 추진(국가통계 조사 시 외로움 외에 문화활동·여가행복지수 측정항목 추가, 문화돌봄사 도입 및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등 검토)</li> <li>- 문화돌봄사 : 고립·소외된 이들에게 지역사회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촉진 전문인력) 사회적 연결이 희미해진 사람들에게 지역 문화자원매개 ‘사회적 처방’으로 사회적·정서적 안정감 지원과 관계회복을 촉진하는 ‘문화돌봄사’ 운영(문화예술인·심리상담사 등)</li> <li>- 사회적 처방 : 약물처방이 아닌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비약물적 처방으로 회복지원</li> </ul>

## 다. 지역사회에서 문화돌봄의 의미

문화돌봄이라는 용어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사람에 맞춰 돌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2019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방문형 문화돌봄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돌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고, 이후 광주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부산북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부산 영도문화도시센터 등의 문화 및 복지기관에서 문화돌봄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사회에서 문화돌봄 사업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대상별(아동, 노인, 청년 등) 문화서비스로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문화누림 사업의 내용이다. 다만 지역 일선에서 문화서비스 접근에 취약한 대상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돌봄의 관점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 ① 고독사 예방과 지역주민 외로움 완화를 위한 문화돌봄 사업(부산 영도문화도시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문화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영도문화도시센터는 2023년 ‘연결사회 지역거점’ 사업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돌봄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고독사 예방과 지역주민의 외로움 완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똑똑똑, 예술가’, ‘안녕, 마음살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똑똑똑, 예술가’는 : “누구도 외롭지 않도록, 당신에게, ‘예술’이 찾아갑니다.”라는 구호 아래 일상의 외로움을 예술가와 함께 ‘관계맺기’로 치유하는 문화돌봄·예술치유 활동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위해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과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등이 추천한 주민과 영도 거주 예술가를 1:1로 연결하여 해당 예술가가 서비스 대상 주민의 집을 한 달에 두 번,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서 예술을 수요가 있는 곳으로 배달함으로써 개인과 개인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안녕 마음 살롱’은 관내 책방, 카페 등을 활용한 사랑방 형식의 문화 모임이다. 개인 단위가 아니라 주민의 문화모임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한 프로그램이다. 특정 참여자 없이 해당 공간을 상시 운영하여 누구나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삶과 장소 등을 기록하는 기록 동아리 등이 운영되었다.

### ② 29만 개의 감정을 만나는 도시마음산책/케어카페(춘천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은 2023년에 ‘연결사회 지역거점’의 일환으로 ‘29만 개의 감정을 만나는 도시마음산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외로움 및 고립 예방과 해소를 모색하였다. 도시마음산책에서는 몸, 마음, 관계라는 3개 주제에 24개의 커뮤니티가 운영된 상시프로그램과 맞춤형 사회적 처방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기획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기획프로그램은 가족돌봄 경험이 있는 60대 이상 여성과 마음 챙김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이 사업에서는 간호서비스에 문화돌봄을 접목한 ‘케어 카페’라는 돌봄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케어 카페’는 지역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 등 사회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건강 진단, 맞춤형 문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춘천문화재단과 지역내 복지 기관·단체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동·소양현장지원센터,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한림대학교 커뮤니티교육원, 춘천사회혁신센터와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혈압과 혈당, 스트레스 지수 측정 등 건강진단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접근을 지향한 1단계, 문화커뮤니티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정신 건강 증진(기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도시가 살롱’ 연계 시행)하는 2단계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에 문화프로그램이 접목되면서 문화적인 만족감과 외로움·쓸쓸함의 완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어르신 대상의 문화 활동 진행이 원활해질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다((재)지역문화진흥원, 2024: 47).

### ③ 주민 문화돌봄 및 건강힐링 사업(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의 ‘주민 문화돌봄 및 건강힐링 사업’ 사례는 2022년 11~12월에 신평면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면 내 21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힐링 마사지 및 색조 화장, 장수 사진 촬영 등을 통해서 돌봄서비스와 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신평면의 경우, 이듬해인 2023년에는 8~12월에 ‘공동체 중심 지역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신평면 청소년예술단(1인 1악기)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교육을 통해 드럼, 기타, 보컬, 건반 등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④ ‘문화돌봄’을 통한 ‘1인가구’ 지원(부산북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1인가구 문화돌봄 다색 사업’은 ‘다색-다채로운 세상’을 주제로 부산광역시 북구의 금곡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문화 돌봄을 도입한 사례다. 주된 대상은 노인 1인 가구이지만, 1인 가구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금곡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부산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에는 스마트폰 사용 교육처럼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활동, 문화 교류회 등처럼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타인과 소통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⑤ 육아가정 ‘문화돌봄 서비스 프로그램’(포항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육아공백이 생긴 가정에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등교 활동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 내 꿈틀갤러리를 운영장소로 하는 긴급돌봄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 약 보름간에 걸쳐 시행된 이 사업은 평일 09~17시를 운영시간으로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1일 15인 규모로 운영되었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 정교사 1인, 보육교사 2인, 간호사 1인 등 4인의 돌봄교사가 상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꿈틀로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수업(미술, 도예, 쿠킹클래스, 키즈플라워)를 비롯하여 야외수업(농장체험), 체육수업(아동전문 체육 선생님 진행, 실내·외 체육), 공연관람(샌드아트 관람) 등이 운영되었다.

⑥ 미디어아트 체험 ‘문화돌봄’(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2020년에 지역 문화소외계층이 미디어아트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공헌 프로젝트 ‘문화돌봄’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홀로그램 극장 및 미디어 놀이터)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시민들에게 아직은 낯선 예술 분야인 미디어아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문화 돌봄’ 체험코스는 홀로그램 극장과 미디어 놀이터를 중심으로 미디어 338,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디지털갤러리 등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는 기본 2시간 코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⑦ 방문형 문화돌봄 '경기문화나눔31'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도문화의전당이 2020년에도 방문형 문화돌봄사업인 '경기문화나눔31'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리적 여건 등으로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하 민통선) 내 위치한 파주 장단마을에서 '경기팝스앙상블'의 공연이 개최하였으며, 별도의 공연장이 없어 장단출장소 앞 민방위 대피소인 지하 대피소에서 진행되었다. 파주뿐만 아니라 여주, 양평, 의정부, 포천, 이천 등지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연을 제공하였다.

〈표 2-8〉 지역사회에서 문화돌봄 사업 사례

연도	수행주체	사업명	내용
2024	부산 영도문화도시센터	고독사 예방과 지역 주민 외로움 완화를 위한 문화돌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똑똑똑 예술가 :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주민 70명을 발굴해 동네 예술가 13명과 매칭시켜 문화예술 활동으로 외로움을 완화</li> <li>- 똑똑똑 예술 배달 : 탈시설과 자립을 선언한 장애인을 예술공연 활동으로 이웃에게 소개하고 응원반도 록 도움</li> <li>- 안녕 마음 초대 : 우울감을 호소하는 지역 청년 대상으로 예술치유로 일상회복을 도움</li> <li>- 안녕 마음 살롱 : 민간 공간 7곳에서 위로와 공감을 주는 상설 커뮤니티 문화 모임</li> <li>- 마주봄 축제 : 외로움 완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성과 공유 활동</li> </ul>
2023	춘천문화재단	29만 개의 감정을 만나는 도시마음산책/케어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마음산책은 몸, 마음, 관계라는 3개 주제에 24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li> <li>- '케어 카페'라는 돌봄서비스를 운영,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 등 사회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건강 진단, 맞춤형 문화 커뮤니티 프로그램</li> </ul>
2022	당진시 신명면 주민자치회	주민 문화돌봄 및 건강힐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명면 내 21개 마을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한 문화 돌봄, 어르신들의 마음과 몸 건강을 위한 힐링 마사지 및 색조 화장, 나의 전성기 '장수 사진' 촬영으로 진행</li> </ul>
2022	부산북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돌봄'을 통한 '1인가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65세 이상 홀로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사가 방문하여 함께 민화 그림을 그리며 안부를 확인하고 돌봄활동을 실시</li> </ul>
2020	포항문화재단	육아가정 '문화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돌봄 공백 상황에서 일상적인 등교활동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의 거점 공간과 콘텐츠 등 인프라를 활용해 문화적 돌봄서비스 프로그램</li> </ul>
2020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체험 '문화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홀로그램극장 및 미디어놀이터)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프로젝트</li> </ul>
2019	경기도 문화의 전당	방문형 문화돌봄 '경기문화나눔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내 위치한 초등학교와 인근 대성동초 학생을 위한 '금관5중주' 공연</li> </ul>

## 제3절 문화분야 돌봄정책 영역

---

돌봄은 모든 인간이 생애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경험하는 욕구이며, 출생부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를때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신체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 의존 시기를 거치게 된다. 돌봄과 문화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 돌봄부담과 문화소비 간 기회비용 관계

돌봄부담은 문화소비와 서로의 기회비용이 된다. 양육, 간병, 가사 등 돌봄부담이 클수록 여가시간은 감소하여 문화소비를 통한 삶의 만족과 휴식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고, 반대로 문화소비를 늘리면 돌봄공백이 생기거나 돌봄노동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노동, 아이돌보기, 신체수발 등 돌봄부담이 클수록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증가시켜 문화서비스에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육, 간병, 가사 등 돌봄에 대한 책임은 여가활동 참여의 동기 감소와 활동 제약, 경제적 부담 등을 발생시키고 결국 문화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시간의 기회비용은 단순히 여가시간 대신 무엇을 포기했는가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일상, 만족감, 성장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나.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 간 상호의존적 영향 관계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돌봄을 하는 사람에게도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고령화, 출생률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돌봄 수요는 다원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정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인이나 아이와 같은 ‘돌봄 대상자’ 위

주의 논의가 주를 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기돌봄, 돌봄을 하는 가족돌봄자, 돌봄노동자 등 돌봄제공자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을 돌보는 것으로 좋은 돌봄을 위한 관점이 변화되고 있다. 돌봄 제공자의 건강과 행복이 곧 돌봄 대상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제공자 역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한다는 논지이다. 여기서 문화소비는 생애주기별 삶 전체를 전방위적으로 조망하는 자기돌봄(여가 및 건강생활, 심리치유, 교류증진 등)에 효과적이다. 문화예술 접촉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불안, 우울증 증상 등 영역에서 치유 및 치료 효과가 있고, 문화활동이 서로 교류하는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고립해소 효과 측면에서도 자기돌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 돌봄에 대한 정책범위 및 대상 확장

아동, 노인 등 주요 돌봄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에서 정서적지지, 사회적 관계 유지 등 여가지원까지 확장되고 있다. 주로 시설을 통한 보호나 부양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재가 형태의 생활지원, 상담, 교육, 자활, 케어 등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생활지원부터 정서적 치유, 건강관리 등 이전에는 돌봄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다양한 여가적 서비스가 돌봄에 포함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돌봄이라고 여겨졌던 복지, 보건, 의료 등은 물론이고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망라하며 국민 삶의 유지와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이 문제시되자 문화정책 전략에서도 돌봄이 정책연구와 정책계획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정책에서 의도하는 문화돌봄 용어는 문화 필요계층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문화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문화돌봄 용어는 기존의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대상별(아동, 노인, 청년 등) 문화서비스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관점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문화분야에서 돌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진 않으나, 지역 일선에서 문화서비스에 취약한 대상을 발굴하고,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문화돌봄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문화돌봄 용어의 사업특징은 욕구에 기반하고 상호의존적인 영역이라는 점이다. 문화돌봄 정책은 문화복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문화돌봄은 욕구에 기반한 돌봄 대상자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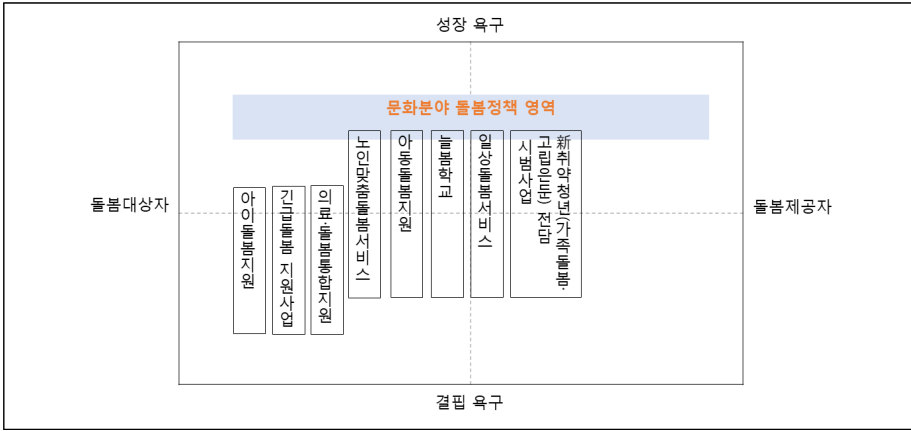
## 라. 문화분야 돌봄정책 영역 : 성장욕구(삶의 질·자기효능) 충족과 자기돌봄

돌봄정책이 복지정책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특징은 필요대상이 있고 욕구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돌봄은 단순히 신체적 욕구만이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욕구에 대한 응답이자 도덕적 실천이다. 돌봄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육아, 간호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사회적 교류와 같이 성장욕구를 채워가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현장에서는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결핍욕구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sup>3)</sup>. 신체적 문제에 대한 의료, 가사, 일상생활 지원이나 아동에 대한 대리육아나 교육과 같이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돌봄대상자에게 결핍욕구를 채워주는 지원이 대부분이다.

돌봄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 부처에 분산되어 대상별 복지서비스에서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약자돌봄 및 자립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처 소관 교육 및 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로 올수록 자기돌봄에 대한 중요성과 돌봄제공자를 위한 돌봄, 일상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정서적 돌봄, 사회적 교류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나, 시범사업이나 실험적 시도에 머물러 있다. ‘아이돌봄지원’, ‘긴급돌봄지원사업’,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양육, 보건의료, 재가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결핍을 채우는 돌봄서비스에 가깝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아동돌봄지원’, ‘늘봄학교’, ‘일상돌봄서비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절대적 의존이 필요한 교육(양육), 일상생활 지원에서 더하여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성장욕구를 채우는 돌봄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분야가 가진 사회적 기능(여가 및 건강생활, 심리치유, 교류증진 등)은 성장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돌봄제공자에 대한 자기돌봄에 타분야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욕구와 돌봄 관계의 지형에서 위치할 수 있다.

3) 매슬로우 욕구단계이론(Maslow, 1954)에 따르면 결핍 욕구는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이 있으며, 생리적 욕구(음식, 성, 수면에 대한 욕구 등)와 안전 욕구(안전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욕구 등)를 포함한다. 이러한 욕구와 관련된 행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결핍’에 따른 동기로 간주된다. 반면에 성장욕구는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로 결핍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활성화되며, 충족될수록 더욱 강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2-5] 문화분야 돌봄정책 영역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제3장

## 돌봄정책 사례 분석



# 제1절 분석 개요

---

## 1. 사례선정 기준

돌봄 정책은 다양한 부처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각 부처의 돌봄 정책은 해당 부처의 주된 정책 대상별로 특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로 인해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돌봄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거나 정책의 주된 대상이나 돌봄 제공 방식, 정책 주체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생애주기 기준으로 할 경우, 돌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생과 죽음 단계 사이에 위치하는 삶의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 생애주기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다양하게 나뉠 수 있고, 각 주기는 그 초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거나 좀 더 단순화 내지 세분화될 수 있다. 또한 법적 연령 기준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는 「유아교육법」에서 정의한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층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유아를 포함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18세 미만' 연령층을 말하는데,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아동 중에서 12세 이하를 아이로 정의하기도 한다. 청년은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층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 연령층에 해당하므로, 아동과 청년에 일부 연령대가 겹쳐 있다. 한편, 생애주기 정책 대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정책 대상에 요구되는 돌봄의 성격도 다르다. 예를 들어, 영유아 시기에는 보육이 중심이지만, 이 시기를 지난 아동기는 학령기 청소년과 겹치므로, 방과후 돌봄이나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이 주요 돌봄 정책이 된다. 또한 노년기의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 치매 돌봄,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 등이 주요 돌봄 정책이 된다.

생애주기적 접근 외에도 대상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아동,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

여성처럼 돌봄 정책의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돌봄 제공 방식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홈 케어(home care)나 방문 돌봄처럼 가정 중심의 돌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내지 마을돌봄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아동 보육시설 내지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중심의 돌봄이 있고, 이들이 상호 융합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돌봄도 있다. 정책 주체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 주도나 지방자치단체 주도, 민관 협력형의 돌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돌봄 정책 및 그 사례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정책 대상을 나누어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이유는 돌봄 정책은 각 정부부처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돌봄은 삶의 전 생애에 걸쳐 연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돌봄 정책과 그 사례 분석에서 생애주기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생애주기는 연령을 고려한 정책 대상과도 부합하기에 각 부처 돌봄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에도 유용하다. 돌봄이 특정 연령이나 대상에 국한된 ‘단절된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돌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단절이나 중복,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노년 대상의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존재하지만, 이들 간 협력과 통합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접근은 돌봄의 연속성과 체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문화분야에서는 더욱 전 생애에 걸친 문화돌봄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2. 사례분석 관점 및 내용

돌봄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서비스이기에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아동의 경우, 영유아기에는 부모의 노동 참여라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보육 돌봄이 중요하고, 학령기에는 방과후 활동과 정서적 지원이 중요하다. 청년이나 중장년의 경우, 일과 돌봄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나 자기 돌봄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노년의 경우, 건강관리와 장기요양이 중요하다. 이 밖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라도 중요한 지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의 주안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돌봄 정책을 부처별 개별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 생애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생애주기가 아닌 전 생애에 걸친 돌봄 생태계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돌봄 정책 분석에 있어 돌봄을 연속적·통합적·포용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이해하며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각 부처의 돌봄 정책을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별 특성과 정책 간 차이, 문화분야 돌봄과 관련성에도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 분야의 돌봄, 즉 문화분야 돌봄과 관련성에 주목할 때에는 문화분야 돌봄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에 대한 보호나 지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제고를 지향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대상별로 기존 돌봄 정책을 문화분야 돌봄과 관련에서 분석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 중 영유아기에는 놀이나 창의 활동 등을 통해서 인지 및 정서 발달에 주목하며 문화예술 경험 제공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경험이나 체험 활동, 또는 또래 관계 형성과 관련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여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인에 해당하는 청년 및 중장년의 경우에는 여가생활 내지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여부 등에 주목하고, 노년의 경우에는 장기 요양이나 치매·우울증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 활동 등 문화적 접근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혹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돌봄에서는 문화 향유나 참여를 위한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과 유의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기존 돌봄 정책을 사례 분석하고, 여기에 문화돌봄과 관련하여 문화적 권리와 삶의 질,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각 부처 돌봄 정책 분석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대상과 제공방식 분석을 넘어서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표, 정책의 대상과 내용, 인력 및 전달체계, 제도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해당 정책이 미치는 서비스의 범위, 전달체계 및 협력구조의 특성, 성과와 한계뿐만 아니라 돌봄의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생애주기 전환 시기에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과 공백 여부, 사각지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돌봄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 생애주기 및 정책 대상에 대한 문화분야 돌봄 사례를 분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즉, 문화분야 돌

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로서 바라보고,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을 고려하여 사례를 분석한다. 이는 기존 돌봄 정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문화분야 돌봄 사례 분석에서는 기존의 돌봄과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며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문화분야 돌봄 생태계 구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례를 분석한다.

## 제2절 돌봄정책 분석

### 1. 아동 돌봄

아동은 그 특성이 다양하여 돌봄의 대상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아우른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교육부의 교육부 ‘늘봄학교’와 ‘Wee프로젝트’ 등 여러 부처가 고유한 정책 대상에 대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다함께돌봄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학생, ‘Wee프로젝트’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 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는 이들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아동 돌봄 정책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표 3-1〉 각 부처의 아동 돌봄 주요 정책사업 개요

사업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및 개요
다함께돌봄사업	보건복지부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 초등학교 전후 돌봄 공백 해소, 지역사회 중심 돌봄센터 운영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통한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지원
늘봄학교	교육부	• 초등학생 대상 • 기존 초등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운영
Wee프로젝트	교육부	• 초등학생 및 중등학생 중 위기 또는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 학생의 위기 예방 및 정서를 위한 학습 및 상담 등 통합 지원

#### 가. 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각 정책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sup>4)</sup>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을 법적 기반으로 한다. 맞벌이 및 저소득

4) 이하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2025a),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 및 아동 권리보장원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소개(<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105&cntntslid=1044>)을 참조(2025.8.5. 최종 접속) 정리하였음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돌봄 기능 약화,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주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 중심의 아동 돌봄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공백을 최소화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출산과 양육 여건의 개선하고자 한다.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주도적으로 ‘아동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공적 돌봄을 통해 돌봄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의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한 돌봄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sup>5)</sup>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병, 출장, 야간, 방과후 등의 자녀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봄 공백이 존재함에 따른 ‘틈새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이용 가능 시간과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한 기관 중심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이돌봄 지원법」을 법적 기반으로 시행되며, 공공 책임 하에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법 제2조제3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법 제1조) 한다.

교육부의 돌봄 정책은 ‘늘봄학교’와 ‘Wee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중 ‘늘봄학교’<sup>6)</sup>는 아동 돌봄 공백의 확대에 대응하고 기존에 분절되어 운영되던 초등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하여 학교 중심의 안정적·통합적인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학생 등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지향하며, 저학년부터 점차 고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돌봄 접근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 방과후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3

5) 이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참조(2025.8.5. 최종 접속) 정리하였음

6) 이하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및 ‘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개정판)』’을 참조 정리하였음

조제1항 및 제2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에 근거를 두었던 것과 달리, 초등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시행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Wee프로젝트’<sup>7)</sup>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사업이다. 우울감·불안·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위기 증가, 학교폭력이나 문제 행동 사례 증가에 따라 예방적·통합적인 상담·치료 및 복귀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부담 증가 완화 및 전문적·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 추진 배경이 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의거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Wee’란 ‘We(우리) + education(교육)’ 및 ‘We(우리) + emotion(감성)’의 조어다. 그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학생들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 단위 학교와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중 안전망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위에서 제시한 아동 돌봄 관련 주요 4개 정책의 추진은 인구 구조 및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함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 기능이 약화함에 따른 양육과 돌봄 부담 경감 필요성, 아동 연령층의 정서적 안정이나 학습 공백 메우기 등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위기 학생 내지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인 문제나 위기 상황의 증가, 학교 부적응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과 함께 최근에 아동 돌봄은 가정이나 개인 중심의 돌봄을 넘어 공공 및 지역사회의 역할과 서비스의 보편성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과도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정책사업은 공통적으로 돌봄 공백 해소 및 부모의 일·가정 양립, 초등학생 등 아동의 안전, 정서적 안정과 학습 지원을 통한 발달, 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보편성 강화 등을 지향한다.

한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 내지 독자적인 돌봄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한 예로 서울시의 ‘엄마야빠 행복프로젝트’를 들 수 있

7) Wee프로젝트 누리집(<https://www.wee.go.kr/>) 참조(2025.8.30. 최종 접속) 정리하였음

다.8) 서울시는 10여 년 전부터 출생율이 전국보다 약 0.2명 적은 추세가 지속되는 초저 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에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22~26)를 시작하였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서울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젝트인데, 시행 1년 후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이 발표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지원 대상과 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었다. 2025년 현재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시즌2가 시행 중이다.

〈표 3-2〉 서울시 특화 저출생 대응 5개년 종합계획의 변천 (2022~2026)

프로젝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2.0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발표시기	2022.8.	2023.11.	2024.2.	2024.10.
구성	4대 분야 28개 사업	5개 분야 55개 사업	2개 분야 52개 세부사업	3대 분야 87개 세부사업
분야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탄생응원	탄생응원 육아응원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대상	0~9세 양육자	양육자, 예비양육자(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출처: 최지은·임현정 외(발간 예정)

## 나. 돌봄 서비스 내용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설치·운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입학 전 아동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주 대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방과후 및 방학 중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각 가정의 소득과 돌봄 필요도 등에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기도 한다. 접근하기 쉽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보건소,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또는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센터나 마을회관 등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8) 이하 서울시 사례는 최지은(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자문원고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록하였음

기본서비스(출결 확인 및 급간식 지원) 및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다. 공통프로그램은 숙제·독서·놀이·체험 활동, 안정 및 위생 교육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학생들의 정서 안정 지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창의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돌봄 수요와 자원 등을 고려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언어활동, 예체능, 과학 등을 포함한다. 이때 지역사회 내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함께돌봄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돌봄서비스의 하나로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프로그램에는 문화·예술 활동이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2025)에 따르면,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아동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활동 지도와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는데, 전래놀이, 풍물놀이, 영화·공연 관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편성을 위해서는 외부의 강사·전문가 등과 자원을 활용한다.

〈표 3-3〉 '다함께돌봄사업'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용 지침

구분	주요 내용
특별활동 프로그램	아동별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외부강사 및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활동 및 체험 등)
예체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체능활동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li> <li>• 예체능활동 프로그램 운영</li> </ul>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체험(영화, 난타, 박물관, 시장 등)</li> <li>•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요리, 화훼 등)</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25a),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 pp. 57-58.

이와 같이 문화·예술 활동 중심의 '다함께돌봄사업' 사례로 '아현 어린이극장'을 살펴볼 수 있다. '아현 어린이극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마포구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22년 6~7월에 시행한 운영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언어, 문학, 미술 분야를 융합한 역할극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제공된 그림 잡지를 활용하여 그림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역할극 형태로 기획하게 된 것이다. '아현 어린이극장'의 기획 과정을 보면, 학생들이 상상한 '방귀시합, 흥부와 놀부, 수상한 센터, 처녀귀신 이야기, 귀신의 숲, 피구왕 꿀꿀이, 초능력 있는 남자, 귀멸사의 칼날'이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9개의 역할극이 설정되었고, 참여 학생들 주도로 대본, 등장인물, 역할 분담 등이 이루어졌다. 역할극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감상후기 작성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등을 통해서 자체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한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아이의 성향과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역할극을 기획하고 함께하는 과정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중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소득 가구에 우선 순위를 두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비율과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 서비스의 이용 가구는 2020년 총 59,663가구에서 2024년 118,126가구로 증가하였다.<sup>9)</sup> 이 사업의 대상 중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에 대해서는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9) [https://idolbom.go.kr/front/biz/stts\(2025.9.10. 최종 접속\).](https://idolbom.go.kr/front/biz/stts(2025.9.10. 최종 접속).)

제공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돌봄비 중에는 양육의 질과 지속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에 나타난 한 사례를 보면, 아이돌봄비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이 감소하고 아이의 부모와 신뢰를 쌓는 것도 쉽지 않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놀이 방식의 활동을 위해서 공예 자격증을 따고 미술놀이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 76-77) 이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는 놀이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러한 활동에서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이 중요하게 결합함을 볼 수 있다.

교육부 ‘늘봄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및 방학 중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봄과정이라고 한다. 늘봄과정은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선택형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매일 2시간씩 제공한다. 선택형 프로그램은 1~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별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한다. 그중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방과후학교의 강화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은 전담인력(늘봄전담사) 등에 의해 운영된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수요자(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방식으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진다.

늘봄학교에는 늘봄과정 전용으로 사용되는 전용교실과 정교수업 외 시간에 늘봄과정을 위해 사용되는 겸용교실을 확보해야 한다. 늘봄 전용교실로는 학교 안팎의 공간이 모두 활용될 수 있지만, 겸용교실은 학교 내 공간이 활용된다. 또한 늘봄학교에는 늘봄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늘봄전담사,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의 실무인력이 배치된다. 그중 늘봄지원실장은 단위 학교에 임용·배치되어 늘봄과정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임기제 교육연구사)다. 늘봄실무사란 행정업무를 포함한 늘봄과정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이고, 늘봄전담사란 정규수업 시간 외 늘봄과정을 위해 별도 채용된 인력이다.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과정을 운영하는 외부강사 또는 희망 교원이고, 늘봄지원인력이란 늘봄과정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위촉하여 배치한 인력이다. 이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통해

서 현장의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그림 3-1] 늘봄학교의 늘봄과정 및 운영인력

늘봄 과정	맞춤형 프로그램 (초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1~2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 놀이·체험, 학습 활동으로 편성·운영(매일 2시간(차시), 무상)하는 늘봄 프로그램</li> </ul>
	선택형 프로그램 (초1~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학부모의 수요 등을 기반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편성·운영하는 특기·적성 및 교과 관련 늘봄 프로그램</li> </ul> </li> <li>돌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의 공간(늘봄교실 등)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전담사 등이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li> </ul> </li> </ul>
	늘봄전담인력 (늘봄지원실장/늘봄실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늘봄지원실 소속으로 늘봄학교 행정업무와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대한 기획·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li> </ul>
운영 인력	늘봄전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늘봄학교 참여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초1~6학년 학생의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li> </ul>
	늘봄 프로그램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1~6학년 학생 대상으로 늘봄과정을 운영하는 늘봄학교 외부강사 또는 희망하는 교원 등</li> </ul>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p. 23.

늘봄과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학교별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 지원 및 미래사회 준비 역량 함양, 기초학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고, 신체·건강·체육, 문화·예술, 사회·심리·정서 등의 활동도 포함된다. 이 사업에서 문화 분야와 관련한 늘봄학교 운영 지침에서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 초등 수준에 적합한 놀이·게임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확대”와 “(2) 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의 과정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가) 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의 전 과정(기획, 표현, 발표)에 참여하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발굴·운영”, “(나) 학생 중심 예술 활동 공연이나 전시, 음악·무용·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융합 프로그램 운영”(한국교육개발원, 2025)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늘봄학교의 운영프로그램 사례들을 보면, 방과후리는 특성상 문화·예술 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구고산초등학교의 ‘고산늘봄학교’를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고산늘봄학교는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운영 슬로건으로 학부모·학생에 대한 의견조사와 기존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을 토대로

방과후학교, 초1맞춤형 프로그램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그중 한 예로, 초 1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놀이 음악’은 매주 수요일에 교육청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을 감각을 이용하여 리듬을 익히고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으로 놀이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운영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서는 외부(학부모, 관계기관, 주민)을 대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24).

〈표 3-4〉 고산늘봄학교의 운영 프로그램(2023년 기준)

구분	운영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방과후학교	인지 발달 영역(7종목)	영어, 창의독서논술, 수학, 주산암산, 한자속독, 과학실험, 컴퓨터
	재능 발견 영역(7종목)	바이올린, 통기타, 미술, 목공미니어처, 요리 및 베이커리, 드론항공, 방송댄스
	체력 향상 영역(4종목)	핸드볼, 음악줄넘기, 농구, 배드민턴
초1맞춤형 프로그램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초1맞춤형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마음 열기, 책과 함께하는 역사이야기, 놀이(세계문화, 음악, 체육)
	특기적성프로그램	창의논술, 놀이체육, 창의미술, 창의음악, 창의보드게임
	틈새돌봄 프로그램	책과 놀아요(도서관), 식물과 놀아요(텃밭), 꿈길 걷기(교내 산책, 천을산, 매호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년 늘봄학교 우수사례집, pp. 22-23.

지역의 문화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된 늘봄학교 사례에서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계형 늘봄학교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대구수성초등학교의 ‘다운 늘봄학교’ 사례(한국교육개발원, 2024: 56-66)를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야외무대, 문화휴식공간, 무용실 등 늘봄교실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표현·예술활동 수업을 위한 시설 기반을 확충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동부도서관과 수성문화재단, 시립합창단, 시티발레단, KAN엔터 등의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를 연계함으로써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높일 수 있었다. 그 한 예로, 수성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사업 지원, 학생·학부모 공예교실, 진로체험활동 지원, 국악수업 및 동아리 지원, 들안예술마을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운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교육부의 ‘Wee프로젝트’는 초·중등과정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그중에서도 위기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

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위(Wee)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는 ‘위(Wee) 센터’(또는 순회상담)을 통해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Wee프로젝트’에서는 위기 학생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학교 폭력, 학업중단, 교우 및 가족관계 등을 중심으로 심리평가와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별 상담·심리 평가는 교내 접수를 통해 초기 스크리닝을 거쳐 성격, 정서, 지능, 행동 등에 대한 심층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은 또래 집단상담, 사회성 향상 집단, 정서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치료·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놀이치료나 예술치료(미술, 음악 등) 등을 왕아켜 임상심리사·전문치료사의 협업을 통한 전문 치료가 개입하고, 필요시에는 병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연계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Wee센터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예술 심리치료 등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의거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가 설치되어 관내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심층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Wee센터’는 필요시에 단기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가정형과 의료를 연계한 병원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가정 문제로 위기 상황에 놓이거나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개인적·가정적·교육적인 문제로 위기 상황에 놓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Wee센터’ 외에 단위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위기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 상담 등을 수행한다.

‘Wee프로젝트’의 돌봄 서비스 특성상, 일반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보다는 예술치료 측면에서 연계성이 크다. 한 예로,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농산어촌에서 학모부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매포초등학교의 ‘그림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기’ 사례(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2022)를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 자녀와의 소통에서 어려운 점이고, 그림은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매체가 된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그림이라는 소재와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심리 상담을 결합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위기가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예술과 상담을 결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1년 과정 34회로 기획하여 학생과 가정의 마음건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감정 읽기와 그림 읽기’,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하기’, ‘감정이 있는 풍경그리기’, ‘감정 정화를 위한 이미지’, ‘과제 전시회 및 강평’, ‘자기정체성 표현’, ‘감정이 있는 정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사례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그림을 통해서 자녀와 소통이 가능하였고 풍경이나 사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의인화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연대함으로써 위 클래스가 지역사회의 문화 거점이자 건강한 가족문화를 지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가 연극, 미술 등 예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진행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예술 놀이터’ 등처럼 일선에서는 예술치료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서울시 저출생 대응 종합 프로젝트에서는 양육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과 양육자의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즉, 최초의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이라는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그중 안심 돌봄 분야에는 다양한 돌봄 공백 지원, 공보육·초등돌봄 시설 확충 정책이 포함되고, 편한 외출 영역에는 엄마·아빠·아이가 행복한 놀이·여가 환경 조성, 양육 친화 외출 환경 조성, (예비)양육자 편안한 이동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건강 힐링 영역에는 임신부 지원 강화,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정책이 있으며, 일생활균형 영역에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양육자 가사부담 완화 정책 등이 있다. 특히 ‘편한 외출’이 별도의 분야로 구성된 것을 통해 아동과 양육자가 편리하게 집 밖으로 나오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 공간 및 인프라 조성을 강조한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이 분야에 포함된 정책들은 현행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생활균형·양육친화’ 영역에 포함되어 유지되고 있다.

[그림 3-2]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 비전 체계도



자료: 유경선(2023.08.27.),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년차 준비...5년간 2조5천억 투자, 경향신문.

[그림 3-3] 엄마아빠가 행복한 문화 프로젝트 예



자료: 김윤경(2022.12.14.), 엄마아빠VIP존이 있잖아요!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 나들이, 내 손안에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는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부족한 양육자를 위해 문화예술회 프로그램(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형 축제 육성·지원, 영유아 대상 책꾸러미 배포 및 북스타트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시설에서의 돌봄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사례로 '서울엄마

아빠VIP존'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양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아이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외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 시설에 조성되는 편의·휴식·돌봄 전용(VIP) 공간을 말하며, 세종문화회관, 서울상상나라, 서울가족플라자, 고척스카이돔 등의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이마트와 같은 일부 민간 시설에도 민간협력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66개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중 문화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2호점(라바키즈 아이들세상)은 만 24개월~7세 영유아 동반 관람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된 놀이시설이다.<sup>10)</sup> 이용 당일 공연 입장권과 신분증을 지참한 관람객이 공연 시작 30분 전에 방문하면 만 36개월 이상 아동은 아동 혼자, 만24개월~36개월 미만 아동은 보호자 동반 하에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인력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양육자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클래식' 공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 가족을 포함하여 보훈대상자, 군복무 청년이 매우 저렴한 관람료(2025년 9월 기준, 1천원/3천원/5천원/만원 중 관람이 직접 결정하는 관람료 선택제)로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정책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은 각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내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 및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는 돌봄에서 지역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와 관련된다. 이를 위해 2017년 7월에 다함께돌봄시범사업(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그 이듬해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돌봄 정책이 발표되고, 그해 12월에 17개소의 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센터 1,22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별표 1의 2]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10) <https://www.sejongpac.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88>, 2025.9.14. 최종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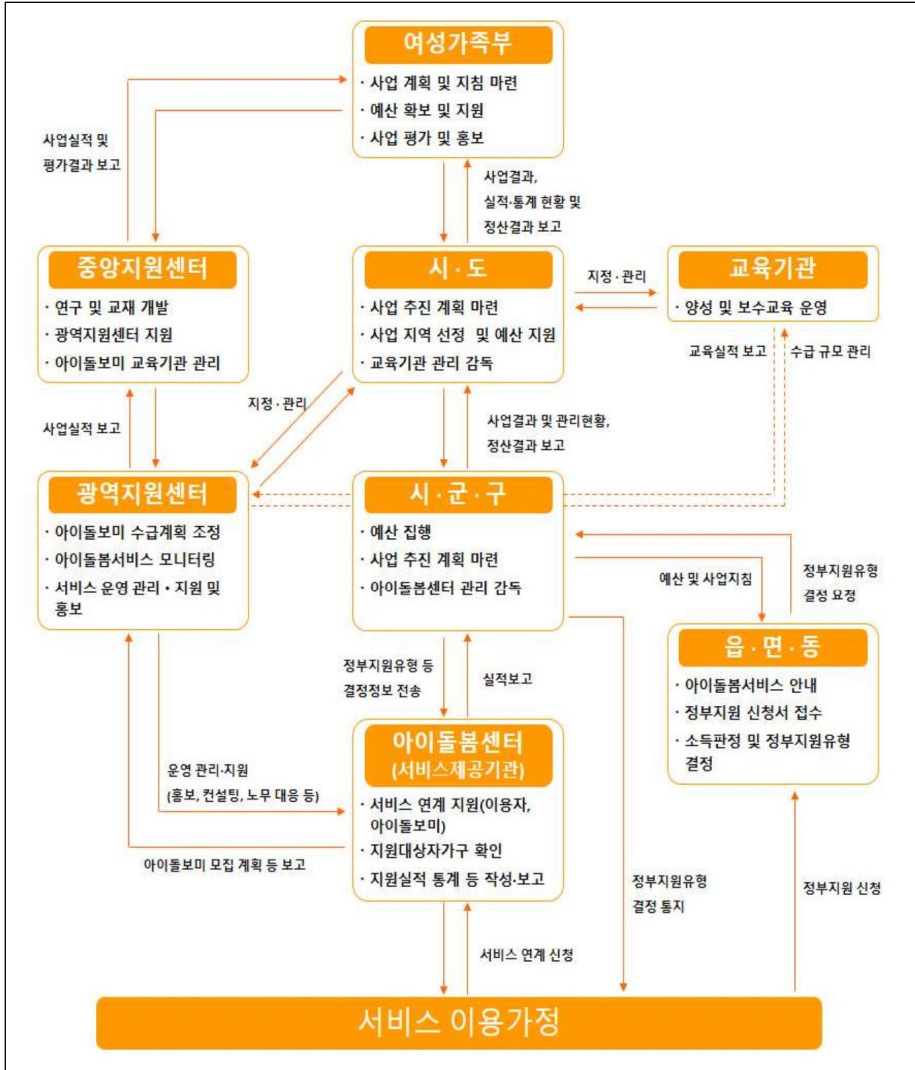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에 사무 공간과 화장실뿐만 아니라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돌봄교사 및 안전관리, 간식 제공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구성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교사 또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면허 취득자 중 어느 하나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 돌봄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돌봄교사도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기간 돌봄서비스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자, 지역 예술인 및 체육 지도자 등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돌봄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내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총괄 부처로서 정책 방향 및 지침의 수립, 예산 지원,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고, 교육부 협의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의해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 현장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종사자 교육, 전산 시스템 관리,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때 광역·기초 단위의 돌봄협의체(교육청, 지자체, 돌봄 제공기관 참여) 및 읍·면·동 단위의 지역돌봄 협업구조로 수요와 자원을 조사하여 조정한다. 이와 같은 추진체계의 핵심은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로, 공적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유연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아이돌보미의 자격, 서비스 제공기관 요건, 전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역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서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광역지원센터는 신규 종사자 교육과 종사자 대상 직품교육·재교육 등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관리·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수급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노무업무 대응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업의 시군구 단위 추진·전달 체계를 보면, 정부지원 결정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www.bokjiro.go.kr)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읍면동)-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순으로 결정된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군구와 서비스 제공기관(시군구아이돌봄센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3-4]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체계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5),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24.

이와 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231개소에 달한다. 각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인력은 2020년 24,469명에서 2024년 29,635명으로 증가하였는데,<sup>11)</sup> 이들에 대한 모집과 채용, 관리

는 각 시군구의 돌봄센터가 담당한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교육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는 한국건강가정지원원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시군구아이돌봄센터 체계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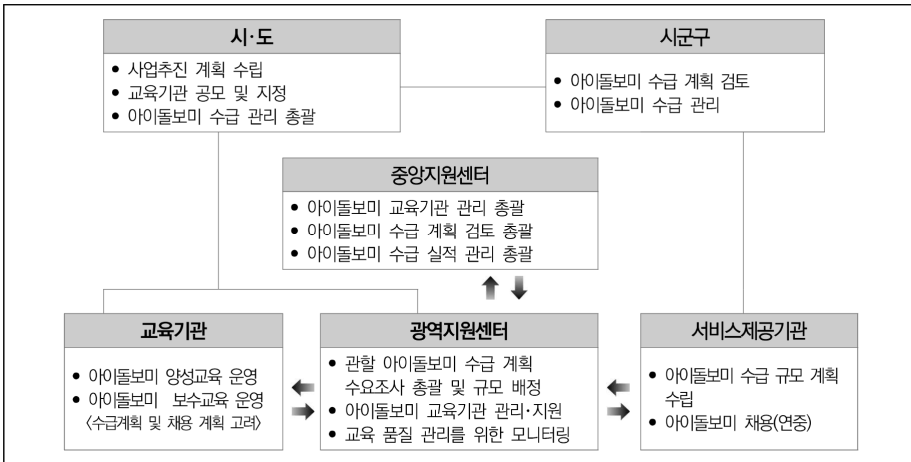
〈표 3-5〉 ‘아이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4.12. 기준, 단위: 개소)

계	건가·다가 통합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여성인력	지자체 직영	사회 복지관	자활센터	기타
231	158	12	3	6	16	3	4	29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아이돌봄 사업)아이돌봄 사업현황  
(<https://idolbom.go.kr/front/biz/stts> 2025.8.25. 최종 접속)

[그림 3-5]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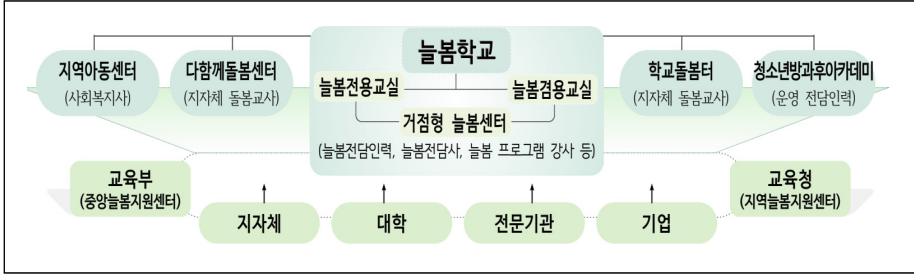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24.

교육부의 ‘늘봄학교’는 교육부 및 늘봄중앙지원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중앙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도 교육청 및 늘봄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대학이 지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별 늘봄지원실이 현장에서 늘봄과정과 늘봄교실 운영을 담당한다. 그중 늘봄중앙지원센터와 늘봄지원센터는 늘봄과정에 대한 준비와 계획 수립, 인력 관리와 운영, 운영 평가 및 환류,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을 담당하기 위해 중앙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전담조직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설치된다.

11) <https://idolbom.go.kr/front/biz/stts>(2025.9.10. 최종 접속).

[그림 3-6] 늘봄학교 운영체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p. 23.

늘봄학교 운영에서는 지역 유관기관, 지역사회 자원, 교육공동체 등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그에 따라 ‘학교 중심형’, ‘학교-대학, 기업 연계형’, ‘거점늘봄센터형’, ‘마을 연계형’, ‘지역기관 연계형’이 운영 사례로 제시된다. 또한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돌봄서비스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6〉 부처별 늘봄학교 관련 서비스 운영 내용

구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학교돌봄터(교육부 협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대상	만 6~12세 미만	만 6~12세 미만	만 18세 미만	초 4학년 ~ 중 3학년
지원 기준 (소득)	맞벌이가정 중심 (없음)	맞벌이가정 중심 (없음)	우선돌봄아동 우선 입소 (저소득, 장애,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구 등)	돌봄취약계층 우선지원 (저소득, 장애, 다문화 가구 등)
지원 내용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등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급·간식 지원 등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상담, 급·간식 지원 등
지원 형태	무상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이용료 자부담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이내, 간식비는 실비 별도 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10만 원 이내 부담)	무상
운영 시간	학기	표준 운영시간 14~20시	표준 운영시간 14~20시	필수 운영시간 14~20시
	방학	표준 운영시간 9~18시	표준 운영시간 9~18시	필수 운영시간 12~17시
근거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p. 96.

‘Wee프로젝트’의 경우, 위기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 구축하고자 한다.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단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상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위(Wee)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는 ‘위(Wee) 센터’(또는 순회상담)을 통해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2024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Wee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정책연구와 수행기관 컨설팅, 프로젝트 종합지원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 3-7〉 ‘Wee프로젝트’ 추진체계

기관	사업	내용
교육청	Wee스쿨	상담을 비롯한 인성·직업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기관 겸 중·장기 위탁기관
	가정형 Wee센터	보호·상담·교육을 통해 학생의 적응 환경을 개선하여 가정 및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중·장기 위탁기관
	병원형 Wee센터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들에게 상담·교육·치료와 의료 자원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병원 치료까지 지원하는 위탁 치료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기타 전담기관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 학교폭력 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기관 117신고센터 등 개설
교육지원청	Wee센터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상담·치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학교	Wee클래스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소속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처: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3\(2025.3.6. 최종 접속\) 참조 정리](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3(2025.3.6. 최종 접속) 참조 정리)

위기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설치된 ‘Wee클래스’는 2008년 530개소에서 2023년 8,863개소로, ‘Wee센터’는 2008년 31개에서 2023년 239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Wee스쿨’은 2010년에 3개소가 처음 개설된 이래로 2023년 17개소로 증가하였다.

〈표 3-8〉 ‘Wee 센터’ 및 ‘Wee 스쿨’ 개설 현황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Wee클래스	530	1,530	2,530	3,170	4,658	4,904	5,633	6,161	6,382	6,624	6,965	7,230	7,631	8,059	8,619	8,863
Wee센터	31	80	110	126	140	155	188	198	204	215	213	216	231	238	238	239
Wee스쿨	-	-	3	3	4	7	9	11	11	13	13	14	15	15	16	17

출처: Wee프로젝트 누리집 ‘기관현황’([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 참조 (2025.8.5. 최종 접속) 정리.

한편,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공공시설 등에 '엄마아빠VIP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및 운영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별도의 운영 체계를 갖추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 내부의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업,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시설과의 거버넌스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2. 청년 및 중장년 돌봄

돌봄 정책에서 청년과 중장년은 아동이나 노인에 비해 소외된 경향이었고, 최근에 와서 주목받는 대상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돌봄 대상자이기보다 돌봄자로 인식되거나 그러한 기능을 주로 수행했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크게 의존하면서도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돌봄을 제공하고, 그 경험은 어떠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부처 정책에서 청년과 중장년을 주 대상으로 한 돌봄 정책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일상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청년을 돌봄의 한 대상으로 삼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경우도 청년 및 중장년 대상의 돌봄과 관련된다. 이 두 사업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법 제3조제4호)로 정의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서 청년과 중장년 돌봄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정책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sup>12)</sup>은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영유아, 초·중등학생이나 노인 이외에 기존의 돌봄서비스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청년·중장년(19~64세),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9~39세)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가돌봄, 가사, 심리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에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부담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sup>13)</sup>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및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4-2-2-2.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창출) 등을 기반으로 한다. 그 대상은 신체건강증진이 필요한 19~34세 청년, 초등돌봄, 일상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9~39세)이다. 이 사업은 청년을 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 및 중장년을 돌봄 대상자로 하는 특징을 지닌다.

## 나. 돌봄 서비스 내용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이란 돌봄 필요성이 있지만,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중 돌봄 필요 청년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거나 고립은둔·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보호연장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도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돌봄

12) 이하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2025b), 『2025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82](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82)),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회서비스 사업’(<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000>)을 참조(2025.9.18. 최종 접속) 정리하였음

13)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2025c), 『2025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과 보건복지부 누리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400>) 참조(2025.9.15. 최종 접속) 정리하였음

이 필요한 경우, 고독사 위험자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청년이 동거하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재가돌봄과 가사가 중심이 된 기본서비스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 경감과 회복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바우처가 제공된다. 후자의 경우, 대상별로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의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화서비스의 제공기간은 6개월(서비스별 재판정 5회 가능)이지만, 간병 교육 서비스는 3개월(재판정 1회)로 제한된다. 다만,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의 신청권자는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비대면(전화, 우편, 팩스)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경우, 휴식 지원서비스나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서비스 등에서 문화분야 돌봄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9〉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중 특화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식사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영양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소셜 다이닝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돌봄필요 청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82), 2025.9.18. 최종 접속.

위 표에 제시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특화서비스를 보면, 심리, 신체건강 서비스나 소셜 다이닝서비스는 심리적·정서적·신체적 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휴식 지원서비스는 돌봄 레스파이트(respite care)에 해당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시설에서 보호와 수발, 기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돌봄 어려움을 해소”(보건복지부, 2025b: 76)하는 것을 목적으로 월 3일 이내에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등록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하고 보호, 수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 가족돌봄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식 지원 서비스(청년, 중장년)는 문화향유, 예술치유, 관광 등 문화 영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소셜 다이닝서비스(청년, 중장년)와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중장년)는 관계성의 회복이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및 문화 분야와 관련을 맺고, 특히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는 그룹별 만남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체험을 포함하는 등 관련성이 크다.

〈표 3-10〉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중 중장년 대상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예시)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사회성 회복 지원 서비스	① 자기이해 워크숍 ②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정서 지원 ③ 인문학 및 자존감 향상 교육 ④ 문화예술활동, 신체활동 ⑤ 체험프로그램(요리체험 등)	주1회 (회당 100분)
부가 서비스	소통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 그룹별 담당 소통 매니저 지정, 안부전화 등 일상생활 소통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독려</li> <li>그룹 내 이용자 간 유대감 형성 지원, 정서적 지지 등 사회와 소통 지원 역할 수행</li> </ul>	수시

출처: 보건복지부(2025b), 『2025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 78.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은 각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한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2025년 현재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15개 시·도별로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하여 총 27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7개 청년서비스사업단의 주된 서비스 분야를 보면, 초등돌봄의 비율이 높고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사업단의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표 3-1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현황(2025)

연번	시도	기관명	서비스 분야
1	부산	(주)레벤그리다 한국문화다양성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	자체개발
2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3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돌봄, 일상돌봄 등
4	대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일상돌봄(신체건강)
5		대구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	일상돌봄(신체건강)
6	인천	검단라파언어심리센터 부설 플로어타임연구소	심리지원
7		(주)아이봄센터	심리지원
8	광주	광주광역시 안심돌봄센터	일상돌봄
9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10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돌봄
11	대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12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심리지원
13	울산	사회적기업 희망주식회사	초등돌봄, 일상돌봄 등
14		사회적협동조합 에셀나무	초등돌봄
15	세종	(주)HA 연구원	초등돌봄
16	경기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17	충북	청주대학교 석우재활서비스센터	초등돌봄, 신체건강
18	충남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19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20	전북	(주)바다음악앤놀이마음연구소	초등돌봄
21		한국문화예술 교육연구원	일상돌봄(신체건강)
22	전남	목포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일상돌봄(신체건강)
23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상돌봄(신체건강)
24	경북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신체건강
25	경남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체건강
26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돌봄
27	제주	국민체력센터ES코칭	신체건강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400>), 2025.9.

15. 최종 접수.

이들 사업단은 청년 및 중장년 대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성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의한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성인, 아동, 청소년 등), 자체개발 서비스 등을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그중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청소년을 포함한 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신체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

해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체육학 관련 전공자를 선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12〉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li> <li>•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li> <li>•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li> <li>•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li> </ul>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부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li> </ul>	1:3 주 3회 (회당 70분)
		1:4 주 3회 (회당 90분)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400>), 2025.9.15. 최종 접속.

#### 다. 정책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추진 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침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승인,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관리 등을 담당하고, 한국사회보장원과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중앙사회서비스원)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총괄·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지원단이 인력 교육·관리, 서비스 홍보·정보제공, 사업 제공기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 3-13〉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 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li> <li>• 사업 추진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li> <li>•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li> <li>• 사업 홍보, 평가, 지도·감독</li> <li>•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li> <li>•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li> </ul>
한국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예탁금 관리</li> <li>•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li> <li>•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li> </ul>

추진주체	기능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총괄 관리</li> <li>• 관내 시군구 사업 기획 총괄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li> <li>• 시·도별 사업안내 지침 수립</li> <li>•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교부, 예산조정 및 집행관리</li> <li>• 시·도 내 사업 홍보 총괄, 성과관리</li> <li>• 시·도 내 민관 네트워크 구축</li> <li>• 시군구 사업 관리·감독, 서비스 심사 및 승인·평가</li> <li>• 시군구 자체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li> <li>• 시·도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총괄</li> </ul>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중앙사회서비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총괄·지원</li> <li>•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li> <li>• 일상돌봄 서비스 기획 및 발굴</li> <li>• 일상돌봄 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li> <li>• 지역 간 일상돌봄 서비스 연계·협력체계 구축</li> </ul>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사업 총괄 관리</li> <li>• 시군구 일상돌봄 서비스 기획 및 시행</li> <li>• 서비스 이용자 모집, 선정 및 관리</li> <li>•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지정·등록 및 지도·감독</li> <li>• 시군구 내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홍보</li> <li>• 사업비 예탁 및 집행 관리</li> </ul>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li> <li>•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선정 판단(서류 검토 및 필요시 선정조사 등)</li> </ul>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li> <li>•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및 정보제공</li> <li>• 사업 제공기관 컨설팅</li> <li>• 일상돌봄 서비스 기획 및 발굴 지원</li> <li>• 민·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li> <li>•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25b), 『2025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 1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추진 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운영계획 수립과 지침 마련,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최종 선정 등을 담당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시·도는 사업단 총괄 관리와 성과 관리 등을, 시군구는 서비스 이용자 모집과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지역 단위의 업무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지원단이 지원한다.

〈표 3-14〉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추진 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li> <li>•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최종 선정</li>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 마련</li> <li>• 성과평가</li> </ul>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괄 관리</li> <li>• 시·도별 사업계획서 접수·심의 및 복지부 제출</li>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 사업 홍보,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li> <li>• 예산 관리(인건비 예산 지급, 사업비 정산 등)</li>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상황 정기적 모니터링, 현장점검</li>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성과관리</li> </ul>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등록·관리</li> <li>• 서비스 이용자 모집, 선정 및 관리</li> <li>• 바우처 예산 관리</li>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상황 정기적 모니터링, 현장점검</li> </ul>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이용자 신청 접수</li> </ul>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인력 채용</li> <li>• 사업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사업수행(서비스 대상자 모집·홍보)</li> <li>• 사업비 신청·정산 등 사업 운영예산 관리</li> <li>• 지자체에 정기적 사업수행 결과보고</li> </ul>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인력 교육 및 점검, 대외홍보</li> <li>• 사회서비스사업단 컨설팅 총괄</li>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실적 관리 지원, 현장점검 지원 등</li> <li>• 취·창업 연계 지원</li> </ul>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관리 지원(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인력 교육, 컨설팅, 현장점검 지원, 사업 실적 관리 지원 등)</li> <li>•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성과평가 지원</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25c), 『2025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p. 10.

### 3. 노인 돌봄

노인은 주요한 돌봄 대상이다. 노인과 관련한 돌봄 서비스는 과거에는 주로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에는 공공 영역에 의한 돌봄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노인 돌봄 정책도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 다만, 현행 노인 돌봄에서 주요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이와 같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노인 돌봄 정책의 사례로 살펴보려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노노케어’ 및 ‘노인역량활용’은 직접적인 돌봄 사업이 아닌 일자리사업이지만, 노인 인력을 통해 노인 돌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 정책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sup>14)</sup>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들에게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에 분절적이던 6개 노인돌봄사업(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심화 및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의 변화를 겪고 있으나, 가족 돌봄 기능은 약화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2024년 12월 23일에 약 7년 만에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가 되었다(행정안전부, 2024). 독거노인은 2024년 약 219만 명에서 2035년 364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지만, 노인의 가족동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친인척·이웃 간 왕래가 줄어들면서 돌봄 공백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노인 인구 및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보건, 돌봄, 영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이에 대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의 욕구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다양화,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방향에서 추진된다. 이를 통해서 장기요양 전 단계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

14) 보건복지부(2025), 『2025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노인맞춤돌봄서비스’(<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400>) 참조(2025.8.15. 최종 접속) 정리.

유지와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보건, 돌봄, 요양 등 노인 관련 고비용 돌봄 진입의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나. 돌봄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와 서비스 제공시간 범위 등을 산정한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된 국민에 대해서는 안전지원(방문, 전화, ICT 활용),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가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된다.

〈표 3-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전화 안전지원, ICT 안전지원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일상생활지원	아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주: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노인맞춤돌봄서비스’(<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400>) 참조 (2025.8.15. 최종 접속) 정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예방적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 지지·격려 및 인식개선 사업, 기타 종사자 지원 및 관리로 구성된다. 그중 직접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는 ‘힐링 프로그램 지원’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외상 경험 등을 겪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을 위한 여행, 캠프, 강연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돌봄을 하는 사람인 케어러(carer)를 대상으로 관광이나 인문프로그램을 포함한 문화분야의 돌봄과의 적극적인 연계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3-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사업

구분		내용
예방적 지원사업	마음터치 콜상담	심리상담, 근로상담이 필요한 종사자 대상 콜상담 운영
	안전관리 지원	업무수행 중 안전위협상황 예방·대응 매뉴얼, 카드뉴스 등 정보 제공·지원
	상호협력동의의 교육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종사자 간 권리·의무 등 상호협력동의의 교육 영상 제공
직접 지원사업	심리·정서 상담 치료비 지원	업무 중 외상경험으로 인한 상담 치료가 필요한 종사자 대상의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상담비 감면 지원
	자살 노출 종사자 사후대응 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자살 또는 자살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종사와 수행기관 대상으로 자살 위기대응 교육 및 사후대응 서비스 지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업무수행 중 외상 경험 등으로 정신건강 증진이 필요한 종사자 대상으로 소진 예방 지원(힐링을 위한 여행, 캠프, 강연 등 지원)
지지·격려 및 인식개선 사업		물품 등 지원을 통한 종사자 지지·격려, 응원캠페인 등을 통한 종사자 인식개선
기타 종사자 지원 및 관리		종사자 교육 및 지원사업 사이트 운영(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

출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종사자·교육지원사업 소개' (<https://www.1661-2129.or.kr/sub02/sub020104.do>) 참조(2025. 9.8. 최종 접속) 정리.

한편, ‘노인돌봄맞춤서비스’에서는 노인의 인지활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중에는 문화활동이나 문화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과 프로그램은 직접서비스 중 사회참여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동기 유발, 타인과의 만남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관계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 경향이다.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으로 구성된다. 음악 활동이나 노래교실, 미술활동, 영화·공연 관람, 지역사회 축제 참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 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노인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 다. 정책 추진 체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시·도 단위의 광역지원기관, 시군구 단위의 지역 수행기관이 연계되는 체계로 운영된다. 그중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광역지원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나 관내 시설(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의 시설, 기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 시·도 지역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지역 수행기관과는 다른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광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전담사회복지사의 사무공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시군구는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때 수행기관 선정 방향에서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기관,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기대되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행기관의 경우, 전담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주체별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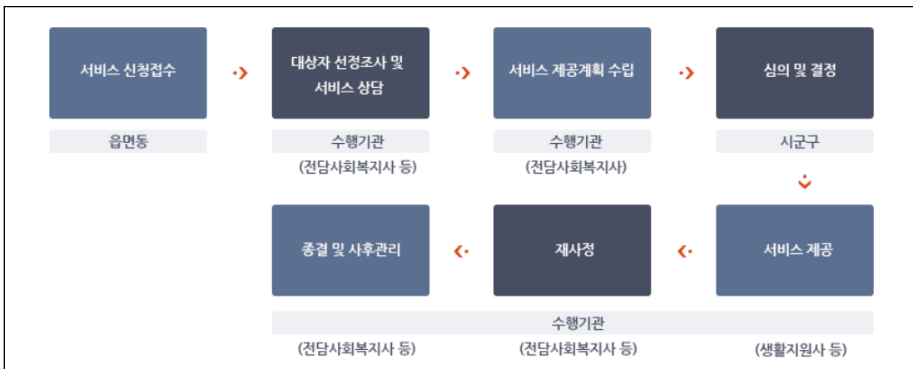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안내 지침 마련</li> <li>•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 마련</li> <li>• 국고보조금 교부, 홍보 등 사업 총괄</li> <li>• 사업 관리·감독 및 평가, 정책연구</li> <li>•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li> </ul>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li> <li>• 시·도 사업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li> <li>•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시·도) 마련</li> <li>•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승인</li> <li>• 광역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li> <li>• 광역지원기관 관리·감독</li> <li>• 시군구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등</li> <li>•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li> <li>• 사업추진 관련 시군구 자료 취합·제출</li> </ul>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매년 1월 중순)</li> <li>•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혹서기 등)(시군구) 마련</li> <li>• 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li> <li>•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li> <li>• 수행기관 관리·감독</li> <li>• 지자체 자체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판단·결정</li> <li>•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여부 등 결정</li> <li>• 시군구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운영</li> <li>•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li> <li>• 보건소·치매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li> <li>• 수행기관 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지원 등</li> <li>•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취합·제출</li> <li>•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li> </ul>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교육 이수</li>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접수</li> <li>•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li> <li>• 수행기관 협조체계 구축</li> </ul>

추진주체	기능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지원</li> <li>•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수행인력 지원</li> <li>• 사업실적 및 통계관리</li> <li>• 사업 평가 관리 및 지원</li> <li>• 사업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li> <li>• 사랑잇기사업 추진 등 후원금품 모집·배부</li> <li>• 중앙모니터링센터(☎1661-2129) 운영</li> <li>• 기타 보건복지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ul>
광역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도에 제출</li> <li>• 광역지원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li> <li>• 광역지원기관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li> <li>•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 추진 지원</li> <li>• 기타 시·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ul>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기관 사업계획수립 및 시군구에 제출</li> <li>• 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li> <li>•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li> <li>•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사업 추진 지원</li> <li>• 기타 시군구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ul>
한국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맞춤돌봄시스템 관리</li> </ul>

출처: 보건복지부(2025), 『2025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p. 21-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직접적인 서비스는 노인인구,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권역별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절차를 보면, 읍면동(서비스 신청 접수)-수행기관(상당 및 서비스계획 수립)-시군구(심의 및 결정)-수행기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에 의해 수행되며,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과 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생활지원사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3-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출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400\(2025.6.8. 최종접속\)](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400(2025.6.8. 최종접속)) 참조 정리.

한편, 노인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한 정책 사업으로 ‘노노케어’와 ‘노인역량활용’을 들 수 있는데,<sup>15)</sup> 그중 ‘노노케어’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취약노인의 생활지원 활동을 위한 정서지원과 활동지원으로 나뉘며, 당해 연도에 65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평균 11개월이나 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이고, 활동비는 월 29만 원이 지급된다. 전국 1,300여 개 기관이 수행하는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시·도-시군구-사업수행기관이라는 사업 추진체계를 통해서 사업수행기관에 지원된다.

‘노인역량활용’도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의 업무에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지만, 안전관리 지원이나 시니어 컨설턴트 등의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기타의 5개 영역으로 나뉜다. 그중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와 취약계층 전문서비스에 돌봄 서비스가 집중되고, 특히 취약계층 전문서비스에 노인 대상의 돌봄 서비스가 주로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기간은 10개월이고 월 활동비는 63.4만 원(주휴, 연차수당 별도)이 지급된다.

〈표 3-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 돌봄 관련 사업 내용

구분	내용
노인공익활동사업 노노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 정서지원, 활동지원</li> </ul>
노인역량활용사업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https://www.kordi.or.kr/content.do?cmsld=107) 참조(2025.8.5. 최종 접속) 정리.

15) 이하 ‘노노케어’와 ‘노인역량활용’에 대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https://www.kordi.or.kr/content.do?cmsld=107) 참조(2025.8.5. 최종 접속) 정리하였다.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처럼 시사점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돌봄 정책 및 사업의 경향과 특성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부처의 돌봄 사업들은 생애주기별·대상별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족돌봄 기능의 약화 등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정책 대상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돌봄의 방향이 일상·통합 돌봄으로 확장하면서 청년 및 중장년과 관련한 돌봄 정책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 돌봄에서도 공공 및 지역 사회의 역할과 서비스의 보편성 확대가 중요해졌다.

이와 같은 경향과 함께 최근에는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자 및 그들을 위한 돌봄 레스파이트(respite care)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돌봄 서비스는 주로 돌봄 대상자(cared)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돌봄자(carer)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사례에서는 종사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종사자를 위한 힐링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이 외에도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다함께돌봄센터 사례(아동권리보장원, 2021)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정책에서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지원 및 지원프로그램 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 분야 돌봄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돌봄의 주요 대상이나 범주를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달 단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 아동 돌봄 및 보건·의료와 밀접한 노인 돌봄과 청년·중장년 돌봄의 특성을 고

려하면서 기존 정책과 협력할 영역과 문화 분야 돌봄 정책에서 집중할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돌봄자를 고려할 때에는 문화시설에서의 돌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둘째, 돌봄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한 체계 및 인력에 관한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돌봄 사업은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지역 수행기관으로 연계되어 운영된다. 중앙정부는 주로 제도·재원 마련, 기본계획 및 지침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중앙 단위의 지원기관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인력 교육, 사업 및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하기도 한다. 실제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청년사회서비스 인력 등이 배치되어 직접 돌봄 업무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사회서비스나 노노케어처럼 또래를 활용한 돌봄 인력 활용, 자기돌봄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 분야 돌봄 사업의 추진에서는 변화하는 경향과 수요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또한 기존 돌봄 정책과의 협력 및 문화분야 돌봄의 고유 영역을 설정할 때에는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전달체계나 인력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문화로 사회연대’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지역의 문화재단이라는 수행 체계 하에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예술누림(운영시설형)’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열악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각 생애주기 돌봄과 관련한 시설에 예술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는 기존 돌봄 정책의 체계와 결합한 방식인데, 이때에도 공모를 통한 지원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결합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돌봄 정책에서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와도 관련된다.

〈표 3-19〉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예술누림(운영시설형)’ 추진 개요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현장 수요자인 운영시설의 프로그램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li> </ul>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에 의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li> </ul>	
	교육대상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소년원 학교(소년원)
	성인·노인	노인 복지관,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전생애	기타 소외 사각지대 시설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60시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li> <li>운영시설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예술가 활동비, 교통비, 운영시설 담당자 인건비, 교육재료비 및 교육기자재 임차 등)</li> </ul>	
누리집	문화예술교육 예술누림 플랫폼( <a href="https://nurim.arte.or.kr/main/mainPage.do">https://nurim.arte.or.kr/main/mainPage.do</a>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https://www.arte.or.kr/business/citizenSociety/art/index.do>) 참조(2025.9.18.) 정리.

셋째, 돌봄 정책 및 사업의 문화 분야 연계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다. 현행 돌봄 정책 사례를 보면, 돌봄 현장의 운영 프로그램에서 문화·예술 및 체육 등 문화 분야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문화서비스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동 연령대에는 문화·예술 체험이나 또래관계 형성 관련한 문화프로그램, 청년과 중장년에게는 여가나 교류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노인에게는 사회참여나 교류증진을 위한 문화 활동이나 예술치유 등의 문화프로그램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행 돌봄 사업에서 문화서비스는 ‘부가적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장기성을 갖지 못한 채, 단기 체험이나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돌봄 대상자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 등을 효과를 미치기에 한계가 있다. 문화와 돌봄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결합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문화예술교육사나 예술치유 전문가 등의 인력도 체계적으로 배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는 문화 분야 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미약하거나 각 지역 내의 인적 자원 등 문화자원 격차와 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현행 돌봄 정책 및 사업에 문화 분야가 체계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돌봄과 문화 부문 간 협력 및 제도적 연계성 강화가 요구된다. 즉, 문화체육관광부와 돌봄 주무부처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문화적인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필수 요소로

포함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개발 사업이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마을돌봄이라는 체계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현재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사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들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의 협업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은 제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분야의 돌봄서비스와 기능에 대한 이해 제고와 부처 간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사, 예술치유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이 돌봄 영역과 적극 결합할 수 있게 재교육 등 보완조치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지역의 예술가, 문화시설, 축제 등 문화자원을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생활권 기반의 맞춤형 문화 돌봄을 활성화하거나 돌봄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자존감 향상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문화분야 돌봄 모델 개발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문화서비스를 돌봄의 단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돌봄 대상자 및 돌봄자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하겠다.

〈표 3-20〉 돌봄 정책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돌봄 정책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중점</li> <li>•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지원 등장</li> <li>• 민관 협력 및 지역 네트워크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정책 전반의 통합성·보편성 강화에 대응, 문화서비스를 통한 돌봄 중점 대상과 영역 설정 필요</li> </ul>
문화서비스 결합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문화예술 체험, 놀이·창의활동</li> <li>• 청년·중장년: 여가 교류 중심 문화활동</li> <li>• 노인: 치유·예술·사회참여형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분야가 부가적·단기적·일회적으로 활용, 서비스 품질 및 지역 편차 문제 등의 해소 필요</li> </ul>
추진체계·인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특화인력의 문화서비스 전문성 부족</li> <li>• 문화서비스 인력의 돌봄적 관점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자원 자격관리(재교육) 등 문화 분야와 돌봄 결합을 위한 기반 마련, 전문화된 인력 확보 필요</li> </ul>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제4장

##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분석



# 제1절 분석개요

## 1. 조사설계

문화분야 돌봄정책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문화시설 이용 경험자<sup>16)</sup>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돌봄 부담 수준 및 생애주기별 분석 가능하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돌봄 부담자를 판별하는 문항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일상생활의 제약 수준을 토대로 설문항을 설계하였다. 문화여가생활의 측정범주는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상위권 빈도를 나타내는 활동 중 사회 일반활동(친구만남,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과 스포츠를 제외한 문화적 여가활동으로 측정범위를 설계하였다. 조사 설계 및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4-1〉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최근 5년 이내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자 조사
조사 인원 (표본 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연령, 지역 및 육아, 간병, 가사 등 타인 돌봄부담자 표본할당 고려)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라인, 모바일, 이메일을 통한 조사
조사 내용	- 돌봄부담 수준 - 문화여가 생활 현황 - 자기돌봄 수준 -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
조사 기간	7월 15일 ~ 7월 30일

16) 문화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최소한으로 형성되어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문화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표 4-2〉 조사내용(설문지 구성)

구분	질문
돌봄 부담	귀하의 가족 중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야 하는 분이 있습니까?(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
	귀하께서는 가족을 돌보고 계십니까?
	귀하께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귀하께서 돌보는 대상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난 1년동안 귀하께서 가족을 돌보는데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께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상을 유지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 여가 생활	귀하께서는 최근 5년 이내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난 1년동안 귀하께서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지난 1년동안 참여한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지난 1년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난 1년동안 귀하의 여가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기 돌봄 수준	불만족하신 주된 이유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과 관련이 있습니까?
	귀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유형별 사회관계 맺기가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정책 수요	불만족하신 주된 이유가 자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책지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대리돌봄/재가돌봄, 가사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예술치유, 문화여가 서비스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책지원을 원활히 이용하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예술치유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문화여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다음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대리돌봄/재가돌봄, 가사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예술치유, 문화여가 서비스
	귀하께서 예술치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귀하께서 문화여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정책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책서비스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인구 통계	성별, 나이, 거주지역, 동거 가족 수, 혼인 상태, 월 평균 가구 소득, 최종 학력, 직업

## 2.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 해당자 40%, 비해당자 60%이고, 돌봄대상과의 관계는 존속(부모, 조부모 등) 25.7%, 비속(자녀, 손자녀 등) 11.5%, 형제자매/배우자 10.5%로 분포되어 있다.

〈표 4-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전체		(1000)	100.0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40.0
	없음	(600)	60.0
돌봄 대상	비속	(115)	11.5
	존속	(257)	25.7
	형제자매/배우자	(105)	10.5
성별	남성	(448)	44.8
	여성	(552)	55.2
연령대	20대 이하	(131)	13.1
	30대	(269)	26.9
	40대	(277)	27.7
	50대	(222)	22.2
	60대 이상	(101)	10.1
거주지	수도권	(300)	30.0
	충청권	(150)	15.0
	전라권	(150)	15.0
	경상권	(250)	25.0
	강원/제주	(150)	15.0
가구원수	1명	(143)	14.3
	2명	(189)	18.9
	3명	(340)	34.0
	4명	(250)	25.0
	5명 이상	(78)	7.8
혼인 상태	미혼	(413)	41.3
	기혼	(563)	56.3
	기타	(24)	2.4

	구분	사례수	%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1)	5.1
	100만~299만 원	(170)	17.0
	300만~499만 원	(286)	28.6
	500만~699만 원	(242)	24.2
	700만~999만 원	(163)	16.3
	1,000만 원 이상	(71)	7.1
	모름/무응답	(17)	1.7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1)	1.1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8)	14.8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712)	71.2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26)	12.6
	모름/무응답	(3)	0.3
직업	학생	(45)	4.5
	직장인	(592)	59.2
	자영업자	(81)	8.1
	프리랜서/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69)	6.9
	주부	(105)	10.5
	무직/은퇴	(92)	9.2
	기타	(16)	1.6

## 제2절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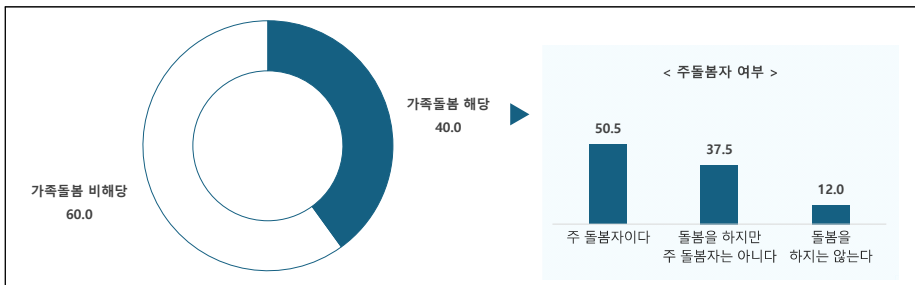
### 1. 돌봄부담

#### 가. 돌봄 해당여부

전체 응답자의 40.0%가 현재 육아, 간병, 가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야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가장 많이 돌보고, 전반적인 돌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주 돌봄자이다’는 50.5%로 나타났다. ‘돌봄을 하지만 주 돌봄자는 아니다’(37.5%), ‘돌봄을 하지는 않는다’(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가족돌봄 및 주돌봄자 해당여부

(Base : 전체/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N=1,000/400, Unit : %)



〈표 4-4〉 가족돌봄 해당여부

(Base : 전체, N=1,000, Unit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000)	40.0	60.0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100.0
	없음	(600)	0.0
돌봄대상	비속	(115)	100.0
	존속	(257)	100.0
	형제자매/배우자	(105)	100.0

〈표 4-5〉 주돌봄자 여부

(Base :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N=400,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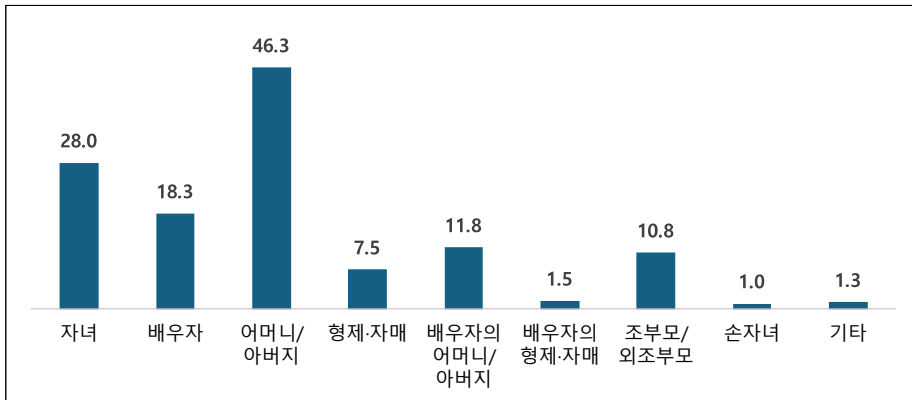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주 돌봄자이다	돌봄을 하지만 주 돌봄자는 아니다	돌봄을 하지는 않는다	
전체	(400)	50.5	37.5	12.0	
돌봄대상	비속	(115)	73.9	21.7	4.3
	존속	(257)	44.0	41.6	14.4
	형제자매/배우자	(105)	54.3	37.1	8.6

## 나. 돌봄 대상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돌봄 대상 가족구성원은 ‘어머니/아버지’가 46.3%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이어서 ‘자녀’(28.0%), ‘배우자’(18.3%), ‘배우자의 어머니/아버지’(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돌봄 대상 가족구성원

(Base :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N=400, Unit : %, 복수응답)



〈표 4-6〉 돌봄 대상 가족구성원

(Base :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N=400, Unit :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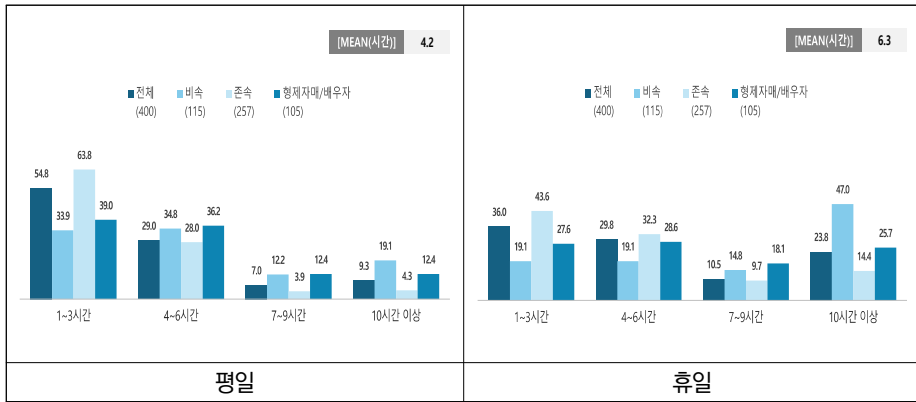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자녀	배우자	어머니/아버지	형제·자매	배우자의 어머니/아버지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손자녀	기타	
전체	(400)	28.0	18.3	46.3	7.5	11.8	1.5	10.8	1.0	1.3	
돌봄대상	비속	(115)	97.4	38.3	18.3	1.7	5.2	0.9	3.5	3.5	0.0
	존속	(257)	10.1	7.4	72.0	3.5	18.3	0.8	16.7	0.4	0.0
	형제자매/배우자	(105)	41.9	69.5	21.0	28.6	7.6	5.7	1.9	1.0	0.0

### 다. 돌봄 소요시간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일 평균 4.2시간, 휴일 평균 6.3시간으로 평일대비 휴일의 돌봄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었다. 돌봄대상은 평일과 휴일 모두 자녀/손자녀 등 비속 관계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평균 평일 6.3시간, 휴일 9.5시간), 다음으로 형제자매/배우자(평일 5.3시간, 휴일 7.1시간), 부모/조부모 등 존속(평일 3.3시간, 휴일 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돌봄 소요 평균 시간

(Base :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N=400, Unit : %, 시간)



<표 4-7> 가족돌봄 소요 평균 시간

(Base :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N=400, Unit :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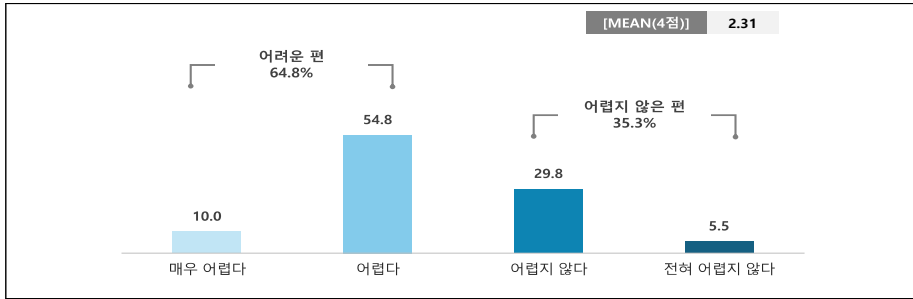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상	평균 : (시간)
평일	전체	(400)	24.8	15.0	15.0	11.5	10.3	7.3	1.5	4.3	1.3	9.3	4.2
	돌봄 대상 비속	(115)	9.6	11.3	13.0	8.7	15.7	10.4	4.3	5.2	2.6	19.1	6.3
	돌봄 대상 존속	(257)	31.9	15.6	16.3	12.5	8.6	7.0	1.2	1.9	0.8	4.3	3.3
	돌봄 대상 형제자매/배우자	(105)	8.6	14.3	16.2	10.5	15.2	10.5	3.8	8.6	0.0	12.4	5.3
휴일	전체	(400)	14.3	11.0	10.8	10.8	11.0	8.0	2.8	6.0	1.8	23.8	6.3
	돌봄 대상 비속	(115)	4.3	7.0	7.8	4.3	10.4	4.3	6.1	7.0	1.7	47.0	9.5
	돌봄 대상 존속	(257)	18.3	11.3	14.0	12.1	10.1	10.1	3.1	5.8	0.8	14.4	5.0
	돌봄 대상 형제자매/배우자	(105)	4.8	14.3	8.6	10.5	12.4	5.7	2.9	10.5	4.8	25.7	7.1

## 라.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가족 돌봄으로 인한 현재 일상 유지 및 미래 계획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는 ‘어렵다(매우 어렵다+어렵다)’는 의견이 64.8%로, ‘어렵지 않다(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35.3%) 대비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4-4] 가족돌봄으로 인한 현재 일상 유지 및 미래 계획의 어려움 정도

(Base :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N=400, Unit : %, 점/4점)



<표 4-8> 가족 돌봄으로 인한 현재 일상 유지 및 미래 계획의 어려움 정도

(Base :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N=4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가족 돌봄으로 인한 현재 일상 유지 및 미래 계획의 어려움 정도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어렵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려운 편	어렵지 않은 편			
전체	(400)	10.0	54.8	29.8	5.5	64.8	35.3	2.31	57.7	
돌봄 대상	비속	(115)	11.3	50.4	34.8	3.5	61.7	38.3	2.30	57.6
	존속	(257)	10.9	55.6	27.2	6.2	66.5	33.5	2.29	57.2
	형제자매/배우자	(105)	9.5	55.2	31.4	3.8	64.8	35.2	2.30	57.4

## 2. 문화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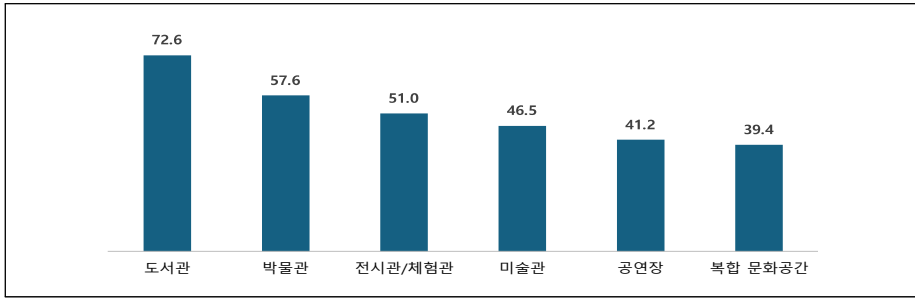
### 가. 문화시설 이용 경험

최근 5년 이내에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을 확인한 결과, ‘도서관’이 7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박물관’(57.6%), ‘전시관/체험관’(5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각 문화시설별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험 수준을 보였다.

[그림 4-5]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Base : 전체, N=1,000, Unit : %, 복수응답)



〈표 4-9〉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Base : 전체, N=1,000, Unit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미술관	공연장	복합 문화공간	
<b>전체</b>	<b>(1000)</b>	<b>72.6</b>	<b>57.6</b>	<b>51.0</b>	<b>46.5</b>	<b>41.2</b>	<b>39.4</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71.8	59.8	52.3	50.0	40.3	43.0
	없음	(600)	73.2	56.2	50.2	44.2	41.8	37.0
돌봄대상	비속	(115)	77.4	66.1	57.4	57.4	46.1	44.3
	존속	(257)	69.3	59.1	52.9	47.9	42.4	47.5
	형제자매/배우자	(105)	76.2	63.8	41.9	53.3	41.0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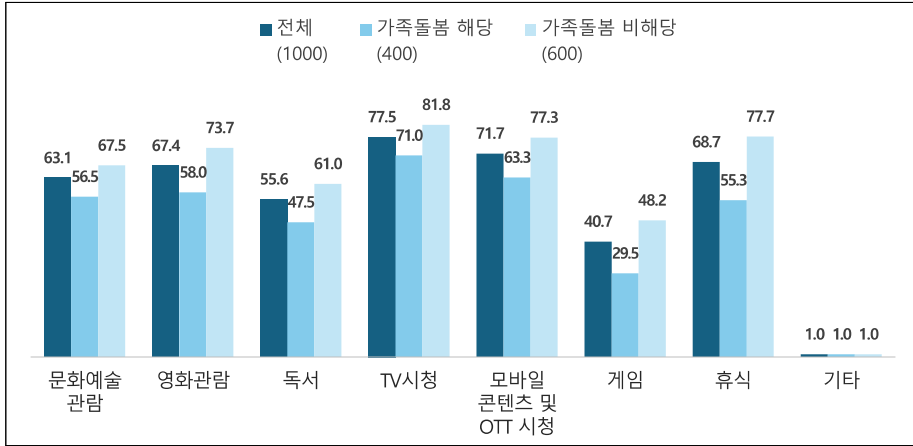
## 나. 문화여가활동 참여

### 1) 문화여가활동 참여 종류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문화여가활동의 종류는 ‘TV시청’이 77.5%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돌봄 해당/비해당(각 71.0%, 81.8%) 여부와 무관했다.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63.3%), ‘영화관람’(58.0%), ‘문화예술 관람’(56.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반적인 응답률이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휴식’(77.7%), ‘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77.3%), ‘영화관람’(7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문화여가활동 참여 종류

(Base : 전체, Unit : %, 복수응답)



<표 4-10> 문화여가활동 참여 종류

(Base : 전체, N=1,000, Unit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문화 예술 관람	영화 관람	독서	TV시청	모바일 콘텐츠 및 OTT 시청	게임	휴식	기타
전체	(1000)	63.1	67.4	55.6	77.5	71.7	40.7	68.7	1.0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56.5	58.0	47.5	71.0	63.3	29.5	55.3	1.0
	없음 (600)	67.5	73.7	61.0	81.8	77.3	48.2	77.7	1.0
돌봄대상	비속 (115)	50.4	61.7	52.2	68.7	64.3	33.0	57.4	1.7
	존속 (257)	61.1	60.3	48.2	73.9	66.5	31.1	59.1	0.8
	형제자매/배우자 (105)	44.8	49.5	44.8	61.9	49.5	19.0	34.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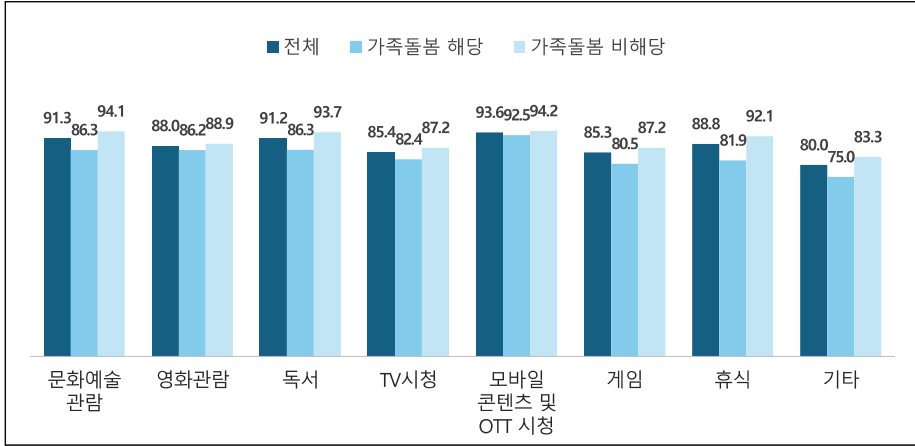
## 2) 여가활동별 참여 만족도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의 긍정(약간 만족+매우 만족) 비율이 9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람(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방문)’(91.3%), ‘독서’(91.2%), ‘휴식’(88.8%), ‘영화관람’(88.0%), ‘TV’(85.4%), ‘게임’(85.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여부를 고려해 볼 때 만족도 수준 순서는 돌봄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비돌봄자 대비 낮게 나타났다.

[그림 4-7]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가족돌봄 해당여부별

(Base : 해당 여가활동 참여 응답자, Unit : %(약간 만족+매우 만족))



<표 4-11>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문화예술관람

(Base : '문화예술관람' 참여 응답자, N=631,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 수	문화예술관람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전체	(631)	1.1	7.6	67.5	23.8	8.7	91.3	3.14	78.5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226)	1.8	11.9	71.7	14.6	13.7	86.3	2.99	74.8
	없음	(405)	0.7	5.2	65.2	28.9	5.9	94.1	3.22	80.6
돌봄대상	비속	(58)	1.7	15.5	72.4	10.3	17.2	82.8	2.91	72.8
	존속	(157)	1.9	9.6	71.3	17.2	11.5	88.5	3.04	76.0
	형제자매/배우자	(47)	0.0	14.9	74.5	10.6	14.9	85.1	2.96	73.9

<표 4-12>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영화관람

(Base : '영화관람' 참여 응답자, N=674,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 수	영화관람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전체	(674)	1.0	11.0	63.9	24.0	12.0	88.0	3.11	77.7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232)	1.7	12.1	63.4	22.8	13.8	86.2	3.07	76.8
	없음	(442)	0.7	10.4	64.3	24.7	11.1	88.9	3.13	78.2
돌봄대상	비속	(71)	2.8	12.7	63.4	21.1	15.5	84.5	3.03	75.7
	존속	(155)	1.9	12.9	61.3	23.9	14.8	85.2	3.07	76.8
	형제자매/배우자	(52)	1.9	17.3	55.8	25.0	19.2	80.8	3.04	76.0

〈표 4-13〉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독서

(Base : '독서' 참여 응답자, N=556,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독서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b>전체</b>	<b>(556)</b>	<b>1.1</b>	<b>7.7</b>	<b>55.9</b>	<b>35.3</b>	<b>8.8</b>	<b>91.2</b>	<b>3.25</b>	<b>81.3</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190)	1.6	12.1	60.5	25.8	13.7	86.3	3.11	77.6
	없음	(366)	0.8	5.5	53.6	40.2	6.3	93.7	3.33	83.3
돌봄대상	비속	(60)	0.0	15.0	58.3	26.7	15.0	85.0	3.12	77.9
	존속	(124)	2.4	12.9	56.5	28.2	15.3	84.7	3.10	77.6
	형제자매/배우자	(47)	0.0	12.8	66.0	21.3	12.8	87.2	3.09	77.1

〈표 4-14〉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TV시청

(Base : 'TV시청' 참여 응답자, N=775,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TV시청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b>전체</b>	<b>(775)</b>	<b>1.5</b>	<b>13.0</b>	<b>60.0</b>	<b>25.4</b>	<b>14.6</b>	<b>85.4</b>	<b>3.09</b>	<b>77.3</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284)	2.5	15.1	57.7	24.6	17.6	82.4	3.05	76.1
	없음	(491)	1.0	11.8	61.3	25.9	12.8	87.2	3.12	78.0
돌봄대상	비속	(79)	1.3	10.1	67.1	21.5	11.4	88.6	3.09	77.2
	존속	(190)	2.6	16.8	54.2	26.3	19.5	80.5	3.04	76.1
	형제자매/배우자	(65)	1.5	13.8	58.5	26.2	15.4	84.6	3.09	77.3

〈표 4-15〉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

(Base : '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 참여 응답자, N=717,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b>전체</b>	<b>(717)</b>	<b>0.4</b>	<b>6.0</b>	<b>52.7</b>	<b>40.9</b>	<b>6.4</b>	<b>93.6</b>	<b>3.34</b>	<b>83.5</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253)	0.8	6.7	53.4	39.1	7.5	92.5	3.31	82.7
	없음	(464)	0.2	5.6	52.4	41.8	5.8	94.2	3.36	83.9
돌봄대상	비속	(74)	1.4	12.2	52.7	33.8	13.5	86.5	3.19	79.7
	존속	(171)	0.6	4.7	54.4	40.4	5.3	94.7	3.35	83.6
	형제자매/배우자	(52)	0.0	11.5	57.7	30.8	11.5	88.5	3.19	79.8

〈표 4-16〉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게임

(Base : '게임' 참여 응답자, N=407,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게임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b>전체</b>	<b>(407)</b>	<b>0.5</b>	<b>14.3</b>	<b>60.9</b>	<b>24.3</b>	<b>14.7</b>	<b>85.3</b>	<b>3.09</b>	<b>77.3</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118)	0.8	18.6	60.2	20.3	19.5	80.5	3.00	75.0
	없음	(289)	0.3	12.5	61.2	26.0	12.8	87.2	3.13	78.2
돌봄대상	비속	(38)	2.6	31.6	44.7	21.1	34.2	65.8	2.84	71.1
	존속	(80)	0.0	16.3	60.0	23.8	16.3	83.8	3.08	76.9
	형제자매/배우자	(20)	0.0	35.0	40.0	25.0	35.0	65.0	2.90	72.5

〈표 4-17〉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휴식

(Base : '휴식' 참여 응답자, N=687,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휴식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b>전체</b>	<b>(687)</b>	<b>0.6</b>	<b>10.6</b>	<b>43.5</b>	<b>45.3</b>	<b>11.2</b>	<b>88.8</b>	<b>3.33</b>	<b>83.4</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221)	1.4	16.7	41.6	40.3	18.1	81.9	3.21	80.2
	없음	(466)	0.2	7.7	44.4	47.6	7.9	92.1	3.39	84.9
돌봄대상	비속	(66)	1.5	22.7	42.4	33.3	24.2	75.8	3.08	76.9
	존속	(152)	2.0	13.2	43.4	41.4	15.1	84.9	3.24	81.1
	형제자매/배우자	(36)	0.0	27.8	47.2	25.0	27.8	72.2	2.97	74.3

〈표 4-18〉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별 만족도\_기타

(Base : '기타' 참여 응답자, N=10, Unit : %, 점/4점, 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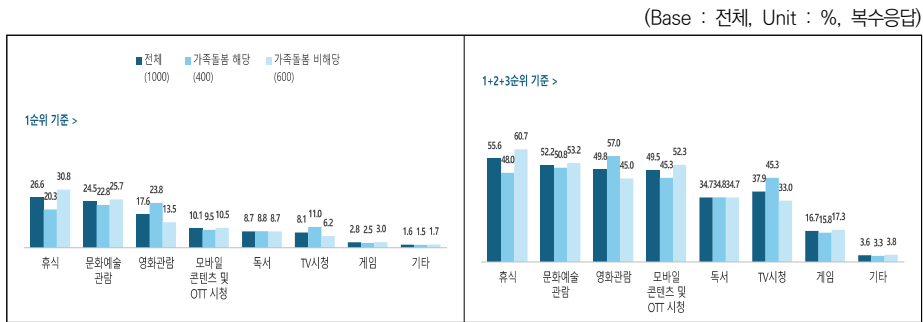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기타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b>전체</b>	<b>(10)</b>	<b>-</b>	<b>20.0</b>	<b>10.0</b>	<b>70.0</b>	<b>20.0</b>	<b>80.0</b>	<b>3.50</b>	<b>87.5</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	-	25.0	25.0	50.0	25.0	75.0	3.25	81.3
	없음	(6)	-	16.7	0.0	83.3	16.7	83.3	3.67	91.7
돌봄대상	비속	(2)	-	50.0	50.0	0.0	50.0	50.0	2.50	62.5
	존속	(2)	-	0.0	0.0	100.0	0.0	100.0	4.00	100.0
	형제자매/배우자	(1)	-	0.0	100.0	0.0	0.0	100.0	3.00	75.0

## 다. 문화여가활동 희망(욕구)

지난 1년동안 가장 희망했던 문화여가활동은 1순위, 1+2+3순위 모두 ‘휴식’이 각 26.6%, 5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관람’(각 24.5%, 52.5%)을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영화관람’(1순위 23.8%, 1+2+3순위 57.0%)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주로 ‘휴식’(1순위 30.8%, 1+2+3순위 60.7%)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지난 1년 동안 가장 희망했던 여가활동



[표 4-19] 지난 1년 동안 가장 희망했던 여가활동

(Base : 전체, N=1,000, Unit : %)

구분		사례수	휴식	문화 예술 관람	영화 관람	모바일 콘텐츠 및 OTT 시청	독서	TV시청	게임	기타	
1순위	전체	(1000)	26.6	24.5	17.6	10.1	8.7	8.1	2.8	1.6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20.3	22.8	23.8	9.5	8.8	11.0	2.5	1.5
		없음	(600)	30.8	25.7	13.5	10.5	8.7	6.2	3.0	1.7
	돌봄대상	비속	(115)	21.7	20.9	20.9	7.8	12.2	13.9	1.7	0.9
		존속	(257)	21.8	21.8	24.5	10.1	7.0	10.1	2.7	1.9
		형제자매/배우자	(105)	9.5	21.0	29.5	10.5	16.2	10.5	1.0	1.9
1+2+3순위	전체	(1000)	55.6	52.2	49.8	49.5	34.7	37.9	16.7	3.6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48.0	50.8	57.0	45.3	34.8	45.3	15.8	3.3
		없음	(600)	60.7	53.2	45.0	52.3	34.7	33.0	17.3	3.8
	돌봄대상	비속	(115)	49.6	47.8	62.6	40.0	40.9	41.7	14.8	2.6
		존속	(257)	49.4	53.7	54.9	45.5	32.3	46.3	14.0	3.9
		형제자매/배우자	(105)	30.5	41.0	61.0	51.4	44.8	49.5	20.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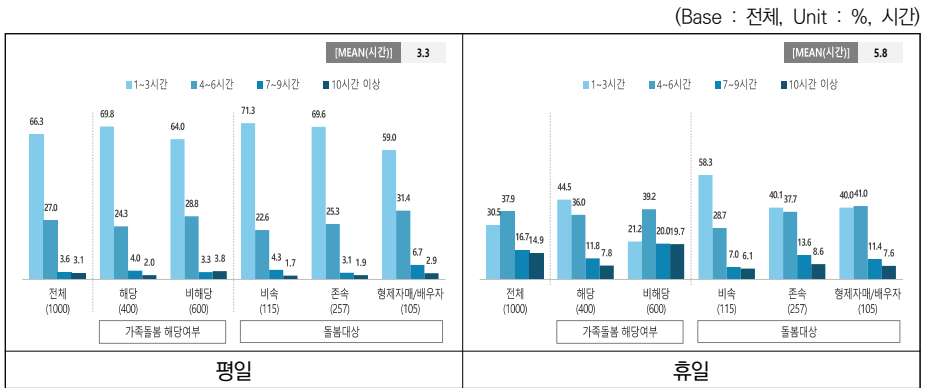
## 라. 여가시간

### 1) 하루평균 여가시간

지난 1년 동안 여가에 소요한 하루 평균 시간은 평일 평균 3.3시간, 휴일 평균 5.8시간으로 휴일대비 평일의 여가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이 있는 경우(평균 평일 3.2시간, 주말 4.4시간)가 가족돌봄이 없는 경우(평균 평일 3.4시간, 주말 6.6시간) 보다 여가시간이 적었다. 특히 돌봄 대상별로는 평일에는 부모/조부모 존속관계의 여가시간(평균 3.1시간), 휴일에는 자녀/손자녀와 같은 비속관계의 여가시간(평균 4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림 4-9] 평균 여가시간 : 평일



<표 4-20> 하루평균 여가시간

(Base :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 N=400, Unit :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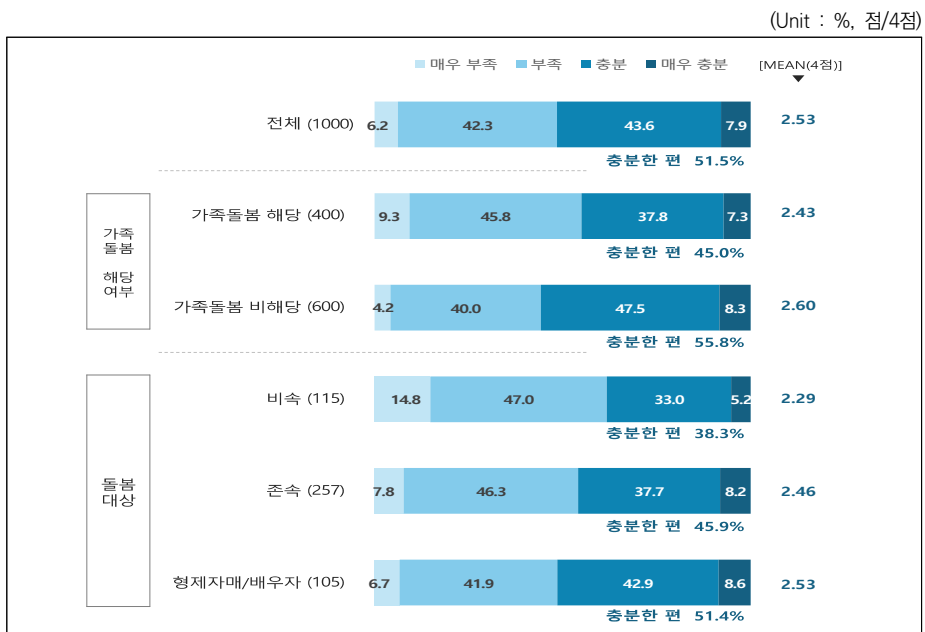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이상	평균 : (시간)
평일	전체	(1000)	17.1	27.2	22.0	12.5	9.6	4.9	1.5	2.1	0	3.1	3.3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19.0	29.3	21.5	11.3	9.0	4.0	2.0	2.0	0	2.0	3.2
	없음	(600)	15.8	25.8	22.3	13.3	10.0	5.5	1.2	2.2	0	3.8	3.4
	돌봄대상												
	비속	(115)	24.3	28.7	18.3	10.4	6.1	6.1	2.6	1.7	0	1.7	3.2
휴일	전체	(1,000)	4.6	11.1	14.8	10.2	15.7	12.0	5.2	10.1	1.4	14.9	5.8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7.8	18.3	18.5	12.0	16.3	7.8	4.0	6.5	1.3	7.8	4.6
	없음	(600)	2.5	6.3	12.3	9.0	15.3	14.8	6.0	12.5	1.5	19.7	6.6
	돌봄대상												
	비속	(115)	11.3	27.0	20.0	13.0	11.3	4.3	3.5	2.6	0.9	6.1	4.0
존속 (257)	7.0	16.0	17.1	12.8	16.7	8.2	4.7	7.8	1.2	8.6	4.8		
형제자매/배우자 (105)	4.8	16.2	19.0	13.3	15.2	12.4	2.9	6.7	1.9	7.6	5.0		

## 2) 여가시간 충분 정도

지난 1년 동안의 여가시간 충분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편(매우 충분+충분)’이라는 의견이 51.5%로, ‘부족한 편(부족+매우 부족)’(48.5%)과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다만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충분한 편’ 응답이 45.0%로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55.8%) 대비 낮았으며, 특히 돌봄 대상별로는 ‘충분한 편’ 응답 비율이 ‘비속(자녀/손자녀)’ 38.3%, ‘존속(부모/조부모)’ 45.9%로 낮았다.

[그림 4-10] 여가시간 충분 정도



<표 4-21> 여가시간 충분 정도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지난 1년 동안 여가시간의 충분 정도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부족한 편	충분한 편		
전체	(1000)	6.2	42.3	43.6	7.9	48.5	51.5	2.53	63.3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9.3	45.8	37.8	7.3	55.0	45.0	2.43	60.8
	없음 (600)	4.2	40.0	47.5	8.3	44.2	55.8	2.60	65.0
돌봄대상	비속 (115)	14.8	47.0	33.0	5.2	61.7	38.3	2.29	57.2
	존속 (257)	7.8	46.3	37.7	8.2	54.1	45.9	2.46	61.6
	형제자매/배우자 (105)	6.7	41.9	42.9	8.6	48.6	51.4	2.53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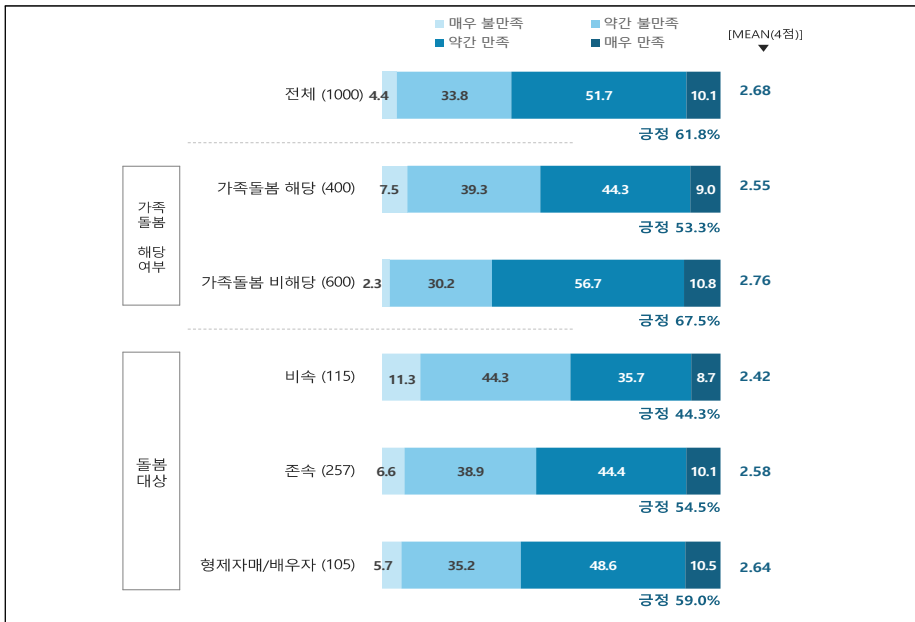
### 3)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긍정(약간 만족+매우 만족) 비율은 61.8% 수준이었다.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긍정 비율(53.3%)은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67.5%) 대비 낮았으며, 특히 돌봄 대상별로는 ‘비속(자녀/손자녀)’의 긍정 비율이 44.3%로 여가생활 만족도가 특히 낮았다.

[그림 4-11]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Unit : %, 점/4점)



<표 4-22>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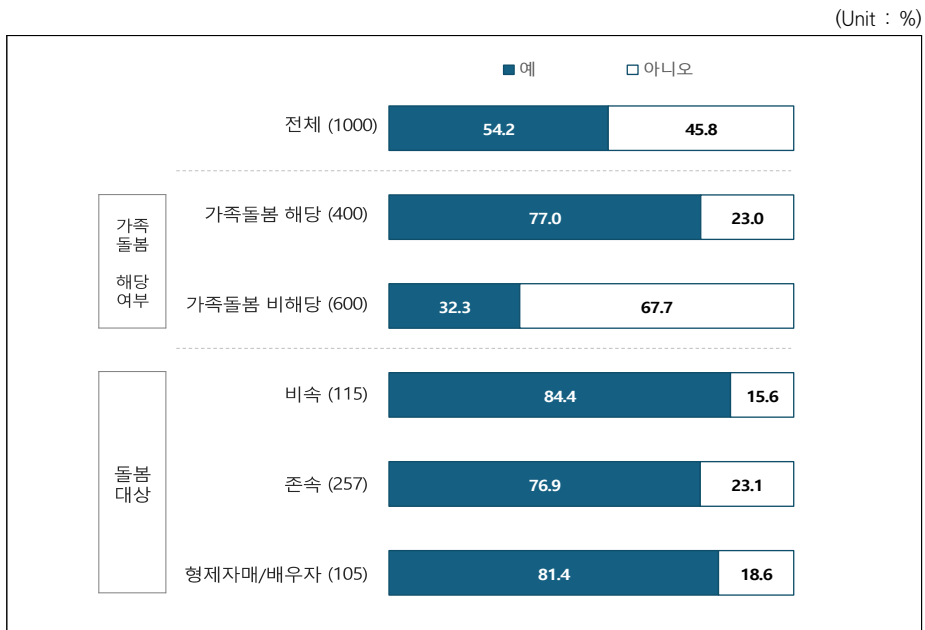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전체	(1000)	4.4	33.8	51.7	10.1	38.2	61.8	2.68	66.9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7.5	39.3	44.3	9.0	46.8	53.3	2.55	63.7
	없음 (600)	2.3	30.2	56.7	10.8	32.5	67.5	2.76	69.0
돌봄대상	비속 (115)	11.3	44.3	35.7	8.7	55.7	44.3	2.42	60.4
	존속 (257)	6.6	38.9	44.4	10.1	45.5	54.5	2.58	64.5
	형제자매/배우자 (105)	5.7	35.2	48.6	10.5	41.0	59.0	2.64	66.0

#### 4) 여가생활 불만족 사유와 가족돌봄 연관도

전반적 여가생활에 불만족한 주된 이유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과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2%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특히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77.0%가 연관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족돌봄으로 인해 여가생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대상별로는 '비속(자녀/손자녀)'에서 연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4.4%로 높았으나, 대상별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 4-12] 여가생활 불만족과 가족돌봄 연관도



<표 4-23> 여가생활 불만족 사유와 가족돌봄 연관도

(Base : 전체, N=1,000, Unit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82)	54.2	45.8	
가족돌봄 해당 여부	있음	(187)	77.0	23.0
	없음	(195)	32.3	67.7
돌봄대상	비속	(64)	84.4	15.6
	존속	(117)	76.9	23.1
	형제자매/배우자	(43)	81.4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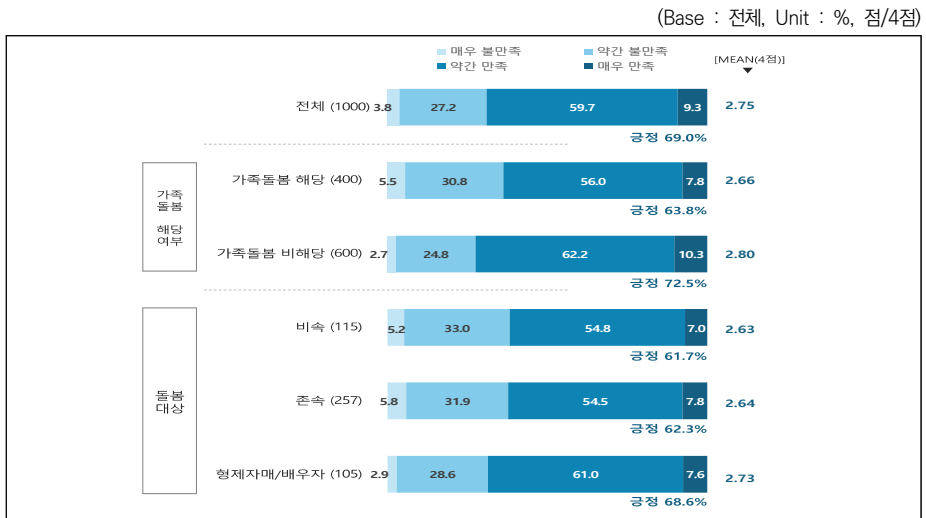
### 3. 자기돌봄 수준

#### 가. 인간관계 전반적 만족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의 전반적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만족하는 편(약간 만족+매우 만족)'이 69.0%로, '불만족 하는 편(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31.0%) 대비 높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인간관계 만족 긍정 비율(63.8%)은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72.5%) 대비 낮았으며, 특히 돌봄대상이 '비속(자녀/손자녀)'(61.7%), '존속(부모/조부모)'(62.3%)에서 긍정비율이 낮았다.

[그림 4-13] 인간관계 전반적 만족도\_가족돌봄 해당여부 및 돌봄 대상별



<표 4-24> 인간관계 전반적 만족도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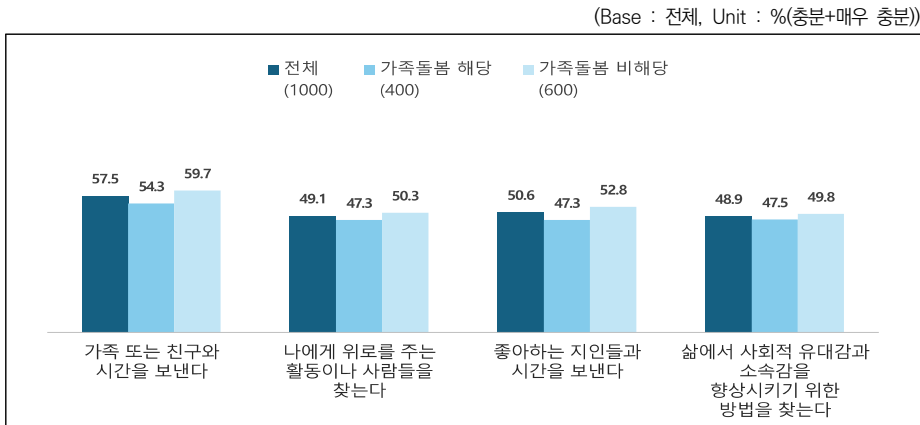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간관계 전반적 만족도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전체	(1000)	3.8	27.2	59.7	9.3	31.0	69.0	2.75	68.6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5.5	30.8	56.0	7.8	36.3	63.8	2.66	66.5
	없음	(600)	2.7	24.8	62.2	10.3	27.5	72.5	2.80	70.0
돌봄대상	비속	(115)	5.2	33.0	54.8	7.0	38.3	61.7	2.63	65.9
	존속	(257)	5.8	31.9	54.5	7.8	37.7	62.3	2.64	66.1
	형제자매/배우자	(105)	2.9	28.6	61.0	7.6	31.4	68.6	2.73	68.3

## 나. 사회적 관계 맺기 충분도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충분한 편(매우 충분+충분)’이라는 의견이 50% 내외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그 중 ‘가족 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57.5%)와 ‘좋아하는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다’(50.6)%가 과반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활동이나 사람들을 찾는다’(49.1%), ‘삶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48.9%)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 대비 사회적 관계 맺기 충분도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나에게 위로를 주는 활동이나 사람들을 찾는다’, ‘좋아하는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다’(각각 47.3%)에 대한 충분도 인식이 낮았다.

[그림 4-14]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



<표 4-25>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_가족 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가족 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부족한 편	충분한 편		
<b>전체</b>	<b>(1000)</b>	<b>4.7</b>	<b>37.8</b>	<b>48.2</b>	<b>9.3</b>	<b>42.5</b>	<b>57.5</b>	<b>2.62</b>	<b>65.5</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5.8	40.0	46.3	8.0	45.8	54.3	2.57	64.1
	없음 (600)	4.0	36.3	49.5	10.2	40.3	59.7	2.66	66.5
돌봄대상	비속 (115)	7.8	36.5	46.1	9.6	44.3	55.7	2.57	64.3
	존속 (257)	5.1	41.2	45.1	8.6	46.3	53.7	2.57	64.3
	형제자매/배우자 (105)	2.9	40.0	48.6	8.6	42.9	57.1	2.63	65.7

〈표 4-26〉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_나에게 위로를 주는 활동이나 사람들을 찾는다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나에게 위로를 주는 활동이나 사람들을 찾는다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부족한 편	충분한 편		
<b>전체</b>	<b>(1000)</b>	<b>8.0</b>	<b>42.9</b>	<b>42.7</b>	<b>6.4</b>	<b>50.9</b>	<b>49.1</b>	<b>2.48</b>	<b>61.9</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9.5	43.3	40.3	7.0	52.8	47.3	2.45	61.2
	없음 (600)	7.0	42.7	44.3	6.0	49.7	50.3	2.49	62.3
돌봄대상	비속 (115)	12.2	42.6	39.1	6.1	54.8	45.2	2.39	59.8
	존속 (257)	9.3	46.3	36.2	8.2	55.6	44.4	2.43	60.8
	형제자매/배우자 (105)	3.8	32.4	54.3	9.5	36.2	63.8	2.70	67.4

〈표 4-27〉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_좋아하는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다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좋아하는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다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부족한 편	충분한 편		
<b>전체</b>	<b>(1000)</b>	<b>9.4</b>	<b>40.0</b>	<b>42.5</b>	<b>8.1</b>	<b>49.4</b>	<b>50.6</b>	<b>2.49</b>	<b>62.3</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14.5	38.3	40.0	7.3	52.8	47.3	2.40	60.0
	없음 (600)	6.0	41.2	44.2	8.7	47.2	52.8	2.56	63.9
돌봄대상	비속 (115)	13.9	38.3	40.9	7.0	52.2	47.8	2.41	60.2
	존속 (257)	16.7	40.1	35.4	7.8	56.8	43.2	2.34	58.6
	형제자매/배우자 (105)	7.6	35.2	47.6	9.5	42.9	57.1	2.59	64.8

〈표 4-28〉 사회적 관계맺기 충분도\_삶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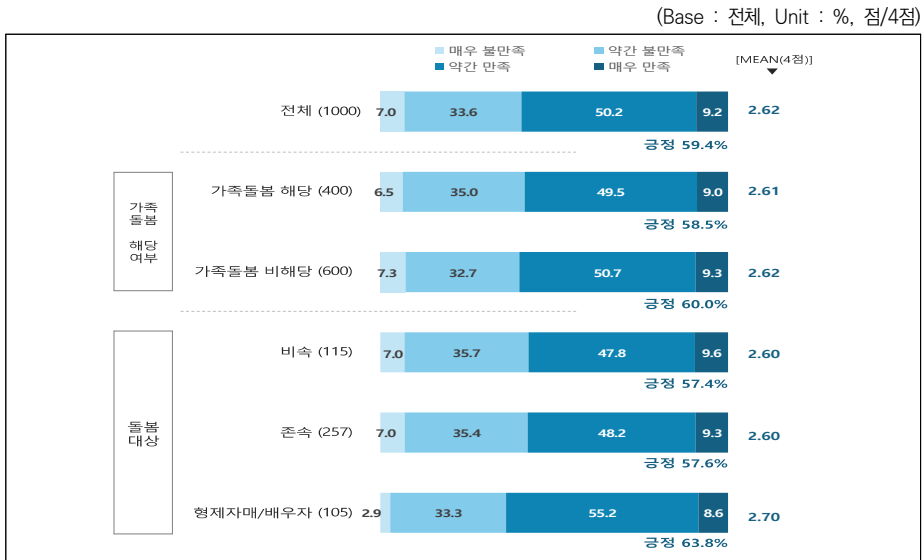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삶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부족	부족	충분	매우 충분	부족한 편	충분한 편		
<b>전체</b>	<b>(1000)</b>	<b>8.9</b>	<b>42.2</b>	<b>41.7</b>	<b>7.2</b>	<b>51.1</b>	<b>48.9</b>	<b>2.47</b>	<b>61.8</b>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9.8	42.8	38.8	8.8	52.5	47.5	2.47	61.6
	없음 (600)	8.3	41.8	43.7	6.2	50.2	49.8	2.48	61.9
돌봄대상	비속 (115)	9.6	41.7	35.7	13.0	51.3	48.7	2.52	63.0
	존속 (257)	10.5	44.0	37.4	8.2	54.5	45.5	2.43	60.8
	형제자매/배우자 (105)	5.7	37.1	42.9	14.3	42.9	57.1	2.66	66.4

## 다. 삶의 만족도와 자기돌봄 연관도

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삶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매우 만족+약간 만족)’이 59.4%로 ‘불만족하는 편(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40.6%)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58.5%)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60%) 대비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돌봄 대상별로는 비속 ‘비속(자녀/손자녀)’(57.4%), ‘존속(부모/조부모)’(57.6%), ‘형제자매/배우자’(63.8%) 순으로 만족 수준이 낮았다.

[그림 4-15] 현재 삶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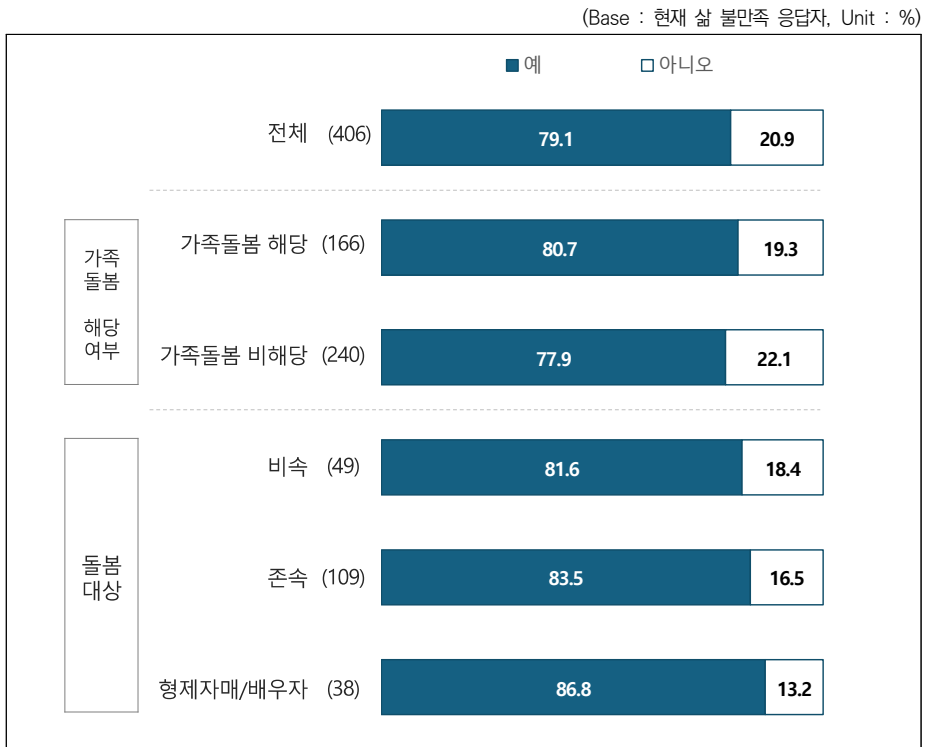
<표 4-29> 현재 삶 만족도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삶의 만족도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하는 편	만족 하는 편			
전체	(1000)	7.0	33.6	50.2	9.2	40.6	59.4	2.62	65.4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6.5	35.0	49.5	9.0	41.5	58.5	2.61	65.3
	없음	(600)	7.3	32.7	50.7	9.3	40.0	60.0	2.62	65.5
돌봄대상	비속	(115)	7.0	35.7	47.8	9.6	42.6	57.4	2.60	65.0
	존속	(257)	7.0	35.4	48.2	9.3	42.4	57.6	2.60	65.0
	형제자매/배우자	(105)	2.9	33.3	55.2	8.6	36.2	63.8	2.70	67.4

현재 삶에 불만족한 주된 이유와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1%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돌봄을 하고있는 응답자가 80.7%로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77.9%) 대비 연관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그림 4-16] 현재 삶의 불만족 사유와 자기돌봄 연관도



〈표 4-30〉 현재 삶의 불만족 사유와 자기돌봄 연관도

(Base : 현재 삶 불만족 응답자, N=406, Unit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406)	79.1	20.9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166)	80.7	19.3
	없음 (240)	77.9	22.1
돌봄대상	비속 (49)	81.6	18.4
	존속 (109)	83.5	16.5
	형제자매/배우자 (38)	86.8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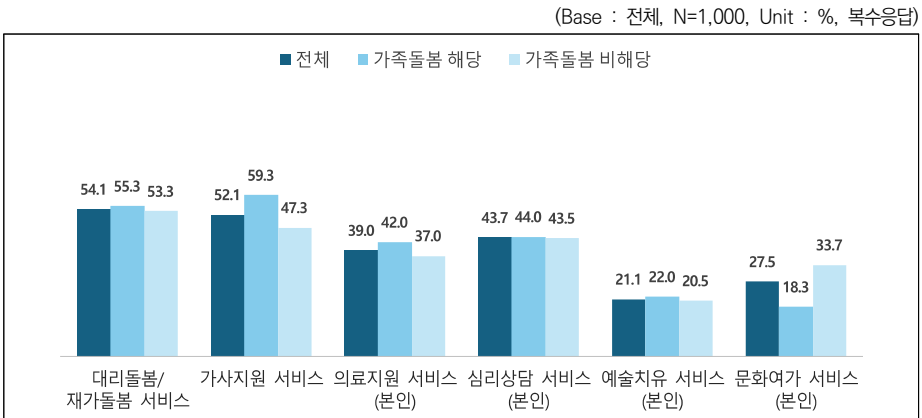
## 4.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

### 가. 정책지원 인지

현재 알고 있는 정책지원의 종류로는 ‘대리돌봄/재가돌봄 서비스’가 54.1%로 가장 높았으며, ‘가사지원 서비스’(52.1%), ‘심리상담 서비스(본인)’(43.7%), ‘의료지원 서비스(본인)’(39%), ‘문화여가 서비스(본인)’(27.5%), ‘예술치유 서비스(본인)’(21.1%)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족돌봄 여부에 따른 응답차이가 크지 않지만,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가사지원 서비스’(59.3%)를,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문화여가 서비스(본인)’(33.7%)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응답자 대비 차이가 있게 높았다.

[그림 4-17] 알고 있는 정책지원의 종류



<표 4-31> 알고 있는 정책지원의 종류

(Base : 전체, N=1,000, Unit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대리돌봄/재가돌봄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의료지원 서비스(본인)	심리상담 서비스(본인)	예술치유 서비스(본인)	문화여가 서비스(본인)	
전체	(1000)	54.1	52.1	39.0	43.7	21.1	27.5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55.3	59.3	42.0	44.0	22.0	18.3
	없음	(600)	53.3	47.3	37.0	43.5	20.5	33.7
돌봄대상	비속	(115)	53.9	59.1	36.5	45.2	22.6	13.0
	존속	(257)	57.2	61.9	41.6	45.9	24.5	21.0
	형제자매/배우자	(105)	44.8	52.4	47.6	49.5	23.8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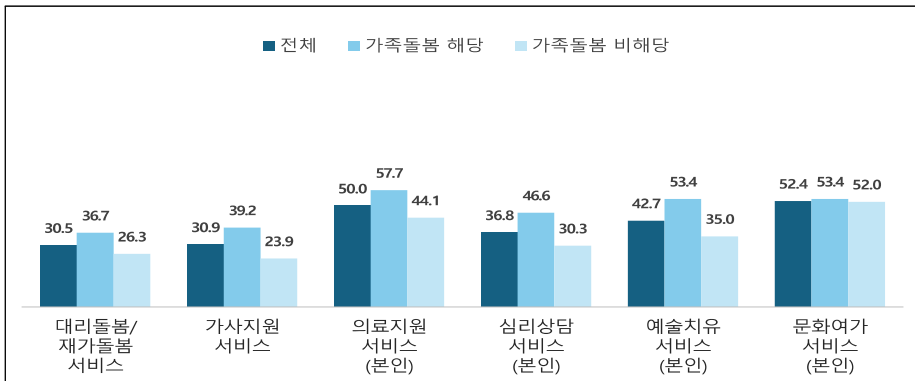
## 나. 정책지원 이용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에 대해서는 ‘문화여가 서비스(본인)’의 이용이 ‘원활한 편(매우 원활+원활)’이라는 의견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지원 서비스(본인)’가 ‘원활한 편’이라는 의견도 50.0%로 응답자의 과반 수준이었다. 반면, ‘대리돌봄/재가돌봄 서비스’(30.5%), ‘가사지원 서비스’(30.9%), ‘심리상담 서비스(본인)’(36.8%), ‘예술치유 서비스(본인)’(42.7%)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족돌봄 해당여부별로 살펴보면, ‘문화여가 서비스(본인)’는 가족돌봄과 관계없이 정책지원 이용이 원활한 편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타 서비스의 경우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비돌봄자 대비 정책지원 이용이 원활한 편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8]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

(Base :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정책지원, Unit : %(원활하다+매우 원활하다))



〈표 4-32〉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대리돌봄/재가돌봄 서비스

(Base : 알고 있는 정책지원 ‘대리돌봄/재가돌봄 서비스’ 응답자, N=541,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대리돌봄/재가돌봄 서비스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원할하지 않다	원할하지 않다	원활하다	매우 원활하다	원활하지 않은 편	원활한 편			
전체	(541)	27.7	41.8	27.4	3.1	69.5	30.5	2.06	51.5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221)	17.2	46.2	32.6	4.1	63.3	36.7	2.24	55.9
	없음	(320)	35.0	38.8	23.8	2.5	73.8	26.3	1.94	48.4
돌봄대상	비속	(62)	19.4	53.2	22.6	4.8	72.6	27.4	2.13	53.2
	존속	(147)	16.3	46.3	33.3	4.1	62.6	37.4	2.25	56.3
	형제자매/배우자	(47)	6.4	51.1	34.0	8.5	57.4	42.6	2.45	61.2

〈표 4-33〉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가사지원 서비스

(Base : 알고 있는 정책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응답자, N=521,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가사지원 서비스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원할하지 않다	원할하지 않다	원할하다	매우 원할하다	원할하지 않은 편	원할한 편			
전체	(521)	26.7	42.4	26.5	4.4	69.1	30.9	2.09	52.2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237)	15.6	45.1	31.6	7.6	60.8	39.2	2.31	57.8
	없음	(284)	35.9	40.1	22.2	1.8	76.1	23.9	1.90	47.4
돌봄대상	비속	(68)	13.2	48.5	27.9	10.3	61.8	38.2	2.35	58.8
	존속	(159)	18.2	42.8	33.3	5.7	61.0	39.0	2.26	56.6
	형제자매/배우자	(55)	1.8	49.1	32.7	16.4	50.9	49.1	2.64	65.9

〈표 4-34〉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의료지원 서비스(본인) : 약물 치료

(Base : 알고 있는 정책지원 '약물 치료' 응답자, N=39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의료지원 서비스(본인)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원할하지 않다	원할하지 않다	원할하다	매우 원할하다	원할하지 않은 편	원할한 편			
전체	(390)	16.7	33.3	43.1	6.9	50.0	50.0	2.40	60.1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168)	7.7	34.5	48.8	8.9	42.3	57.7	2.59	64.7
	없음	(222)	23.4	32.4	38.7	5.4	55.9	44.1	2.26	56.5
돌봄대상	비속	(42)	11.9	28.6	50.0	9.5	40.5	59.5	2.57	64.3
	존속	(107)	7.5	35.5	48.6	8.4	43.0	57.0	2.58	64.5
	형제자매/배우자	(50)	2.0	32.0	56.0	10.0	34.0	66.0	2.74	68.5

〈표 4-35〉 정책지원별 이용 원할도\_심리상담 서비스(본인) : 언어적 소통

(Base : 알고 있는 정책지원 '심리상담 서비스(본인)' 응답자, N=437,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심리상담 서비스(본인)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원할하지 않다	원할하지 않다	원할하다	매우 원할하다	원할하지 않은 편	원할한 편			
전체	(437)	19.5	43.7	31.4	5.5	63.2	36.8	2.23	55.7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176)	12.5	40.9	36.9	9.7	53.4	46.6	2.44	60.9
	없음	(261)	24.1	45.6	27.6	2.7	69.7	30.3	2.09	52.2
돌봄대상	비속	(52)	11.5	34.6	38.5	15.4	46.2	53.8	2.58	64.4
	존속	(118)	11.9	44.1	34.7	9.3	55.9	44.1	2.42	60.4
	형제자매/배우자	(52)	5.8	32.7	48.1	13.5	38.5	61.5	2.69	67.3

〈표 4-36〉 정책지원별 이용 원활동\_예술치유 서비스(본인) : 미술, 음악, 춤 무용 등으로 소통

(Base : 알고 있는 정책지원 '예술치유 서비스(본인)' 응답자, N=211,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예술치유 서비스(본인)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다	매우 원활하다	원활하지 않은 편	원활한 편			
전체	(211)	18.0	39.3	34.6	8.1	57.3	42.7	2.33	58.2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88)	12.5	34.1	40.9	12.5	46.6	53.4	2.53	63.4
	없음	(123)	22.0	43.1	30.1	4.9	65.0	35.0	2.18	54.5
돌봄대상	비속	(26)	7.7	34.6	34.6	23.1	42.3	57.7	2.73	68.3
	존속	(63)	15.9	30.2	44.4	9.5	46.0	54.0	2.48	61.9
	형제자매/배우자	(25)	0.0	28.0	52.0	20.0	28.0	72.0	2.92	73.0

〈표 4-37〉 정책지원별 이용 원활동\_문화여가 서비스(본인) :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창작 참여 등

(Base : 알고 있는 정책지원 '문화여가 서비스(본인)' 응답자, N=275,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문화여가 서비스(본인)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다	매우 원활하다	원활하지 않은 편	원활한 편			
전체	(275)	10.5	37.1	44.7	7.6	47.6	52.4	2.49	62.4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73)	11.0	35.6	46.6	6.8	46.6	53.4	2.49	62.3
	없음	(202)	10.4	37.6	44.1	7.9	48.0	52.0	2.50	62.4
돌봄대상	비속	(15)	20.0	33.3	46.7	0.0	53.3	46.7	2.27	56.7
	존속	(54)	13.0	37.0	40.7	9.3	50.0	50.0	2.46	61.6
	형제자매/배우자	(12)	0.0	33.3	58.3	8.3	33.3	66.7	2.75	68.8

예술치유 서비스(본인)와 문화여가서비스(본인)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대체로 시간적 제약에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고, 서비스/프로그램 부족, 정보 및 홍보 부족, 경제적 제약 등의 이유가 확인되었다.

〈표 4-38〉 예술치유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개방형 응답)

(Base : 예술치유 서비스 이용 '원활하지 않음' 응답자, N=121, Unit : 명, 복수응답)

구분	세부내용	가족돌봄 해당	가족돌봄 비해당
시간적 제약	근로시간 과다, 가사부담, 육아-간병 부담	17	17
경제적 제약	절대적 궁핍,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8	9
심리적 제약	업무 피로도, 일상 피로도 높음	0	1
정보 및 홍보 부족	홍보 부족, 충분한 정보 없음, 잘 알지 못함	5	1
서비스/프로그램 부족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음, 접근성이 낮음	13	27
필요성 부족 및 관심 결여	필요성을 못 느낌, 관심 부족	1	18
제도적/대상 조건 제한	지원대상이 아님	1	13

〈표 4-39〉 문화여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개방형 응답)

(Base :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원활하지 않음' 응답자, N=131, Unit : 명, 복수응답)

구분	세부내용	가족돌봄 해당	가족돌봄 비해당
시간적 제약	근로시간 과다, 가사부담, 육아·간병 부담	13	36
경제적 제약	절대적 궁핍, 비유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4	10
심리적 제약	업무 피로도, 일상 피로도 높음	2	3
정보 및 홍보 부족	홍보 부족, 충분한 정보 없음, 잘 알지 못함	5	19
서비스/프로그램 부족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음, 접근성이 낮음	10	29
필요성 부족 및 관심 결여	필요성을 못 느낌, 관심 부족	1	4
제도적/대상 조건 제한	지원대상이 아님	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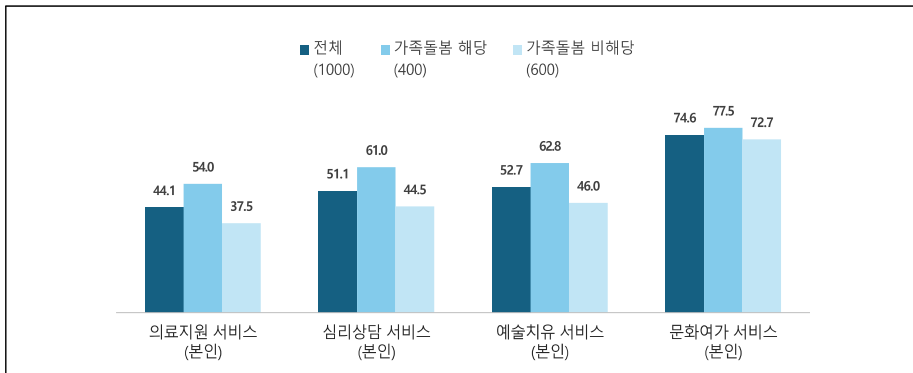
#### 다. 정책지원 필요성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문화여가 서비스(본인)'가 '필요한 편(매우 필요+필요)'이라는 의견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예술치유 서비스(본인)'(52.7%), '심리상담 서비스(본인)'(51.1%), '의료지원 서비스(본인)'(4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족돌봄 여부에 따른 응답차이가 크지 않지만,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의료지원 서비스(본인)', '심리상담 서비스(본인)', '예술치유 서비스(본인)' 관련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 응답자 대비 차이가 있게 높았다.

[그림 4-19]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가족돌봄 해당여부별

(Base : 전체, Unit :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표 4-40〉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의료지원 서비스(본인) : 약물 치료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의료지원 서비스(본인)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전체	(1000)	19.3	36.6	36.1	8.0	55.9	44.1	2.33	58.2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10.3	35.8	43.8	10.3	46.0	54.0	2.54	63.5
	없음	(600)	25.3	37.2	31.0	6.5	62.5	37.5	2.19	54.7
돌봄대상	비속	(115)	13.9	35.7	40.9	9.6	49.6	50.4	2.46	61.5
	존속	(257)	9.7	35.4	44.7	10.1	45.1	54.9	2.55	63.8
	형제자매/배우자	(105)	1.9	29.5	55.2	13.3	31.4	68.6	2.80	70.0

〈표 4-41〉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심리상담 서비스(본인) : 언어적 소통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심리상담 서비스(본인)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전체	(1000)	16.4	32.5	40.8	10.3	48.9	51.1	2.45	61.3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8.5	30.5	47.8	13.3	39.0	61.0	2.66	66.4
	없음	(600)	21.7	33.8	36.2	8.3	55.5	44.5	2.31	57.8
돌봄대상	비속	(115)	10.4	27.0	45.2	17.4	37.4	62.6	2.70	67.4
	존속	(257)	7.0	30.0	49.4	13.6	37.0	63.0	2.70	67.4
	형제자매/배우자	(105)	3.8	28.6	51.4	16.2	32.4	67.6	2.80	70.0

〈표 4-42〉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예술치유 서비스(본인) : 미술, 음악, 춤·무용 등으로 소통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예술치유 서비스(본인)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전체	(1000)	14.2	33.1	43.2	9.5	47.3	52.7	2.48	62.0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7.3	30.0	49.5	13.3	37.3	62.8	2.69	67.2
	없음	(600)	18.8	35.2	39.0	7.0	54.0	46.0	2.34	58.5
돌봄대상	비속	(115)	9.6	26.1	49.6	14.8	35.7	64.3	2.70	67.4
	존속	(257)	6.2	29.2	50.6	14.0	35.4	64.6	2.72	68.1
	형제자매/배우자	(105)	2.9	22.9	61.9	12.4	25.7	74.3	2.84	71.0

〈표 4-43〉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_문화여가 서비스(본인) :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창작 참여 등

(Base : 전체, N=1,000, Unit : %, 점/4점, 점/100점)

구분	사례수	문화여가 서비스(본인)				종합 결과		평균 : (4점)	평균 : (100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편	필요한 편		
전체	(1000)	7.0	18.4	58.2	16.4	25.4	74.6	2.84	71.0
가족돌봄 해당여부	있음 (400)	3.3	19.3	59.3	18.3	22.5	77.5	2.93	73.1
	없음 (600)	9.5	17.8	57.5	15.2	27.3	72.7	2.78	69.6
돌봄대상	비속 (115)	5.2	13.9	60.0	20.9	19.1	80.9	2.97	74.1
	존속 (257)	2.7	20.2	58.0	19.1	23.0	77.0	2.93	73.3
	형제자매/배우자 (105)	0.0	20.0	60.0	20.0	20.0	80.0	3.00	75.0

### 라. 문화정책에서 돌봄관련 정책서비스 요구

문화정책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책서비스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가족참여형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 지원, 돌봄맞춤형 문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정신·심리돌봄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표 4-44〉 문화정책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책서비스(개방형 응답)

(Base : 전체, N=1,000, Unit : 명)

구분	세부내용	가족돌봄 해당	가족돌봄 비해당
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가사돌봄, 육아돌봄, 긴급 돌봄 등	109	131
정신·심리돌봄 강화	예술치유, 미술·음악·춤 치유, 명상 및 상담 등	25	34
문화 예술향유 및 체험 지원	가족참여형 서비스, 문화예술 관람지원 등	68	98
돌봄맞춤형 문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이동편의 인프라, 찾아가는 서비스 동행지원	66	87
관광 휴식공간 및 프로그램	휴게쉼터, 힐링 공간 조성, 1박 이상 휴식 재충전	1	1
무응답/없음/모름	무응답, 없음, 모름	131	249

## 제3절 조사결과 시사점

본 설문조사는 문화분야 돌봄정책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돌봄부담, 문화여가생활, 자기돌봄,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와 관련한 현황과 인식을 질의하였다. 주요 조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가. 돌봄 부담, 돌봄 제공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

돌봄시간은 평일보다 휴일에 많이 소요되고, 돌봄 부담이 돌봄 제공자의 일상생활과 미래에 대한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일 평균 4.2시간, 휴일 평균 6.3시간으로 평일대비 휴일에 돌봄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 돌봄으로 인한 현재 일상 유지 및 미래 계획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는 ‘어렵다(매우 어렵다+어렵다)’는 의견이 64.8%로, ‘어렵지 않다(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35.3%) 대비 높게 분석되었다.

### 나. 아동돌봄, 돌봄시간 부담 가중

아동(자녀나 손자녀)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은 주로 양육 및 교육에 해당되는데, 노인이나 형제·자매·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사나 간병, 일상돌봄 대비 돌봄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자녀/손자녀 등 비속 관계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평균 평일 6.3시간, 휴일 9.5시간), 다음으로 형제자매/배우자(평균 평일 5.3시간, 휴일 7.1시간), 부모/조부모 등 존속(평균 평일 3.3시간, 휴일 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속(자녀/손자녀)을 돌보는 경우 휴일에 ‘10시간 이상’ 돌봄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다. 돌봄 제공자, 낮은 여가활동 참여·만족, 여가시간 부족과 돌봄부담 원인

조사에서 제시한 여가활동의 유형(문화예술관람, 영화관람, 독서, TV시청, 모바일 콘텐츠 및 OTT 시청, 게임, 휴식, 기타) 모두에서 가족돌봄자가 비돌봄자 대비 여가활동별 참여도·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시간 부족과 돌봄으로 인한 피로도를 주요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여가에 소요한 하루 평균 시간은 가족돌봄이 있는 경우(평균 평일 3.2시간, 주말 4.4시간)가 가족돌봄이 없는 경우(평균 평일 3.4시간, 주말 6.6시간) 보다 여가시간이 적었다. 돌봄 대상별로는 평일에는 부모/조부모 존속관계의 여가시간(평균 3.1시간), 휴일에는 자녀/손자녀와 같은 비속관계의 여가시간(평균 4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자 77%가 전반적 여가생활에 불만족한 주된 이유에 대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과 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라. 돌봄 제공자, 낮은 자기돌봄 수준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맺기의 충분도, 현재 삶 만족도 모두 가족돌봄자가 비돌봄자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 삶에 불만족한 주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의 전반적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인간관계 만족 긍정 비율(63.8%)은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72.5%) 대비 낮았다. 특히 돌봄대상이 '비속(자녀/손자녀)'(61.7%), '존속(부모/조부모)'(62.3%)에서 긍정비율이 낮았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맺기에 대해 확인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 대비 사회적 관계 맺기 충분도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세부 문항에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 활동이나 사람들을 찾는다', '좋아하는 지인들과 시간을 보낸다'(각각 47.3%)에 대한 충분도 인식이 가족 돌봄자에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58.5%)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응답자(60%) 대비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돌봄 대상별로는 비속 '비속(자녀/손자녀)'(57.4%), '존속(부모/조부모)'(57.6%), '형제자매/배우자'(63.8%) 순으로 만족 수준이 낮았다. 현재 삶에 불만족한 주된 이유와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1%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돌봄자 80.7%로 비돌봄자(77.9%) 대비 연관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 마. 문화여가 서비스 정책지원 요구, 문화정책과 복지·의료적 돌봄 결합 요구

‘문화여가 서비스(본인)’는 돌봄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타 정책지원 서비스(대리돌봄 및 재가돌봄, 가사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예술치유) 대비 지원이 원활하다고 인지하면서 정책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정책지원별 이용 원활도에 대해서는 ‘문화여가 서비스(본인)’는 가족돌봄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지원 이용이 원활한 편(전체 52.4%, 가족돌봄자 53.4%, 비돌봄자 52%)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타 서비스(대리돌봄 및 재가돌봄, 가사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예술치유)의 경우 가족돌봄자가 비돌봄자 대비 정책지원 이용이 원활한 편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예술치유 서비스(본인)와 문화여가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는 대체로 시간적 제약에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고, 서비스/프로그램 부족, 정보 및 홍보 부족, 경제적 제약 등의 이유가 확인되었다. 정책지원별 필요 정도 역시 ‘문화여가 서비스(본인)’가 가족돌봄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편(전체 74.6%, 가족돌봄자 77.5%, 비돌봄자 72.7%)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타 서비스(의료지원, 심리상담, 예술치유)의 경우 가족돌봄자가 비돌봄자 대비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차이가 있게 높았다.

한편 문화정책에서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 돌봄서비스와의 결합에 대한 현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문화정책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책서비스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응답된 돌봄서비스라 함은 노인돌봄, 가사돌봄, 육아돌봄, 긴급돌봄과 같이 복지와 의료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이외에 가족참여형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 지원, 돌봄맞춤형 문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정신·심리돌봄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제5장

## 문화분야 돌봄정책 전망과 과제



# 제1절 문화서비스 욕구와 돌봄 전망

앞서 2장에서는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영역 특징으로 욕구에 기반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복지 정책과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밝혔고, 4장의 문화분야 돌봄정책 수요조사(설문조사)에서는 타 정책서비스 대비 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 요구가 높은 점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2차데이터를 통해 문화서비스 이용욕구 변화를 살펴보고, 출생부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를 때까지 문화서비스 돌봄 필요성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문화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

### 가. 문화소비의 확대

문화소비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각 가구가 실제로 문화활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변화이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계소비 지출을 12가지 비목 중 하나인 오락문화 지출 자료는 한 가구가 제한된 가계예산에서 문화소비 지출 패턴을 보여주는데,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액은 명목금액 기준으로 2006년 92,961원에서 2024년 216,475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약 1.76배)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문화소비가 다른 소비 부문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음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해야 할 지표는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문화여가지출률’이다. 이 비율은 2006년 4.16%에서 2024년 5.51%로 상승했다. 이는 문화소비의 증가가 단순히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한정된 가계 예산 내에서 문화소비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8년 5.76%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5%대를 유지하는 것

은 문화소비가 가계의 고정적인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표 5-1〉 문화여가 지출액과 지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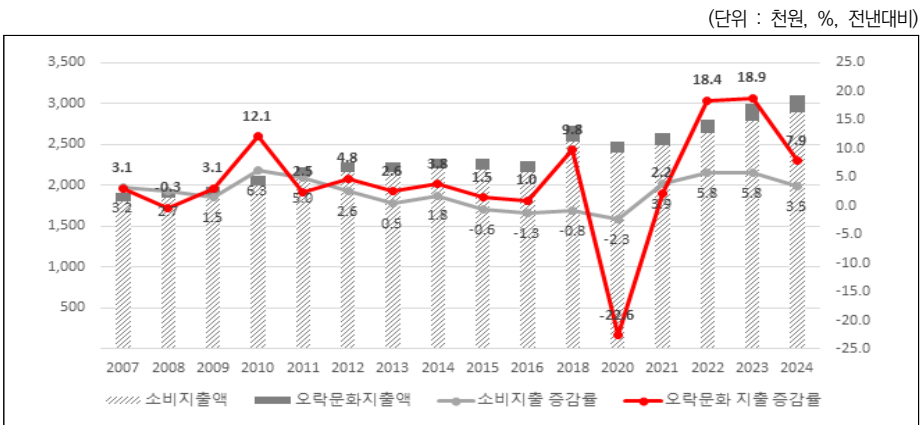
(단위: %,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문화여가지출률	4.16	4.13	4.00	4.04	4.25	4.13	4.20	4.28	4.35	4.44
가계지출액	2,232,225	2,320,137	2,387,917	2,437,279	2,597,709	2,738,529	2,825,615	2,846,644	2,901,814	2,886,649
오락문화비	92,961	95,828	95,517	98,501	110,427	113,174	118,631	121,720	126,351	128,26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화여가지출률	4.53	5.27	5.76	5.41	4.31	4.23	4.70	5.27	5.51	
가계지출액	2,857,967	3,316,143	3,326,764	3,329,804	3,239,681	3,374,709	3,590,595	3,809,765	3,930,506	
오락문화비	129,494	174,693	191,772	180,301	139,639	142,607	168,837	200,695	216,475	

자료: 통계청(각년도),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2009년을 기점으로 오락문화 지출은 가계소비지출 평균보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년대비 오락문화지출은 7.9% 증가하였고 동기간 전체 가계소비 지출은 평균 3.5%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소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가계지출규모가 성장함을 보여준다.

[그림 5-1] 가계소비지출 중 오락문화지출 추이



주 : 가계동향조사 개편사항을 고려하여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하므로, 전년대비 증감률에 2017년, 2019년은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각년도),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표 5-2〉 가계소비지출 중 오락문화지출 추이

(단위 : 천원, %, 전년대비)

구분	소비지출액	오락문화지출액	소비지출 증감률	오락문화 지출 증감률
2007	1,807	96	3.2	3.1
2008	1,856	96	2.7	-0.3
2009	1,884	99	1.5	3.1
2010	2,002	110	6.3	12.1
2011	2,102	113	5.0	2.5
2012	2,157	119	2.6	4.8
2013	2,167	122	0.5	2.6
2014	2,206	126	1.8	3.8
2015	2,193	128	-0.6	1.5
2016	2,165	129	-1.3	1.0
2018	2,538	192	-0.8	9.8
2020	2,400	140	-2.3	-22.6
2021	2,495	143	3.9	2.2
2022	2,640	169	5.8	18.4
2023	2,792	201	5.8	18.9
2024	2,890	216	3.5	7.9

주 : 가계동향조사 개편사항을 고려하여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하므로, 전년대비 증감률에 2017년, 2019년은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각년도),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문화예술 향유 욕구와 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대표 지표인 ‘문화예술행사를 관람률’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두 조사의 지표 모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사회적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조사 모두 50-60대 이상의 절대적 관람률은 낮은 편이지만 과거대비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사회조사」 중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1990년 33.4%에서 2023년 51.2%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7년 52.4%로 국민 절반 이상이 문화서비스를 누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코로나시기 봉쇄정책으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중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도 2003년 62.4%, 2014년 71.3%, 2019년 81.8%로 꾸준히 증가하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60.5%, 2021년 33.6%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회복하여 2024년 63%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3〉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사회조사) 추이

(단위 : %)

구분	1990	1993	1996	2000	2004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33.4	41.6	39.0	36.3	48.2	52.0	52.4	54.5	60.8	64.5	64.0	63.6	21.3	51.2
연령별	20세 미만	-	-	-	-	-	77.2	77.9	82.6	84.5	86.0	83.8	30.9	72.7
	20-29세	-	-	-	-	-	79.6	78.2	83.4	83.8	83.8	82.8	37.6	70.0
	30-39세	-	-	-	-	-	68.2	70.6	77.2	79.2	78.6	79.8	26.5	63.9
	40-49세	-	-	-	-	-	53.4	58.7	67.4	73.2	73.7	74.4	23.2	62.8
	50-59세	-	-	-	-	-	35.0	41.2	48.1	56.2	58.0	58.9	18.8	50.1
	60세 이상	-	-	-	-	-	13.4	16.6	21.7	28.9	29.1	31.2	7.9	24.2

주 1) 문화예술관람률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문학행사)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표 5-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추이

(단위 : %)

구분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62.4	65.8	67.3	67.2	69.6	71.3	79.3	81.5	81.8	60.5	33.6	58.1	58.6	63.0	
연령별	15~19세	93.2	93.6	89.1	93.5	92.2	94.7	96.7	96.1	96.0	81.0	57.4	74.2	74.8	77.8
	20대	88.3	91.4	93.0	92.6	91.5	96.4	96.1	97.1	97.4	84.3	63.8	90.6	86.6	91.4
	30대	70.2	77.7	80.5	78.5	84.9	86.4	90.5	91.6	91.5	72.0	42.2	81.9	77.2	85.0
	40대	52.7	64.7	67.1	70.1	75.9	76.9	86.6	89.0	89.1	67.1	33.2	68.0	69.5	76.5
	50대	29.9	43.8	46.1	51.3	54.9	55.4	76.0	79.4	80.8	59.5	27.7	53.6	54.6	55.5
	60대	22.3	24.7	26.7	28.6	39.7	39.8	57.9	64.7	64.9	40.6	17.5	30.3	38.0	43.7
	70세이상	22.3	24.7	26.7	28.6	21.0	22.0	41.2	46.9	49.9	20.5	5.6	14.8	19.9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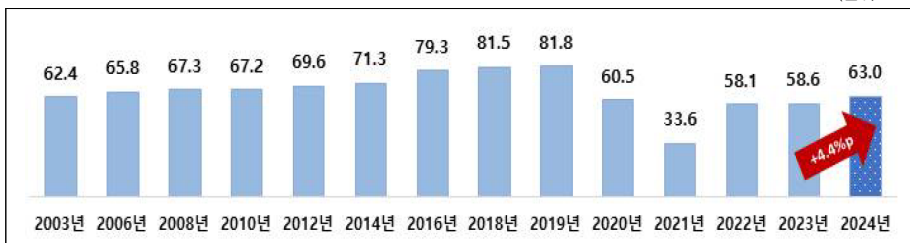
주 1) 문화예술행사관람률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전국민(인구주택총조사) 대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그림 5-2]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추이

(단위 : %)



주 1) 문화예술행사관람률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전국민(인구주택총조사) 대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나. 문화소비 확대 배경과 전망

문화소비가 양적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소득 증가를 넘어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사회적 가치관 변화가 자리한다. 경제적 성장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 사회 변화로 인해 문화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및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가 시간의 증가와 문화 위상 변화라는 두 가지 축은 오늘날 문화소비를 일상적·필수적 영역으로 정착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남는 시간'의 증가가 아니라, 여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노동 이후 잔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사회 전반이 여가를 삶의 중심축으로 두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 1) 여가 시간의 증가

문화 활동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의 확보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히 여가 시간의 절대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인식과 활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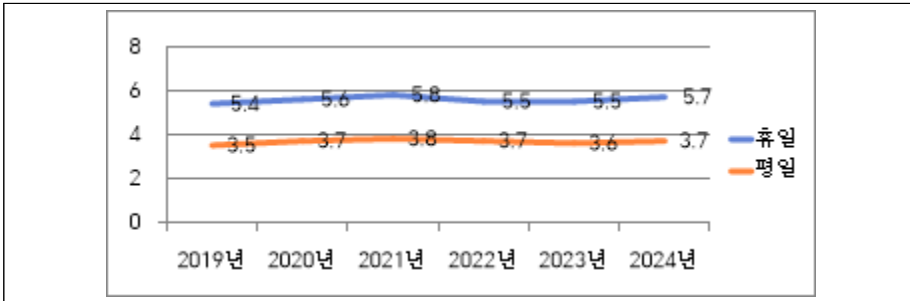
첫째, 여가 시간의 증대는 문화소비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주5일 근무 제도는 2004년 7월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주5일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5일제 도입은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시행 1년이 지난 2005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5일제 시행 이후 숙박업, 항공여객, 여행사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강진구, 2005.10.15.), 가계 지출에서도 교양 오락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평, 2005.6.29.).

주5일제 정착 이후에도 근로 복지와 업무 유연성 확대 등으로 개인의 여가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 3.7시간, 휴일 5.7시간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평일 3.5시간, 주말 5.4시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를 위해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과거의 사회적 분위기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변화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의 조사에서는 국민의 93%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했으며, 희망 근로시간은 주 평균 36.7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여가시간 변화

(단위 : 시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둘째, 여가 활용의 자율성 확대도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다. 「2024년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77.7%로 2018년의 73.7%에 비해 상승하였다. 특히, 여행·여가 목적의 사용 비율이 45.5%로 증가하여, 확보된 시간을 문화와 여가 활동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특정 성수기에 집중된 휴가 사용이 연중 고르게 분산되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보다 자유롭게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 활동이 생활 전반에 스며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확산되는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근로 유연성 확대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주 4.5일제가 정착될 경우, 주중에 확보되는 ‘반나절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새로운 소비·여행 패턴을 만들어 내고 주중 문화 프로그램의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여가시간의 절대량은 여가활동의 내용 구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가시간이 부족할 경우 개인은 단순한 활동 위주의 소극적 여가를 선택하지만, 여가시간이 길게 주어질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몰입적인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박혜련·허식, 2018). 즉 제도적 변화는 곧 시간 자원의 확대가 문화소비 기회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을 촉발한다.

## 2) 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가 성장하면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역시 문화소비 증가를 견인한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화와 경제 발전 초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문화 향유는 상대적으로 사치에 가까운 여가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 과제였던 시기에는 문화예술을 즐긴다는 것이 사회 전반의 우선순위에 오르기 어려웠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나는 정치와 전쟁을 공부해야만 우리 후손들이 미술과 시, 음악, 건축을 공부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sup>17)</sup>,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기반 마련 이후에야 비로소 문화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본질적 요소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은 문화 향유를 ‘여유 있는 계층의 전유물’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전환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두 가지 핵심 요인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첫째, 문화서비스 참여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다. 문화 활동은 오락적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효과를 제공한다. 예술을 접하는 과정은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기 인정의 경험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성 증진에 기여한다(Mastandrea et al., 2019; Spaid & Matthes, 2021).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도 지닌다(An & Youn, 2018; McCarthy et al, 2004).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개인의 삶이 분절화될수록, 사람들은 긴장을 완화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서비스가 지닌 다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었고, 문화소비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종합하면 문화, 예술, 체육 등 활동 등을 통한 심리치유, 마음건강, 고립감 해소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자기돌봄을 위한 문화·돌봄 통합모델 수요

---

17) *“I must study politics and war that my sons may have liberty to study mathematics and philosophy. My sons ought to study mathematics and philosophy, geography, natural history, naval architecture, navigation, commerce and agriculture in order to give their children a right to study painting, poetry, music, architecture, statuary, tapestry, and porcelain.”*

-John Adams, letter to Abigail Adams, May 12, 1780

확대가 전망된다.

최근 주목받는 ‘펀플레이션(Funflation)’ 현상은 물가 상승 이상으로 여가 분야의 가격이 전혀 없이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신형덕 외, 2024). 최근 대형 콘서트 티켓이나 스포츠 관람권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조기 매진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비교적 저렴한 여가 활동인 OTT 관람도 플랫폼들의 줄지은 구독료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즐거움과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에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서라도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디지털 환경의 확산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가속화하며 실제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나아가 미디어와 SNS를 통한 문화경험의 공유는 사회적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개인의 참여 욕구를 강하게 자극한다. 이로써 문화소비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사회적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은 문화소비의 기반을 마련했고, 문화의 다층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디지털 환경의 확산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며 문화 경험의 위상을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 3) 다층화된 문화소의 문제와 문화서비스 이용 욕구 불충족

문화소비가 확대되고 다원화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격차 요인인 지역과 소득의 장벽은 여전히 뚜렷하게 확인된다.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지역별 문화 여건을 표준화한 ‘지역문화지수’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보다, 도시에서 농촌 지역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인구 대비 문화시설 수가 수도권보다 많지만,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전문인력의 확보, 그리고 접근성 문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있음’과 ‘누림’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표 5-5〉 도시-농촌-도농복합형별 지역문화지수 순위(상위 10개)

순위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경기 수원시	1.60	충남 부여군	0.55	경기 용인시	1.11
2	경기 성남시	1.54	충남 홍성군	-0.01	경남 창원시	1.10
3	경기 고양시	1.31	경북 성주군	-0.02	경기 화성시	0.81
4	전북 전주시	1.04	전남 영암군	-0.03	충북 청주시	0.71
5	경기 부천시	0.90	충남 태안군	-0.04	경남 김해시	0.55
6	경기 안양시	0.32	전북 고창군	-0.06	전남 순천시	0.46
7	경기 안산시	0.26	전남 강진군	-0.07	경기 파주시	0.43
8	전남 목포시	0.24	전북 무주군	-0.07	경남 진주시	0.36
9	경기 군포시	0.12	전남 해남군	-0.08	충남 천안시	0.35
10	경기 시흥시	0.10	전남 곡성군	-0.13	충남 공주시	0.34

주: 도시는 하위 행정구역이 동으로 표시된 기초자치단체, 농촌은 읍 또는 면으로 표시된 기초자치단체, 도농복합은 지방자치법 상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시로 구분함. 도시형에서 특별·광역시에 속한 구는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소득 격차 또한 문화 향유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4.0%에 그친 반면, 고소득층은 78.7%에 달했다. 고물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저소득층은 필수재 이외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문화·여가 지출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생활비 비중에서 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표 5-6〉 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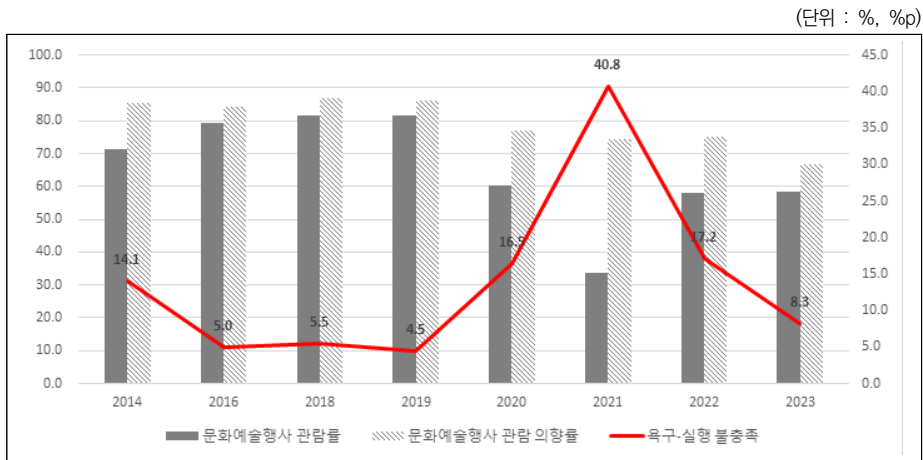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만원 이상
표본수	533	752	1,389	1,827	1,625	1,754	2,223
관람률	24.0	23.3	41.7	55.4	67.2	72.9	78.7
관람 안 함	76.0	76.7	58.3	44.6	32.8	27.1	2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서비스 이용 욕구·실행 불충족 수준은 문화예술행사 관람 욕구(의향률)와 실행(관람률) 간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욕구 불충족은 관측을 시작한 2014년 14.1%p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1년 40.8%p로 극대화되었다가 점차 간극을 줄여

2023년 기준 8.3%p 수준이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2016~2018년 시기 불충족 수준이 통상 5%p 수준이었음을 볼 때, 문화누림 욕구 불충족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4] 문화예술행사 관람 욕구-실행 불충족 수준



- 주 1) 문화예술행사관람률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전국민(인구주택총조사) 대상  
 3) 욕구-실행 불충족 :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률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표 5-7> 문화예술행사 관람 욕구-실행 불충족 수준

구분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예술행사 관람률(B)	71.3	79.3	81.5	81.8	60.5	33.6	58.1	58.6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률(A)	85.4	84.3	87.0	86.3	77.0	74.4	75.3	66.9
욕구-실행 불충족(A-B)	14.1	5.0	5.5	4.5	16.5	40.8	17.2	8.3

## 2. 생애주기별 문화서비스 돌봄 필요성과 전망

### 가. 아동

#### 1) 아동과 양육자의 삶

아동은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 안전한 정서적 환경, 신체적 발달, 사회적 기술 및 관계 강화가 중요한 돌봄 요소로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 자녀를 둔 가정 내 돌봄주체인 부모가 맞벌이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빈번하여 돌봄공백 문제가 늘 함께하고 있다.

영아기(0~2세)는 신체적 성장과 뇌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애착형성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안전한 정서적 환경과 건강 관리, 신체적 발달관리가 요구되며, 애착 형성 실패 시 사회적, 정서적 문제 발생 위험이 커진다. 유아기(3~5세)는 자율성 발달과 기초 사회성 형성 시기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놀이, 관계맺기 등)를 마련하여 사회성 발달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기(6~12세)는 인지 능력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대인관계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학습 지원, 정서 및 행동 관리, 사회적 기술 개발 조성이 중요하다. 청소년기(13~18세)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신체적으로 변화를 겪는 시기로, 정신건강 관리, 의사결정 및 진로 탐색, 사회적 관계 강화가 중요한 돌봄 요소다.

한국의 0~2세 영유아기 돌봄(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나, 3~5세 이용률은 일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며, 초등학교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도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다(김은지, 2024). 교육부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25분이지만, 부모 희망 시간은 8시간 13분으로 돌봄 시간 부족 현상이 지속 중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공백은 특히 심각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오후 1~2시만 하교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가 일하는 시간과 돌봄 필요 시간에 차이가 커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김주리·최혜진·강지원, 2021). 맞벌이 가정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돌봄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방과후 돌봄시설 및 학원 등 대체 돌봄 이용에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아동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아동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놀이 및 여가 권리 제한 등 돌봄과 연계된 아동 건강·교육 문제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아동 돌봄의 경우 주된 아동돌봄 책임자인 부모의 여가시간 부족과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돌봄의 질 저하로 상호 악순환을 겪고 있다. 앞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 아동돌봄은 여타 노인이나 형제·자매·배우자에 대한 돌봄보다 돌봄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여가시간은 현저히 부족하게 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에도 2024년 기준 전국민 여가시간은 5시간 8분인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여가시간은 한부모가구 3시간 56분, 양부모 가구 3시간 41분으로 전국민

보다 자녀돌봄 가정 여가시간이 1시간 이상 적다. 맞벌이 부모 및 주 돌봄자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직장상 가정 생활의 균형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피로, 우울감, 스트레스가 심화되며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극단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따른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아동 돌봄 공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표 5-8〉 전국민과 자녀돌봄 가구 여가시간(2024년 기준)

구분	전국민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구	양부모 가구
□ 여가시간	5:08	3:56	3:41
교제 및 참여	1:00	0:52	0:45
문화 및 관광	0:03	0:02	0:03
미디어 이용	2:43	2:23	2:02
스포츠 및 레포츠	0:35	0:20	0:24
기타	0:47	0:20	0:27

주: 기타는 1. 개인 건강관리,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 2.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3. 게임 및 놀이, 개인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자료: 통계청(2025),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 2) 돌봄정책 변화와 문화서비스 돌봄 필요성

아동 돌봄부담은 한국사회 문제인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초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육자 돌봄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면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하는 ‘아동 중심성’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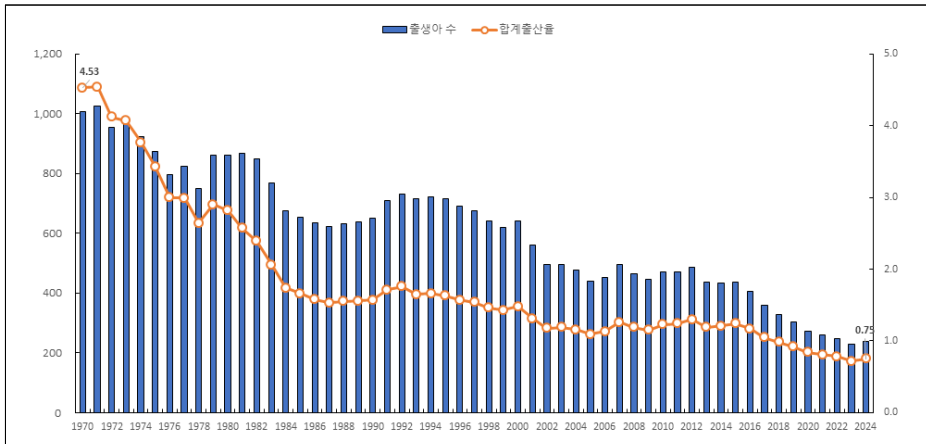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무자녀 남녀의 57.5%가 양육 부담과 비용 등 돌봄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 계획이 없거나 미결정 상태라고 응답했다. 여성 대부분이 출산 후 경제활동 지속 희망에도 돌봄 서비스 이용과 지원이 충분치 않아 출산 및 양육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돌봄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돌봄 시간 부족과 돌보미 인력난, 돌봄 비용 부담이 출산 의사에 큰 걸림돌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이 30대 가구 평균소득의 50%를 넘고, 간병비용 또한 중산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이로 인해 돌봄비용 부담이 출산율 하락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채민석·이수민·이하민, 202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00년 1.4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출산률이 급감하여 2023년 0.72명, 같은 해 4분기 기준으로 0.65명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태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하는 위험한 수치이다.

[그림 5-5]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1970~2024)

(단위 : 1,000명, 기임 여자 1명당 명)



주: 합계출산율은 그 해의 연령별 출산율에 따라 일생 동안 아이를 낳는다면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돌봄 정책이 급격히 확대되어 왔으며, 돌봄정책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공급자 중심과 성인 위주의 서비스 설계에 대한 지적으로 최근에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최우선하는 ‘아동 중심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 의무교육(K-학년제)’ 도입, 무상보육 및 교육적 요소 강화, 아동복지 통합 정책 등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서비스내용과 아동 중심의 통합적 지원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아동 중심성’은 아동을 돌봄, 교육, 복지 정책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여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방식이다. 아동이 단순한 돌봄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아동의 발달 단계와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받아야 하는 주체임을 강조한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정서적 안정, 사회성 향상 측면에서 문화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이 아동의 정서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감정 표현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때문에 학

교 및 돌봄시설에서 돌봄공백을 채우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아동 중심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문화서비스가 대리돌봄의 수단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반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엄마아빠가 행복한 문화프로그램’과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아동과 양육자의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돕고,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적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 중심성이 고려된 가족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비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문화시설을 연계한 돌봄 서비스 보급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나. 청년 및 중장년

### 1) 청년 및 중장년의 삶

청년기는 독립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쌓는 시기로, 학업, 취업, 독립, 사회적 역할 수행 등 인생 전환기에 해당된다. 청년은 진로, 주거 등 인생에 있어 사건과 선택이 집중되는 시기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우울, 불안 등) 발생률이 높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자살생각 경험은 2.9%, 번아웃 경험은 32.2%로 적지 않으며,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가 확인되었다.

이렇듯 청년은 주거 및 고용 불안정, 진로 결정 등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가족 내 돌봄을 책임지는 부담도 상당하다. 돌봄 정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책임은 주로 가족에게 부과되고 있다(장경섭 외,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과의 동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역시 가족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만 추가 급여를 인정한다. 결국 정책은 가족 돌봄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돌봄 청년은 약 1.3~4.75%로 추정되며, 2024년 기준 약 15만~63만 명 규모의 청년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 이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 돌봄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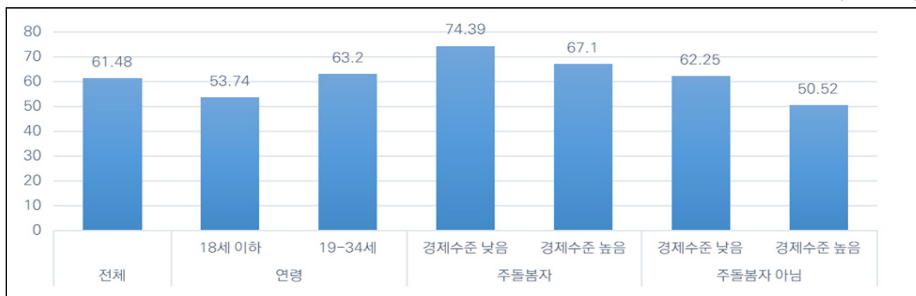
공하며 장기간(평균 46개월) 가족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부담과 우울감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김지선 외, 2023).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은 일반 또래에 비해 가사노동 부담이 더 크고, 그에 따른 피로감도 크다. 음식 준비 등 일상적 가사노동의 빈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노동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비율도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돌봄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더라도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숨은 돌봄자(hidden carer)’의 존재 가능성도 시사되었다.

돌봄 시간 역시 상당하다. 전체적으로 주당 21.6시간을 돌보고 있었으며, 주돌봄자의 경우 32.8시간으로 주중과 주말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돌봄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본인들이 희망하는 돌봄 시간은 평균 14.3시간으로 실제보다 7시간 이상 적었으며, 특히 주돌봄자의 경우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 돌봄 자체를 기피하지는 않지만 과중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우울 수준은 심각했다. 전체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의 61.5%가 우울군에 속했으며, 이는 일반 청년층(8.5%)과 큰 격차를 보였다.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증가했다. 또한 학업, 진로, 미래 계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특히 주돌봄자나 장시간 돌봄 제공자는 학업과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그림 5-6] 가족돌봄청년의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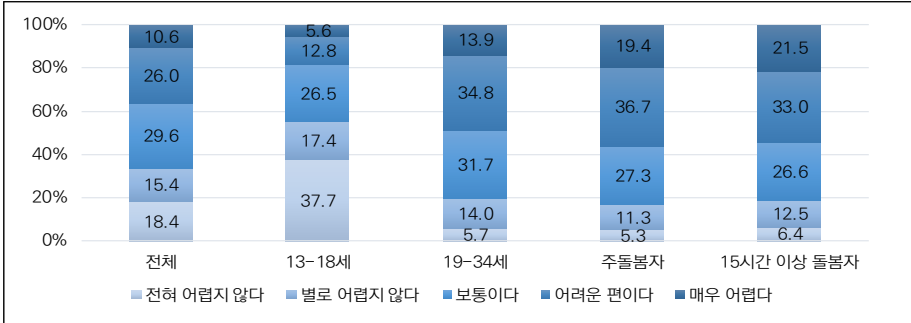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5-7]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 경험

(단위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원자료

중년기에는 자녀 양육의 부담이 사라지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만, 동시에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허무함을 겪기 쉽다. 50~60대 중장년은 위로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돌봄의 부담이 가장 큰 집단으로 이해 되어져 왔으나 현재 중장년 또한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이석환 외, 2022). 고숙자 외(2023)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고독사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고독사의 중점 계층임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2024)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서도 50~60대 남성이 53.9%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고립과 돌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중장년층은 신체적 변화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며, 늘어난 주름이나 흰 머리카락, 성적 능력 감퇴 등 노화 현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이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지며, 체력 저하와 잦은 피로감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증가한다. 또한,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이 변화하며 죽음을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되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불안감을 갖기도 한다(방소연, 2022; 이난영, 2022).

## 2) 돌봄정책 변화와 문화서비스 돌봄 필요성

청년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용·일자리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020년 「청년기본법」이

후 청년 삶 전반의 복합적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어려움은 가려져 왔었으나, 2021년, 아버지를 돌보던 한 청년이 존속 살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계기로 가족 돌봄 청년의 삶이 비로소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신건강 관리에 문화여가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이 겪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자기 돌봄 취약성과 사회참여, 교육, 노동시장 진입 등 기회비용 손실이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가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크게 의존하고 특히 청년에게 그 부담이 다수 전가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돌봄은 의료비나 사회서비스 비용과 같은 직접 지출뿐 아니라 돌봄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한다(Fast, Williamson, and Keating, 1999). 가족돌봄청년의 복지 경험과 욕구를 살펴보면,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 욕구 역시 매우 높다. 전체 가족돌봄청년의 69.9%가 문화여가 휴식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돌봄 지원(61.5%)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돌봄자의 경우 그 비율이 74.9%에 달해, 돌봄 부담이 클수록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회복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화체육활동 지원 경험 비율은 22.8%에 불과해, 욕구와 경험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표 5-9〉 가족돌봄청년의 복지 욕구

(단위 : %, 명)

구분	생계비	돌봄 지원	가사 지원	의료 지원	진로 교육	취업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문화 여가	휴식 지원	사례수
전체	76.6	61.5	56.7	74.0	56.1	59.5	47.5	65.7	<b>69.9</b>	71.4	(810)
주돌봄자	84.3	72.4	68.7	81.8	64.9	67.7	53.6	76.8	<b>74.9</b>	79.6	(319)
주돌봄자 아님	69.9	54.4	48.9	68.8	50.3	54.2	43.6	58.5	<b>66.6</b>	66.0	(49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원자료

박세경 외(2023) 연구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은 일생생활이 피폐해지고 개인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울감 경험을 갖고, 모든 참여자가 심리정서적 문제 호소하였으며, 상당수가 상담 경험 또는 약물 복용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여가 활동은 정서적인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휴식 차원을 넘어, 돌봄 청년의 정신건강 유지와 사회적 고립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은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들이 학업과 사회참여,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여가 활동을 매개로 한 자조모임, 멘토링, 네트워크 활동 등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분야 돌봄 측면에서 주요 과제로 전망된다.

중장년을 돌봄정책에서 관심받기 시작한 것은 돌봄 사각지대와 이중부양(자녀·노부모 부양) 부담, 중장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설계된 ‘일상돌봄 서비스’ 본격화로 볼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은 202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되어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 중인 사업으로, 기존의 돌봄정책이 소득이나 나이, 신체계약 조건이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누구나 돌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용 가능하다. 제공 서비스는 재가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식사뿐만아니라 심리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중장년층이 겪는 다원적 돌봄 수요에 맞춰 단순한 방문간호·가사 지원을 넘어 심리상담, 사회교류, 의료연계, 위기 대처 등 포괄적 서비스 설계하고 있다.

중장년 시기에 겪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이중부양 부담은 박탈지수, 삶의 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위기 대상이다(이석환 외, 2022). 돌봄 욕구 측면에서 중장년 시기는 가족·친구 등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건강관리 및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자기돌봄’ 욕구가 더 두드러진다(송민혜, 2021). 따라서 정서·사회적 지원 및 위기상황 대응이 중장년 대상 돌봄정책의 핵심 과제로 전망된다.

## 다. 노인

### 1) 노인의 삶

한국의 노인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 상실, 가족 해체, 빈곤 등의 문제로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이는 노인 우울증과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11.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1인 가구의 32.8%를 차지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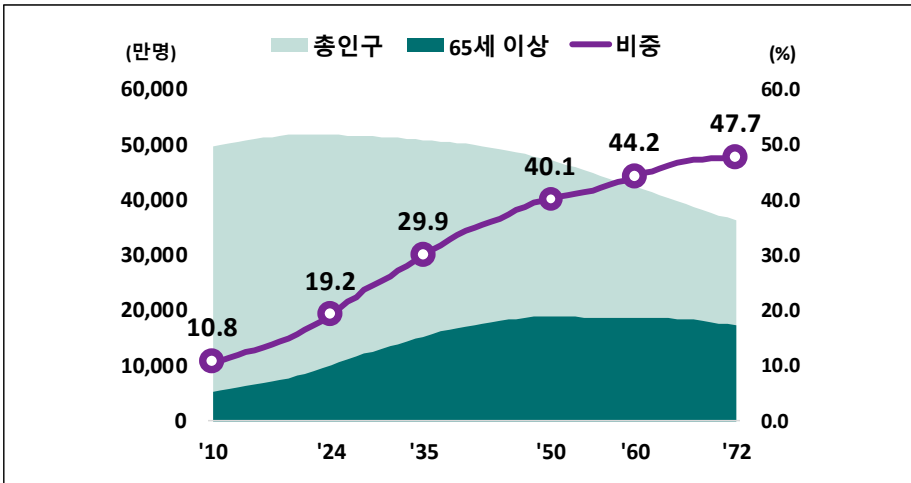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60~70대 노인 세대는 산업화 시대에 ‘절약이 미덕’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장하여, 여가 활동을 ‘소비’로 인식하고 즐기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지식을 전달하던 역할이 상실되면서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노년층의 상황은 사회적·경제적 역할 상실, 가족 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이는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뇌의 신경 세포)가 감소하고, 기억력, 새로운 학습 능력 등이 미미하게 감퇴하며, 척추, 관절, 치아 등의 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강해자, 2012; 이민선, 한기향, 2022).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돌봄 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률은 2024년 말 기준 11.4%로 나타나났으며, 노인 10명 중 1명이 수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돌봄의 양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특히 독거노인은 비공식적 부양 체계가 미약하여 경제적, 건강, 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돌봄정책 변화와 문화서비스 돌봄 필요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정책은 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최근에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보람 있고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보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등을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한 이후 2024년 12월 약 7년 만에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가 되었다(통계청, 2025).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의하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 20%, 2036년에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8]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특히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중심에 자리잡았던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및 노인세대 편입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세대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진다. 제1차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는 광복 및 625전쟁 이후 출생한 세대로 약 705만명이며, 2025년 현재 만62세에서 만70세로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되었다. 제2차 베이비부머세대(1964~1974년생)는 경제개발 및 산업화 시기 출생한 세대로 약 954만명이며, 만 51세에서 만61세 연령대이다. 대규모의 인구가 노인인구로 편입된 이후 돌봄은 돌봄필요 대상자에게 공식 돌봄을 제공하는 현 체제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는 만성질환자 증가, 가족 돌봄 부담 가중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노인의 생활권 내에서 맞춤형 돌봄과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 강화되고 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커뮤니티케어는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층이 당면한 신체적 노화와 사회적 관계 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소외 해소 측면에서 문화서비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및 경제 활동의

부담에서 벗어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고령층은 여가시간의 활용 방식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뚜렷하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크리에이티브 에이징(creative aging)’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즐기며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 고령층의 전체적인 문화예술 관람률은 아직 젊은 세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향후 문화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소비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문화여가적 활동에 익숙하지 못하여 수동적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령층은 외로움과 우울감, 소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생애주기상 쇠퇴하거나 소모적인 단계가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의 창조적 경험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Fisher & Specht, 2000). 실제로 시니어들의 문화 활동 참여는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여 개인의 성공적인 노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 강화, 세대 간 이해 증진, 지역사회 활성화와 같은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정책적으로도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에 문화 강좌, 공연 관람, 여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의 문화서비스 이용에는 물리적·심리적 편의성에 제약이 있어, 이들의 욕구와 생활권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문화예술행사 선택 기준을 분석해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문화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젊은 층이 ‘비용’과 ‘시간 부족’을 꼽는 것과 대조적으로, 70세 이상 고령층은 ‘관심 가는 프로그램 없음(20.1%)’과 ‘가까운 곳에 시설 없음(20.3%)’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 「2023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은퇴 이후 시니어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희망하는 주요 노후활동으로 취미활동(42.9%)과 여행·관광(29.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니어 세대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기획과 생활권 중심의 인프라와 서비스 보급이 문화분야 돌봄 측면에서 주요 과제로 전망된다.

〈표 5-10〉 문화예술행사 선택 기준

(단위 : 명, %)

구분	표본수	문화 예술 행사의 내용 및 수준	접근성 가깝다	참가자 작가 출연진 유명도	관람 비용의 적절성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한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교통의 편의성	행사 개최 장소의 유명도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언론 보도	편의 시설 구비 여부	기타
전체	10,103	26.2	21.3	12.9	11.5	9.6	6.9	4.6	4.5	2.4	0.2
15-19세	500	26.4	12.4	15.8	15.9	10.8	7.1	6.2	3.2	2.0	0.2
20대	1,374	30.6	10.2	13.7	10.4	16.7	6.4	3.4	5.9	2.7	0.0
30대	1,475	33.5	14.3	12.9	8.4	13.0	5.1	4.9	5.2	2.6	0.2
40대	1,698	29.4	18.1	12.5	10.0	11.1	5.3	4.8	5.6	3.0	0.1
50대	1,912	28.3	20.8	15.0	11.2	6.7	6.2	4.5	5.2	2.0	0.1
60대	1,719	20.4	28.5	12.7	13.2	6.8	8.0	5.2	3.6	1.4	0.2
70세 이상	1,425	13.8	39.1	8.7	14.7	3.8	10.8	4.1	1.8	2.9	0.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제2절 문화분야 돌봄정책 과제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적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돌봄부담과 건강취약(거동불편, 질병, 고립, 부상, 정신질환) 문제, 아동/청년/중장년/노인 등 돌봄 대상별 복지 갈등, 정신건강 포함 다양한 돌봄위기가 관찰된다. 한편 양육, 간병, 가사 등 돌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증가시켜 여가시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여가활동 참여의 동기 감소와 활동 제약, 경제적 부담 등이 발생되어 결국 문화격차의 주요 원인이 된다. 문화, 예술, 체육 등 활동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계맺기, 고립감 해소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돌봄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정책과제를 인프라, 프로그램, 인력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1. 인프라 개선

#### 가. 필요성 및 방향

모든 사람이 문화서비스 이용, 문화소비 욕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환경과 관심사, 경제적 여건,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간 전시, 공연 등 문화서비스 핵심 소비층으로 여성을 시간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계층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은 50-60대층이 문화소비 핵심 계층으로 부상하는 등 변화 양상을 보인다.

문화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를 분명히 드러내는 대상은 문화시설 이용자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서비스 이용과 문화소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방문객은 기본적으로 문화소비 욕구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 돌봄정책이 필요대상 중심인 점을 고려하면, 문화서비스 이용 욕

구가 높은 계층인 문화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다 충분한 문화서비스를 돌봄제약 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지원이 중요하다.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가족단위, 특히 어린 자녀를 동반한 관람객 비중이 높는데, 다른 한편으로 양육부담 등 가족돌봄 부담이 문화시설 이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2022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아이와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7.0%로 상당하다(안현찬 외, 2024). 0~9세 자녀 양육자는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공통적으로 호소하며, 문화시설·이동수단·편의공간 등 가족친화적 인프라 부족이 자녀 동반 외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전시는 성인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시설의 본연의 기능이 컬렉션을 관리하고 전시하는 기능이다보니 어린이 전용공간이나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이에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전용 박물관·미술관 시설이 건립되거나 어린이 전용 전시 및 체험공간이 마련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몇 개 사례에 그치고 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 돌봄부담이 큰 가정일수록 돌봄 부담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경험에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문화시설 이용은 제한적이다.

## 나. 돌봄 친화적 문화공간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태생적으로 대중 서비스가 주요 목적이 아닌 전시물, 역사기록물, 공연물, 도서물 등 객체의 수집과 전시이고, 이에 맞춰 전문인력도 이에 맞는 학예사, 사서가 배치된다. 물론 점차 교육의 기능, 사회적 역할이 증시되면서 대중서비스에 대한 책무도 요구되고 있으나, 본연의 기능이 사람이 아닌 객체에 맞춰져 있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에는 불친절한 구조이다. 공간의 설계도 전시물, 무대, 서가 등이 평균 신장과 이동능력을 가진 성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고, 통로 폭이나 좌석간격, 안내표지판 위치 등이 어린이나 고령자, 장애인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있다.

돌봄 친화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과 서비스 인프라를 의미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가족친화, 아동친화, 고령친화 등 대상에 따라 포용적인 도시가 설계되도록 하는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다. 문화시설 방문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의 다른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결정이다. 돌봄부담이 가중될수록 문화시설 방문 선택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자기돌봄과 성장욕구 충족 측면에서 볼 때,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의 돌봄친화적 설계와 서비스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물리적 접근성(공간, 동선)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방식, 프로그램 및 콘텐츠 측면에서 아동/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다양한 연령, 신체조건을 가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고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는 돌봄친화적인 관점이 중요하다.

프랑스에서는 미술관/박물관/도서관에 놀이시설이나 대리육아(케어링) 정책사례가 관찰되는데 다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랑드(Landes) 데파르트망(Département)에 있는 보르테르(Bordères)와 라망상(Lamensan) 지역(commune)의 놀이-미디어테크(Ludo-Médiathèque)<sup>18)</sup>는 도서관 사서나 베이비 시터에게 자녀를 맡기고 부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약 400명인 작은 지역이지만 놀이 도서관의 회원은 700명이 넘고 매년 6,000명 이상 방문하고 있다. 도서관은 부모의 ‘번 아웃’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 휴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2022년부터 ‘부모 휴식(répit parental)’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교육은 지역사회 청소년 정보 센터의 베이비 시팅 교육과 협력해서 준비하며, 1년에 3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공, 젊은 보육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90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

극장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앙굴렘 극장(théâtre d'Angoulême)<sup>19)</sup>과 예술공간(Espace des Arts)<sup>20)</sup>에서는 모두 부모들이 공연을 보는 동안 무료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앙굴렘 극장은 Kangourou Kids<sup>21)</sup>의 자격<sup>22)</sup>

18) <https://pro.bpi.fr/fiche-pratique/temps-de-repit-parental/f> 검색일: 2025년 7월 01일

19) <https://charentes.kidklik.fr/sorties-moment/362086-garderie-ephemere-au-theatre-dangouleme.html> 검색일: 2025년 7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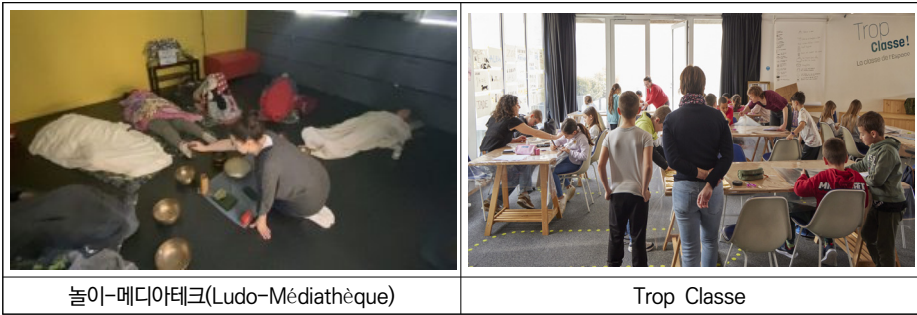
20) <https://www.espace-des-arts.com/garderie> 검색일: 2025년 7월 01일

21) Kangourou Kids는 2010년부터 시간제, 정기 또는 비정기적 보육을 원하는 부모 혹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회사. 프랑스 전역에 약 100개 보육 기관을 운영.

22)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자격이나 학위가 없이도 누구나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돌볼 수 있음. 하지만 3세 미만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됨. 프랑스 국가 자격증인 CAP AEPE(유아교육동반 자격증, Accompagnant Éducatif Petite Enfance), 보조(Auxiliaire de puériculture) 등이 있음. Kangourou Kids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자격증을 필요로 함. Kiwi Institute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줌.

을 갖춘 직원이 아이들을 돌봐주며 연령에 맞는 활동도 제공하고 있고, 예술공간은 'TROP CLASSE'라는 방에서 자격을 갖춘 활동 리더들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게임, 공예, 스포츠,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제공된다.

[그림 5-9] 프랑스 도서관 및 극장 아이돌봄 사례



자료: <https://pro.bpi.fr/fiche-pratique/temps-de-repit-parental/> 검색일: 2025년 9월 21일

한국에서도 최근들어 어린이 박물관을 설치하거나 케어링 서비스 제공,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례가 국립 문화시설이나 일부 수도권 지자체(서울, 경기, 부산)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많은 문화시설과 지역에서는 문화시설에서 주로 콘텐츠 운영과 문화예술적 프로그램 제공에 집중되어 있어 이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이나 돌봄 맞춤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에서부터 문화시설 인프라와 프로그램 전반에 개인에 대한 관심과 돌봄 측면에서 세심한 사업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아동 동반 가족에게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된 시설점검 리스트를 마련하여 모든 공공시설을 점검하고 시설운영 평가, 인증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2. 정책서비스 개발

### 가. 필요성 및 방향

돌봄제공자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겪으며 특히 가족돌봄자가 있는 경우 가족 전체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가족돌봄을 맡은 이들은 의료비,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크고, 노동-여가시간 부족, 건강 악화, 심리적 소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은 하루 평균 7~8시간을 돌봄에 소비하며, 이로 인해 책임감과 죄책감,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장기적인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소진, 우울감,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김민수·이용호·송지은, 2024).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학업, 취업, 사회생활, 여가 등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 노혜진(202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 유병률이 7배 이상 높으며, 돌봄으로 인해 학업, 진로, 사회적 관계, 미래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을 돌보는 중장년층의 경우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던 일을 중단한 경험이 20%를 넘는다.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도 62% 이상이 경험한다.<sup>23)</sup>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중장년층이 84%에 달하며, 대부분의 가족이 돌봄을 집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물론 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요양보호사제도, 가족돌봄청년(영케어)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도 및 단기보호제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심리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제도이용 혜택 범위는 제한적이다.

돌봄제공자 특히 가족돌봄자의 경제적 어려움, 문화·여가 기회 부족, 정신적 건강 문제, 주거비 부담 등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심각한 사회적 위험사례 등장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돌봄 부담이 극심해질 경우 돌봄 공백, 가족 간 갈등, 심지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방치와 학대하고, 발달장애나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가 돌봄 부담과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녀를 살해하거나, 함께 극단적 선택하는 사건이 2017년 대전, 2020년 부산, 2022년 서울과 경기도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치매, 루게릭병, 뇌출혈 등 중증질환을 앓는 가족을 오랜 기간 간병하던 배우자나 자녀가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피간병인을 살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간병 살인’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돌봄제공자에 대한 돌봄은 우리사회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좋은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간의 신뢰, 배려,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장기적 돌봄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정서적·감정적 유대가 취

23) 2023년 ‘돌봄과 미래’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5~69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중장년층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3.1%p)

약해 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끊임없는 노력은 아무리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지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휴식과 양질의 여가시간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와 예술 활동은 돌봄제공자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의료 및 사회복지사 부족은 전체 보건 및 사회복지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문화 활동은 의료 및 사회복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족돌봄과 같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게 더욱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번아웃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돌봄제공자의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상담, 휴식 지원 등)과 돌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나. 돌봄 제공자를 위한 문화여가적 돌봄(Respite)

Respite는 사전적으로 "힘든 노동이나 고통을 잠시 멈추는 것", 즉 일시적인 휴식이나 안도를 의미하며, Respite Care(휴식 돌봄, 단기보호)는 돌봄분야에서 돌봄 필요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지칭한다. 특히 돌봄제공자를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시켜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공동의 문화 활동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돌봄 제공자가 부담하는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휴식, 여가시간과 회복지원, 웰빙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Respite Care(휴식 돌봄, 단기보호)의 개념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유럽 등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정책화 이전 휴식돌봄은 주로 가족이나 이웃 등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에서 점차 가족돌봄 부담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자 정책적으로 휴식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역사회 수요에 맞춰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교육, 정보제공, 휴식(휴가) 지원, 커뮤니티 지원 등 서비스모델이 발전해왔다.

특히 장애아동, 만성질환자, 노인 등 장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소진(burnout)을 예방하고,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했다.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가족이나 보호자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돌봄을 대신 제공하거나 돌봄 제공자를 위한 휴식 및 양질의 여가서비스를 지원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는 약 930만 명의 가족 돌봄 제공자<sup>24)</sup>가 있으며, 이들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정기적으로 비공식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며, 돌봄 제공자의 37%가 건강 또는 심리적 문제(스트레스, 피로, 우울증 등)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화 가속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가족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소진, 삶의 질 저하 및 사회적 고립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돌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족돌봄 제공자 휴식권(Droit au repit de l’aidant familial)<sup>25)</sup>’ 정책을 추진되었다. 프랑스에서 가족 돌봄 제공자(aidant familial)가 일상적인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돌봄 제공자(aidant familial)는 장애, 고령, 중증질환 등 자립이 어려운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정책은 2015년 12월 28일 제정된 ‘사회 고령화 적응법(Loi n° 2015-1776 du 28 décembre 2015 relative à l’adaptation de la société au vieillissement, Loi ASV)’를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사회 고령화 적응법(ASV)은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3번째 축이 돌봄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내용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의 Droit au répit de l’aidant familial(가족돌봄자 휴식권) 정책은 돌봄 제공자의 심신 회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 피로·소진 예방,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지닌다. 2023년 10월 6일 ‘돌봄 제공자를 위한 행동(Agir pour les aidants)’이라는 슬로건 하에 ‘2023-2027 가족 돌봄 제공자 지원 및 동원 전략(Stratégie de mobilisation et de soutien pour les aidants 2023-2027)’을 발표하였다. 전략목표 중 하나로 돌봄 제공자가 돌봄에서 벗어나 자기 건강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나 스포츠, 예술, 문화활동 등 다양한 자기 돌봄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돌봄제공자의 휴식권과 문화예술·여가 향유 활동 참여를 권장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임시 돌봄, 휴양, 정보 제공) 구축 및 캠페인을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시 돌봄(주간, 단기, 가정 내) 또는 휴가형 체

24) 가족돌봄 제공자란 정기적이면서 무상으로 가족,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가족 관계일 필요는 없음

25) 휴식권이란 돌봄 제공자가 일시적으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를 의미함

협(séjours vacances répit)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보호자가 돌봄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예술/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실제적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표 5-11〉 프랑스 2023-2027 가족 돌봄 제공자 지원 및 동원 전략 구성

구분	내용
<p>약속 1</p> <p>휴식권 제공 확대 및 개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제공자가 잠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임시보호시설, 주간보호센터 등의 인프라 확충 (2027년까지 6,000개 추가 설치 목표)</li> <li>- 휴식 지원 플랫폼의 역할 강화 및 확대 : 휴식 지원 플랫폼에서는 문화 탐방, 휴식 워크숍(명상, 휴식, 요가, 뷰티 트리트먼트, 스포롤로지(정신집중호과학) 등), 간병인 간 토론 그룹, 그리고 적응형 여가 또는 휴가 솔루션을 제공.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이나 요리, 음악, 글쓰기, 게임 및 인지 자극 워크숍에 대한 지침 제공<sup>26)</sup></li> </ul>
<p>약속 2</p> <p>모든 도(département)에 돌봄 제공자를 위한 단일 창구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접근성 및 서비스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지역(도 단위)에 돌봄 제공자를 위한 통합 지원 창구 또는 담당자 지정</li> <li>- 도 단위(Départemental) 자율성 공공 서비스(Service Public Départemental de l'Autonomie, SPDA) 내 돌봄 제공자를 수혜자로 포함</li> </ul>
<p>약속 3</p> <p>기존 권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돌봄 휴가(congé proche aidant, CPA) 제도 개선: 권리 재충전 기능, 지원 대상 확대 등</li> <li>- 가족 돌봄 일일 수당(allocation journalière du proche aidant, AJPA) 활용도 제고</li> </ul>
<p>약속 4</p> <p>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경험인증제(VAE) 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 경험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험인증제(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대상에 포함</li> </ul>
<p>약속 5</p> <p>돌봄 제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접근성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과 돌봄을 병행하는 학생 돌봄 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li> </ul>
<p>약속 6</p> <p>돌봄 제공자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돌봄 제공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잠재적 돌봄 제공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연계</li> <li>- 대국민 정보 캠페인 실시를 통해 돌봄 제공자의 역할과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지원 제도 안내</li> </ul>

전국 휴식 플랫폼과 지원센터(Plateformes de répit)에서는 보호자 대상 미술, 음악, 작문, 공예 등 창의적 예술 워크숍과 여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창의적인 휴식 아틀리에(Les ateliers de répit créatif)가 있다.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문화예술 기반의 휴식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미술, 음악, 글쓰기, 춤, 요가 등 다양한 창작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 중이다. France Alzheimer

26) [https://association-maladie-corps-lewy.a2mcl.org/offres/doc\\_inline\\_src/827/Guide+A2MCL+-+Dispositifs+de+soutien+et+de+rE9pit+pour+les+aidants.pdf](https://association-maladie-corps-lewy.a2mcl.org/offres/doc_inline_src/827/Guide+A2MCL+-+Dispositifs+de+soutien+et+de+rE9pit+pour+les+aidants.pdf) 검색일: 2025년 5월 24일

는 프랑스 전역의 103개 지역 지부를 통해 '창의적인 휴식 아틀리에(Les ateliers de repit creatif)'를 운영하며, 지역별로 맞춤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Fondation Médéric Alzheimer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97%의 EHPAD(프랑스 노인 요양원) 및 96%의 주간 보호 시설이 비약물적 중재 프로그램(예: 예술 치료)을 제공하며, 이는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5-12〉 프랑스 '창의적인 휴식 아틀리에(Les ateliers de repit creatif)' 주요내용

구분	내용
도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약물적 중재 프로그램으로, 알츠하이머병 또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 및 비공식 돌봄 제공자(이하 'aidants')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됨.</li> <li>■ 예술 및 창작 활동을 통해 환자와 돌봄 제공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ul>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주체 : Fondation France Alzheimer, 103개 지역지부 운영으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li> <li>■ 지원대상 : 치매환자 돌봄 중인 가족</li> <li>■ 지원형태 : 주 1회 미술 또는 음악 세션, 감정 일기, 시 창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lier 지역: 예술치료 및 창작 워크숍, 심리학자와 자원봉사자가 협력하여 그룹 활동</li> <li>- Finistère 지역: 창작 워크숍과 함께 지역 탐방 및 교류 활동 제공</li> <li>- Bouches du Rhône 지역: 예술 기반 워크숍과 박물관 방문</li> </ul> </li> </ul>
주요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술 워크숍 : 그림, 조각, 공예 등 창작 활동을 통해 환자의 감각적 표현을 촉진</li> <li>② 음악 및 연극 활동 :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간단한 연극 활동으로 감정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li> <li>③ 박물관·미술관 방문: France Alzheimer의 "Art, culture et Alzheime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예술적 환경에서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예: 파리 국립 피카소 박물관, 팔레 드 도쿄 등)</li> <li>④ 그룹 활동 :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창작 중심 그룹</li> </ol>
기대 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트레스 완화: 창작 활동은 돌봄 제공자의 정서적 소진을 줄이고, 휴식의 시간 제공</li> <li>② 관계 개선: 환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관계 개선</li> <li>③ 자원 연결: 프로그램은 돌봄 제공자가 France Alzheimer의 다른 지원 서비스(예: 그룹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ol>

한편 '돌봄제공자와 돌봄이 필요한 이를 위한 바캉스(Les vacances aidants-aides)'는 프랑스에서 가족 돌봄 제공자와 돌봄 대상자(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가 함께 휴가를 즐기며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 제공자와 돌봄 대상자가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휴가를 보내거나, 돌봄 제공자가 별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 가족 유대 강화, 그리고 돌봄 대상자의 자립과 웰빙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돌봄제공자와 돌봄이 필요한 이를 위한 바캉스'는 전문 인력 지원, 맞춤형 여가

활동(산책, 문화 활동, 심리 상담 등)이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5-13〉 프랑스 돌봄제공자와 돌봄이 필요한 이를 위한 바캉스 프로그램 사례

구분	내용
France Alzheimer Séjours Vacances-Répit Alzhei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알츠하이머 환자와 돌봄 제공자, 젊은 환자, 단독 돌봄 제공자</li> <li>- 내용: 휴식(예: 스파, 명상), 공동 활동(산책, 문화 탐방), 심리 상담. 비용은 소득 기반으로 331~1,653유로(11일 기준)</li> <li>- 특징: 훈련된 자원봉사자와 의료진이 동행하며, 질병을 배경으로 두고 가족 간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함</li> </ul>
Vivre le Répit en Famil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투렌, 사부아, 앙주, 쥐라</li> <li>- 내용: 의료-사회적 지원, 접근 가능한 숙소, 여가 활동. 주당 450유로부터 시작, Agirc-Arrco 지원 가능</li> <li>- 특징: 장애인 및 노인 모두에게 적합, 가족 중심 접근</li> </ul>
ANCV Seniors en Vac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60세 이상 국민 및 돌봄 제공자</li> <li>- 내용: 해변, 시골, 산 등 다양한 목적지에서 5~15일 휴가. 2009년 이후 6,700명 이상의 돌봄 제공자가 참여</li> <li>- 효과: 85%가 신체적 휴식, 89%가 정신적 재충전을 경험</li> </ul>

한국의 경우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돌봄제공자를 위한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지원 뿐만아니라 심리지원, 휴식지원, 소셜다이닝 등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나, 문화서비스와 여가의 활력 측면에서 프로그램 구성은 미흡하다. 한편 2025년부터 통합 확대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심리·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거나 폭력, 은둔·고립 위험에 처한 대상의 정서·심리적 치유에 기여하고 있으나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공모형 방식임에 따른 품질관리 체계는 부족하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를 위한 문화여가적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효과적·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체계화와 공급자의 서비스 품질관리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 3. 인력양성·배치

#### 가. 필요성 및 방향

문화분야 돌봄정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제약하에서 문화에 접근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급 중심 문화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돌봄에 의한 문화누림 취약계층의 조건과 맥락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담고 있다. 문화서비스 이용 욕구는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으며, 문화서비스 이용 기회가 각 계층과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응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공모를 통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균적 소비자’를 상정한 획일적인 서비스에 치중한 실정이다. 예술강사 또는 문화서비스 단체에서 기획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다르고, 개개인의 욕구와 돌봄 측면에서의 정보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개인의 욕구반영과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기반한 문화서비스 연결 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문화정책이 “문화”라는 서비스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면, 문화분야 돌봄정책은 문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화정책에서 양성 및 육성된 인력의 특성도 정책의 관심사에 의해 주로 문화서비스의 생산·유통·향유에 필요한 자격조건의 인력 중심인데, 인력의 기능과 전문성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기초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화를 앞두고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는 확장되고 있으며, 의료·요양·주거·생활돌봄 뿐만아니라 문화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돌봄과 사회관계망 형성까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돌봄인력 구축이 시급하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으로, 2026년 3월 본격 시행된다.

## 나. 문화서비스 연결인력 개발, 복지·의료 영역 배치

문화정책 현장에서 돌봄적 관점이 강조되고, 돌봄정책에서는 자기돌봄 측면에서 문화적 처방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 돌봄은 정책의제 단위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학교나 복지시설, 취약지역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교육·육아), 가족관계, 건강·심리, 교류(고립해소) 측면에서 돌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분야 돌봄이 기존의 문화복지 정책이나 향유정책과 차별화된 점은 개개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점이다. 이것은 복지나 향유 정책의 관점인 수요자라는 이용자 중심의 요구보다 세분화된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례 관리,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서비스 이용 욕구에도 불구하고 타인 돌봄과 자기에 대한 돌봄 여력 부족으로 인해 문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프로그램과 자원에 연계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정서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문화서비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 혹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문화적 활동 등)별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서,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및 위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의 적기 연계, 사후 모니터링, 위기 시 개입까지 수행한다는 점이 핵심적 특성이다.

영국의 사회적 연결인력은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s, SPLW)’ 등 중개자 역할을 통해 의료·복지와 문화프로그램을 통합 연계하며, 외로움과 고립 문제 해소 등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 문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모델에 해당된다.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외로움 담당 부처 장관을 겸임하며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ty)’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에서 ‘사회적 처방’ 제도가 핵심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 대신 ‘링크워커(Link Worker)’를 처방하면, 사회적 처방 연결 인력(SPLW)이 환자를 지역사회 문화·사회서비스 활동에 연결한다. 현재 영국 정부는 지역사회 인프라 개발과 고용주,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사회적 처방과 문화 연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2019년 「NHS Long Term Plan」은 2021년 말까지 영국 전역에 1,000명 이상의 SPLW를 배

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국립사회적처방아카데미(NASP: National Academy for Social Prescribing)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약 3,500명 이상의 SPLW가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Academy for Social Prescribing, 2025).

영국의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PLW)은 지역 내 GP들을 포괄하는 일차의료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PCN)<sup>27)</sup>에 소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외에도 Age UK와 같은 자선단체 또는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PLW)을 직접 고용하여 일반의 진료소나 일차의료네트워크(PCN)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적 처방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흔히 보고된다(Age UK Islington, 2025). 국민건강보험(NHS)은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PLW)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훌륭한 경청 및 의사소통 능력, 공감능력, 정서적 회복력(emotional resilience), 판단하지 않는 태도(non-judgemental), 협업하는 자세, IT 활용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PLW)이 되기 위해 사전에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sup>28)</sup>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PLW)의 평균 연봉은 £25,000에서 £29,000이며, 개인별 경력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NHS)은 사회적 처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와 기술 등을 담은 이러닝(e-learning) 자료를 개발하여 현직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PLW)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교육 자료는 총 1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세션을 완료하는 데 6~8시간 정도 소요된다. 각 세션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표 5-14〉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PLW) 핵심요소와 기술 교육 구성

- ▲ SPLW 역할 소개(Introduction to the 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 role)
- ▲ 개인 맞춤형 돌봄 및 지원 계획 수립(Developing personalised care and support plans with people)
- ▲ 파트너십 구축(Developing partnerships)
- ▲ 환자를 지역사회 및 비영리단체에 소개하기(Introducing people to community groups and VCSE organisations)

27) 약 3~5만 명의 인구를 담당하는 PCN은 정부의 추가역할보상제도(ARRS: Additional Roles Reimbursement Scheme)를 통해 NHS로부터 SPLW 고용 자금을 지원받으며, 개별 PCN의 정책과 예산에 따라 정규직과 기간제 등 상이한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진다(Bramwell et al., 2024)

28) SPLW를 고용하는 기관·조직에 따라 Level 3 Certificate과 같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 취약계층 보호(Safeguarding vulnerable people)
- ▲ 기록 관리 및 효과 측정(Keeping records and measuring impact)
- ▲ 사회적 처방을 통한 정신건강 지원(Supporting people with their mental health through social prescribing)
- ▲ 사회복지, 법률 지원 및 재정 상담(Social welfare, legal support and money guidance)
- ▲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 감독 체계(Supervision)
- ▲ 사회적 처방과 군 조직(Social prescribing and the Armed Forces Community)
- ▲ 문화적 민감성 실천(Culturally responsive practice)

SPLW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비의료적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환자의 활성화(patient activation)<sup>29)</sup>를 증진시키고 GP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Tierney et al., 2020). 또한,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환자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서비스 과부하 완화에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Oster et al., 2023).

특히 사회적 처방의 가능성은 예술·문화 영역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2017년, 영국의 회 내 예술·건강·웰빙 초당파 의원 모임은 「Creative Health: The Arts for Health & Wellbeing」 보고서를 발표하며 예술과 문화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통합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Arts Council England를 비롯한 예술·문화 기관들 역시 사회적 처방이 지역사회 내 풀뿌리운동(grass-roots movement)으로 정착하는 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왔다. 2024년 말부터는 자선단체 Clod Ensemble가 실시하는 Performing Medicine 프로그램을 통해 SPLW를 위한 예술·문화 분야 사회적 처방 관련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사회적 처방에서 SPLW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예술·문화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예술·문화 활동을 통한 치료와 회복이 절실한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상존한다.

지난 7년이상 영국에서 시도된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SPLW) 사례를 참고할 때, 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서적·심리적 치료 수단으로 문화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방식은 건강한 사회 유지에 매우 필요한 인력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지역 내 문화서비스 제공 지형에 대한 이해, 매개인력으로서 실무 능력에

29)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지 의미하는 용어

대한 기본적 자격조건을 고려한 인력설계가 요구된다. 새로이 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기존 정부주도로 양성한 문화계 매개인력을 재교육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교육사,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 이수자 등의 인력이 사회적 연결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연결인력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때 문화서비스 연결 인력(매개인력)의 재교육과 전문성 수준이 시장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되도록 전문성과 대우가 보장되도록 재교육과정과 자격조건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사회적 처방 연결인력 역시 직군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의와 장기적 경력 경로가 부재하여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Oster et al., 2023). 한국에서도 이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양성된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서비스 질적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수요에 맞춰 문화서비스 연결 인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 인력이 전문가로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양성된 문화서비스 연결인력을 돌봄 대상자가 모이는 복지·의료 영역에 전문인력으로서 처우가 인정되도록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는 정책협업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강혜규·박수지·양난주·엄태영·이정은(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부(2025).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
- 김은정(2011). 주요 국가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정책 현황과 특성 -재택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2), 163-186.
- 김윤영·이한나·이성희·민인식·최영준·조영림·이창문(2019).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 비교연구-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철·이재훈(201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원.
- 김희강·박선경(2021). 코로나19,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한국행정정보. 55(2). 55-80.
- 낸시폴브레(2007). 「보이지 않는 가슴」 (윤자영, 역). 서울: 또하나의문화.
- 다니엘잉스터(2017). 「돌봄: 정의의 심장(돌봄윤리와 정치이론)」(김희강, 나상원, 역). 서울: 박영사.
- 문화체육관광부(2025).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_\_\_\_\_(2025).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_\_\_\_\_(2024). 「2024 국민여가활동조사」.
- \_\_\_\_\_(2024). 「2024년 근로자 휴가조사」.
- 방소연(2022). 성별에 따른 중년 성인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전략학회. 20(2).27-37.
- 박혜련, 허식(2018). 문화적 여가활동의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기혼가구의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8(4), 1-12.
- 박세경, 안수란, 함선유, 김성아, 김가희, 배혜원, 김안나, 오은진, 전용호(2023). 「생활·활력 지원 사회서비스 혁신 모델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수정·오신휘·조성호·김은정·이해정(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9). 「노인돌봄서비스의 실제-기본서비스-」.
- \_\_\_\_\_(2017).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 조사·연구 정성조사보고서」.
- \_\_\_\_\_(2023). 「2023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 \_\_\_\_\_(2025a).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
- \_\_\_\_\_(2025b). 「2025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 서원주(2023). 돌봄의 권리이론: 다니엘 앵스터의 돌봄 책임 정당화에 대한 고찰. 한국여성철학. 40. 61-85.
- 송민혜(2021) 50+세대 1인가구에 대한 돌봄 필요성과 방향. 50+리포트. 2(26).
- 신형덕 외(2024). 「문화 트렌드 2025」. 서울: 예고의바다.
- 우에노지즈코(2024). 「돌봄의 사회학」(조승미·이혜진·공영, 역). 서울: 오월의 봄.
- 윤정향·미경희(2021). 「사회적 돌봄 의제 개발을 위한 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이석환·전용호·김윤영·김광현(2022). 중장년 1인 가구의 자기돌봄에 관한 연구. 서울시 50플러스재단.
- 이성환(2010). 사회권의 법적 성격. 법학논총, 22(2), 133-166.
- 이숙진(2024). '돌봄할 권리'에 관하여. 인권연구. 7(1). 223-244.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 문화. 27(3). 1-38.
- 장민선(2017).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조안 C. 트론토(2014). 「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김희강, 나상원, 역). 서울: 아포리아.
- 차선자(2025).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의 역할. 법과 정책, 31(1), 313-349.
- 최영(2024). 돌봄권과 돌봄의 사회화. 월간복지동향, 2024년 1월. 참여연대.
- 캐롤길리건(1997). 「다른 목소리로」(허란주, 역). 동녘.
-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 2020~2052년」.
- \_\_\_\_\_(2023). 「2023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2).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년 늘봄학교 우수사례집」.
- \_\_\_\_\_(2025).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윤소영·정보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연구책임 : 함선유).
- \_\_\_\_\_(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 Age UK Islington. (2025). 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 Job description. <https://www.ageuk.org.uk/bp-assets/globalassets/islington/work-for-age-u-k-islington/social-prescribing-link-worker-job-description.pdf>
- An, D., & Youn, N. (2018). The inspirational power of arts on creativ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5, 467-475.
- Australian Education Union. (2023). The value of creative culture. <https://www.aeufederal.org.au/news-media/news/2023/value-creative-culture>
- Fancourt, D., & Finn, S. (2019). What is the evidence on the role of the arts in improving health and well-being? A scoping review. *Health Evidence Network Synthesis Report*, No. 67.
-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 Fisher, B. J., & Specht, D. K.(2000),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 Gilovich, T., Kumar, A., & Jampol, L. (2014). A wonderful life: Experiential consumption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5(1), 152-165.
- Health Careers. (n.d.). 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 <https://www.healthcareers.nhs.uk/explore-roles/wider-healthcare-team/roles-wider-healthcare-team/clinical-support-staff/social-prescribing-link-worker>.
- Kerby, M., Lorenza, L., Dyson, J., Ewing, R., & Baguley, M. (2021). Challenges, implications and the futur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The Arts. *Australian Educational Researcher*, 48(5), 901-922. <https://doi.org/10.1007/s13384-021-00488-y>
- Kool, W., & Botvinick, M(2012). A labor/leisure tradeoff in cognitive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1(4), 665-682.
- Kumar, A., Mann, T. C., & Gilovich, T. (2024). The aptly buried “I” in experience: Experiential purchases promote more social connection than material purchase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37(2), e2376.

- Mastandrea, S., Fagioli, S., & Biasi, V. (2019). A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Linking the brain to the aesthetic emo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0, 739.
- McCarthy, K., Ondaatje, E., Zakaras, L., & Brokkes, A. (2004). *Gifts of the Muse: Refor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RA ND Institute.
- National Academy for Social Prescribing. (2025). Link worker survey 2025: Understanding what matters to 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s. <https://socialprescribingacademy.org.uk/resources/link-worker-survey-2025-understanding-what-matters-to-social-prescribing-link-workers>
- Personalised Care Institute. (2024). Social prescribing of arts & culture. <https://www.personalisedcareinstitute.org.uk/2024/11/01/social-prescribing-of-arts-culture>.
- Rosenzweig, E., & Gilovich, T. (2012). Buyer's remorse or missed opportunity? Differential regrets for material and experiential purch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2), 215–223.
- Sevenhuijsen, S. (2003). *Citizenship and the ethics of care: Feminist considerations on justice, morality and politics*. Routledge.
- Spaid, B., & Matthes, J. (2021). Consumer collecting identity and behaviors: underlying motivations and impact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38(5), 552-564.
- Tronto, J.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 WHO(2024). Implementation of self-care interventions for health and well-be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iris.who.int/handle/10665/357828>
- Williams, F. (1989). *Social policy: A critical introduction—Issues of race, gender and class*. Polity Press.
- \_\_\_\_\_(2012). Care relations and public policy: Social justice claims and social investment frames.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1(1), 103-119. <https://doi.org/10.1332/204674312X633199>

## 기사

- 강진구(2005.10.254.). “주5일제 1년 ‘먹고 마시기’서 ‘보고 즐기기’로. 경향신문.
- 이지평(2005.6.29.), “주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LG주간경제.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통계청
- 한국예술교육진흥원
- e-Learning for Healthcare
- Wee프로젝트



---

# ABSTRACT

## **Prospects and Policy Directions for Care in the Cultural Sector**

Boram Jeong, Sangyol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cultural care policy, assess its future prospects, and identify policy task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roles of social care in cultural policy. In public policy, the scope of care has expanded beyond providing medical support, household services, daily life assistance, and substitute childcare and education to promote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today, it involves preventive healthcare, emotional care, and social interactions for the entire public. Cultural care offers various functions — for instance, childcare support through arts education, healthcare through art therapy, and relationship support to promote interactions and address social isolation. Yet, in the cultural sector, no systematic policy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raising the need to conceptualize cultural care policy and identify policy tasks.

The study finds that the social functions of culture — such as promoting leisure and health activities, mental well-being, and active social interactions — fulfill people's developmental needs and provide more effective self-care for care providers compared to other sectors. However, amid declining birth rates, aging populations, and growing social isolation, social care is likely to face a crisis situation — such as higher care burden and health vulnerabilities of the elderly (e.g. mobility loss, illness, isolation, injury, mental issues), welfare prioritization conflicts among care recipient groups (e.g. children, youth, middle-aged, seniors), as well as mental health risks. In the mean time, responsibilities for childcare, nursing, and household work increase care providers' physical and mental fatigue, compromise

the quality of their leisure activities, weaken motivation and limit participation in such activities, and impose financial burdens. Ultimately, such care responsibilities serve as a major driver for a cultural divid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policy tasks for cultural care policy in three areas: infrastructure, programs, and human resources. First, infrastructure needs to be improved to provide care-friendly cultural spaces. Infrastructure planning should be conducted in a detailed manner from improving accessibility to cultural facilities to incorporating individual interests and the need for care into overall program infrastructure. To this end, the introduction of certain policy incentives, such as evaluation, certification, and reward programs for cultural facility operation should be considered. Second, policy programs should focus 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ctivities, in other words, respite, for care providers. Care providers often experience physical, emotional, and financial burdens simultaneously, and in particular, an entire family's quality of life can be compromised when one member of the family requires care. In this study, researchers recommend the expansion of cultural and leisure-based respite programs for these care provid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delivery and quality management of such programs. Thi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required to deploy professionals who can coordinate cultural services in the areas of welfare and healthcare. Cultural care policy is no longer a question of 'how many people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but of 'who can access culture under what conditions and with what constraints'. For this reason, the study proposes developing human resources who can coordinate cultural services customized to users' needs and deploying them in the field.

### **Keywords**

social care, care policy, cultural policy, self-care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부록

설문지







**돌봄 부담(A) [PRGM] S00=①만 제시**

A1-1. 귀하께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A2-1. 귀하께서 돌보는 대상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 여러 명을 돌보고 계신다면 모두 체크해주세요.

		A1-1. 기본적인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복수선택)	A2-1. 해당 구성원의 연령대 [PRGM] A1-1 선택 항목만 제시			
(1)	자녀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이하 ⑤ 50대	② 20대 ⑥ 60대	③ 30대 ⑦ 70대	④ 40대 ⑧ 80대 이상
(2)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이하 ⑤ 50대	② 20대 ⑥ 60대	③ 30대 ⑦ 70대	④ 40대 ⑧ 80대 이상
(3)	어머니/아버지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이하 ⑤ 50대	② 20대 ⑥ 60대	③ 30대 ⑦ 70대	④ 40대 ⑧ 80대 이상
(4)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이하 ⑤ 50대	② 20대 ⑥ 60대	③ 30대 ⑦ 70대	④ 40대 ⑧ 80대 이상
(5)	배우자의 어머니/아버지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이하 ⑤ 50대	② 20대 ⑥ 60대	③ 30대 ⑦ 70대	④ 40대 ⑧ 80대 이상
(6)	배우자의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이하 ⑤ 50대	② 20대 ⑥ 60대	③ 30대 ⑦ 70대	④ 40대 ⑧ 80대 이상
(7)	조부모/외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이하 ⑤ 50대	② 20대 ⑥ 60대	③ 30대 ⑦ 70대	④ 40대 ⑧ 80대 이상
(8)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이하 ⑤ 50대	② 20대 ⑥ 60대	③ 30대 ⑦ 70대	④ 40대 ⑧ 80대 이상
(9)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이하 ⑤ 50대	② 20대 ⑥ 60대	③ 30대 ⑦ 70대	④ 40대 ⑧ 80대 이상

A2-2. 지난 1년 동안(2024년 6월~2025년 6월) 귀하께서 가족을 돌보는데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여러 명을 돌보고 계신다면 모두를 돌보는데 할애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A2-2-1) 평일 하루 평균 \_\_\_\_\_ 시간

A2-2-2) 휴일 하루 평균 \_\_\_\_\_ 시간

A4. 귀하께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상을 유지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우 어렵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 문화 · 여가생활(B)

[PRGM] 아래 안내문 B1~B3 상단에 모두 제시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합니다.

(예: 직업상의 일, 출퇴근시간,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식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자유로운 시간)

B1. 지난 1년 동안(2024년 6월~2025년 6월) 귀하께서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활동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문화예술관람(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방문) | ② 영화관람(영화관 방문) |
| ③ 독서                            | ④ TV시청         |
| ⑤ 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               | ⑥ 게임           |
| ⑦ 휴식                            | ⑧ 기타( )        |

[PRGM] B1에서 선택된 보기만 제시

B2. 지난 1년 동안(2024년 6월~2025년 6월) 참여한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각 여가활동별로 응답해주세요.

항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문화예술관람(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방문)	①	②	③	④
(2) 영화관람(영화관 방문)	①	②	③	④
(3) 독서	①	②	③	④
(4) TV시청	①	②	③	④
(5) 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	①	②	③	④
(6) 게임	①	②	③	④
(7) 휴식	①	②	③	④
(8) 기타( )	①	②	③	④

B3. 지난 1년 동안(2024년 6월~2025년 6월) 가장 희망했던(원했던)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문화예술관람(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방문) | ② 영화관람(영화관 방문) |
| ③ 독서                            | ④ TV시청         |
| ⑤ 모바일콘텐츠 및 OTT 시청               | ⑥ 게임           |
| ⑦ 휴식                            | ⑧ 기타( )        |

B4. 지난 1년 동안(2024년 6월~2025년 6월)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B4-1) 평일 하루 평균 \_\_\_\_시간  
 B4-2) 휴일 하루 평균 \_\_\_\_시간





*[PRGM] D1-1(5)=①,② 응답자만 제시*

D1-2. 귀하께서는 예술치유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RGM] D1-1(6)=①,② 응답자만 제시*

D1-3. 귀하께서는 문화여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2. 귀하께서는 다음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의료지원 서비스(본인) : 약물 치료	①	②	③	④
(2)	심리상담 서비스(본인) : 언어적 소통	①	②	③	④
(3)	예술치유 서비스(본인) : 미술, 음악, 춤·무용 등으로 소통	①	②	③	④
(4)	문화여가 서비스(본인) :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창작 참여 등	①	②	③	④

*[PRGM] D2(3)=③,④ 응답자만 제시*

D2-1. 귀하께서 예술치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집필 내역

---

### 연구 책임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연구총괄

### 공동 연구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3장

### 연구 자문(가나다순)

박지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손동기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석환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은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홍민호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 대리

### 연구 참여

박은혜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

발행인 노영순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5년 10월 31일

발행일 2025년 10월 31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9-11-7198-077-2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5.e28>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정보람·이상열(2025), 문화분야 돌봄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5.e28>



[www.kcti.re.kr](http://www.kcti.re.kr)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